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197-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9. 12.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년 연구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9. 12.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 연구책임자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윤택림(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이호신(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
■ 보조연구원 : 이재영(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엄정현(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2019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차 례

■ 요약문 ——— 1

제 1 장 서 론 / 7

제 2 장 연구 조사 내용 / 9

2.1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 ——— 9
2.1.1 구술자료의 정의 ··· 10
2.1.2 국가 차원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의 의의 ··· 14
2.2 국내 구술자료 관리 및 이용 현황 ——— 16
2.2.1 국내 대표기관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 16
2.2.2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 44
2.2.3 국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구술자료 생산 및 이용 실태 ··· 53
2.2.4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 60
2.3 해외 국가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 68
2.3.1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 ··· 68
2.3.2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 ··· 88
2.3.3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LA) ··· 103
2.4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관련 법령 ——— 120
2.4.1 도서관법 ··· 120
2.4.2 저작권법 ··· 132
2.4.3 개인정보보호법 ··· 154

제 3 장 국립중앙도서관의 종합관리체계 방안 / 166

3.1.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 166
3.2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발전 방향 — 169
3.3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 — 171
3.3.1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포괄성 ··· 171
3.3.2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대표성 ··· 176
3.3.3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차별성 ··· 179
3.4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종합관리 로드맵 — 187
3.4.1 연도별 종합관리 로드맵 ··· 187
3.4.2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의 구성 ··· 188

제 4 장 결 론 / 192

4.1.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과 구술자료 수집의 필요성 – 193
4.2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의 의의 — 196
4.3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 정비 — 200
4.4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방향성 — 202

참 고 문 헌 — 207

부 록 / 213

[부록 1]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설문지 — 213
[부록 2]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기관 심층면담 질문목록 — 221
[부록 3]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지 — 223

표 차례

〈표 1〉 구술사 및 구술자료에 대한 개념 정의 ····· 12
〈표 2〉 공공도서관에서 다루는 구술자료의 개념 정의와 범위 ····· 15
〈표 3〉 국회기록보존소 심층면담 결과표 ····· 16
〈표 4〉 국사편찬위원회 심층면담 결과표 ····· 19
〈표 5〉 대통령기록관 심층면담 결과표 ····· 22
〈표 6〉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층면담 결과표 ····· 24
〈표 7〉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 28
〈표 8〉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 31
〈표 9〉 국립무형유산원 심층면담 결과표 ····· 33
〈표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층면담 결과표 ····· 35
〈표 11〉 외교사연구센터의 심층면담 결과표 ····· 37
〈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면담 결과표 ····· 40
〈표 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 41
〈표 14〉 경기도 평택장당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 43
〈표 15〉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장서량 및 담당자의 근무 경력 ····· 45
〈표 16〉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의 문항별 응답 사항 정리표 ····· 46
〈표 17〉 중앙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자료 현황 ····· 54
〈표 18〉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자료 현황 ····· 56
〈표 19〉 National Life stories 내 수행된 프로젝트 목록 ····· 92
〈표 20〉 음성자료 주제 목록(총 30개) ····· 97
〈표 21〉 Oral Collection Guide 목록 ····· 97
〈표 22〉 해외 국가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정리표 ····· 113
〈표 23〉 도서관법 및 시행령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관련 내용 ····· 121
〈표 24〉 도서관 자료 납본 관련 도서관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 123
〈표 25〉 온라인자료 수집과 관련된 도서관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 124

〈표 26〉 개인정보의 예시 ····· 156
〈표 27〉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발전 방향 ····· 170
〈표 28〉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의 연차별 종합관리 로드맵 ····· 189
〈표 29〉 2025년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 인력 구성(안) ····· 191

그림 차례

[그림 1]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소재지 및 응답률 ····· 44
[그림 2]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구술자료 수집 경험 여부 ····· 45
[그림 3]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계획 ····· 49
[그림 4] 향후 구술자료 수집계획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유형(중복응답) ····· 49
[그림 5] 공공도서관 내 구술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 ····· 50
[그림 6] 도서관 시스템 내 서비스 계획 ····· 50
[그림 7]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에 대한 국가자원화 견해 ····· 51
[그림 8]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참여할 의향 ····· 51
[그림 9]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수행기관 ····· 52
[그림 10]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중복응답) ····· 52
[그림 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직업군 ····· 60
[그림 12]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전공분야 ····· 61
[그림 13]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소재지 ····· 61
[그림 14] 한국구술사학회-구술사 관련 작업 경험 여부 및 작업의 목적 ····· 62
[그림 15]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의 유형(중복응답) ····· 62
[그림 16]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 처리방법(중복응답) ····· 63
[그림 17]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기증할 경우, 선호하는 기관(중복응답) ····· 63
[그림 18] 한국구술사학회-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 이용 시 어려움(중복응답) ····· 64
[그림 19]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와 관련하여 이용 및 활용하고 싶은 자료유형(중복응답) ····· 64
[그림 20] 한국구술사학회-응답자가 희망하는 구술자료 활용 용도(중복응답) ····· 65

[그림 21]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에 관한 견해 ····· 65
[그림 22]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국가자원화 시, 참여 의향 ····· 66
[그림 23]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기관 ····· 66
[그림 24]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중복응답) ····· 67

요약문

본 연구는 공동체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후대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술자료를 주요한 컬렉션으로 구축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소실 우려가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자료를 잘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공동체 자료 전산화(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공동체 속에서의 교류 협력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를 위해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코리안 메모리' 프로젝트 추진과 디지털화 자료 이용 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동체 삶의 기억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보존하는 체계를 갖추고, 전국도서관의 지역 구술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관리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술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구술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 기관이 드물어 아카이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 자료 관리가 취약하여 구술자료가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료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사건에 대해 서술하거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의미있는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음성파일, 동영상, 녹취록, 면담 일지 등 인터뷰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국내 대표적

인 구술자료 수집기관의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구술자료의 원자료가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구술자료에 대한 관리나 서비스,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기관 간에 중복수집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구술자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있는 기관은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리·기술의 한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등을 고충으로 제시하였다.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기관은 전문 인력의 부재나 시급성 부족, 예산 부족으로 구술자료의 수집이 불가하다고 보았고, 향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수집에 대한 법제화, 예산 확보, 실무자 교육 및 지침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구술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구술자료를 국가자원화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로, 구술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제공, 구술자료 장기보존 및 보존소 제공.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구술 컬렉션 구축 등을 들었다.

또한 한국구술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자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구술자료의 비공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의 부재, 타 연구자가 수집한 구술자료 맥락 파악의 어려움, 구술자료 종합목록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수행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과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술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새로운 구술 컬렉션의 구축,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장기보존처리와 보존소 제공에 관한 역할 담당을 요청하였다.

해외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미의회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 컬렉션이 대표적인 컬렉션 중의 하나로 수집, 관리, 보존, 이용되고 있었다. 각 기관의 구술자료는 국가대표도서관의 비젼과 미션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전승되어야 하는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되어 일찍부터 구술 관련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키워온 것

을 알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구술자료는 다수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발행된 것이 아닌 유일본이며 미간행물이라는 점에서 구술자료를 납본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우며,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는 납본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구술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구술자료의 저작권을 가진 구술자와 면담자로부터 각각의 활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타 기관의 구술자료를 연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포함하도록 「도서관법」 제19조를 개정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에 구술자료 생산과 수집에 대한 지원 확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술자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의 제작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술자료를 수집할 때,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보존, 활용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주체에 따른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구술자 및 면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단계에서는 제3자에 대한 익명 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도서관은 포괄성과 대표성, 차별성을 갖고 구술자료의 수집을 진행하여야 한다. 포괄성은 구술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국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 대표성은 구술채록의 표준화로 수집 및 관리 매뉴얼과 정리 및 기술 지침 개발,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제작,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차별성은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와 같은 국가적 차원

의 구술자료 관리 조직 기구와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술자료종합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독창적인 컬렉션을 제작하여 타 기관과는 다른 구술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의 연차별 종합관리 로드맵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반 조성기로 보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이행기로 구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경우, 1차년도인 2020년에는 구술자료 관련 법과 제도 정비와 함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을 바탕으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하며,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자료 수집에 관심을 갖거나 진행 중인 전국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가칭)'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채록 시범 사업으로 첫 번째 대표적인 구술 컬렉션의 제작을 준비하고,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술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차년도인 2021년에는 사업수행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채록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타 기관에서 수집하지 않은 한국인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집된 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술자료 기술 및 정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술자료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분류 및 시소러스 구축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도서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설계하고, 구술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술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마을기록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신설 또는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를 2025년에 개

소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수립하고, 구술채록 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규모 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료 보존 및 관리대행을 위한 기탁을 확대하고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자료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술자료 제작실, 열람실, 수장고를 설치하는 등 구술자료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행기에 접어드는 2023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을 확대하는 시기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확고히 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구술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채록사례집을 발간하여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사업을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구술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동 리포지터리를 기획·설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 설립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콘텐츠 및 전시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술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구술자료의 목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술자료 수집기관들과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한국의 구술자료 종합목록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구술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회계급 및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여 지역과 시대에 소속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술자료는 국내에서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을 통해 수집되고 있지만, 각각 분산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불가하여 구술자료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과 관리, 이용 및 보존에 앞장

서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의 제작을 시작함으로써 구술자료의 국가지식자원화를 공표하고 구술자료의 이용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구술기록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증거적 가치를 국가지식유산으로 후대에 전승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수집하지 않았던 구술자료 컬렉션의 수집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내실을 강화하면서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의 구술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국내의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후대에 전승해야 할 책무를 지닌 보존기관으로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생산 제작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활용할 의무가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은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이라는 전략사업 아래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이라는 핵심과제와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라는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일상적 삶 속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 기억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들은 기존의 출판물에 대한 수요 충족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 전승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도서관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아카이빙하고 소통과 공유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구술사(oral history)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전승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도구이자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구술은 부족하거나 결락된 문헌자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며, 구술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원이 소멸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술자료의 수집은 시급성을 요한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구술사를 바탕으로 한 구술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사와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에 구술사

가 활용되고, 구술자료는 사람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화하여 역사적인 사료로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료의 생산 주체가 각기 상이하고 생산기관별로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어 자료가 기관별로 산재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현재 각 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그에 따른 소실 위험과 자료로서의 활용도 저하, 구술 원자료에 대한 소홀한 관리 등 국내 구술자료의 관리 및 보존 현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의 귀중한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는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해주는 새로운 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담긴 귀중한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후대로 보존·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생산한 구술자료 현황을 정리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한국구술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해외 주요 국립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사례를 분석·정리하였으며, 국내 대표적인 구술자료 생산 및 관리기관들의 담당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구술자료의 국가지식자원화를 지향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기관의 구술자료 수집 정책을 분석하여 구술자료 수집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술자료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법·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5년에 걸친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연구 조사 내용

2.1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

구술사 연구에서 ‘구술사(oral history)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의(definition)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 구술사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구술사와 구술자료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구술사 인터뷰로 수집된 구술자료를 구술사로 보는 전통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술자료의 수집 자체를 구술사 연구로 보는 미국의 구술사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술사와 구술자료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구술사는 ‘구술자료를 통한 역사쓰기’라고 이해하는 반면 구술자료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구술기록’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구술사가 역사쓰기와 기록연구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윤택림, 2019). 그러면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도서관이 다루어야 하는 구술자료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관하여 도서관이 다룰 수 있는 구술자료의 개념 정의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서양과 한국에서 논의된 구술자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 다룰 구술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2.1.1 구술자료의 정의

□ 서양 구술사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정의[1)]

서양에서는 대체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구전(oral tradition)을 포함하여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구술사라고 한다. 서양에서 구술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기록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만드는 기록관리학적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로서 대안적 역사서술을 지향하는 사회사적 전통이 있다.

미국 구술사는 첫 번째 전통이 강해서 Louis Starr는 구술사를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라고 정의하였고, Donald Ritchie는 "구술사는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구술사와 구술자료, 그리고 구술자료 수집을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 구술사는 두 번째 전통이 강해서 사회사가이자 구술사가인 Paul Thompson은 피지배층의 구술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대중기억연구회(Popular Memory Group)는 '과거에 대한 개인적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술사, 구술자료, 역사쓰기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태리 구술사가 Alessandro Portelli는 "구술사란 특정한 형태의 담론, 즉 구술을 표현의 매개로 하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여 구술자료보다는 서술성(narrativity)과 역사성(historicity)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양 구술사가들의 개념 정의에서 구술사는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이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구술사가들이 일찍부터 사서들과 함께 지역사회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다루어왔다. 미국 구술사가 Willa K. Baum(1996)은 도서관에서 구술사

1)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77-79쪽.

를 수집 보존 관리하는 사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도서관에서 다루어야 할 구술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① 역사적으로 관심(연구자가 관심 있는 역사가 모든 이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일 수 있지만)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② 어느 정도 내지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면담자가
③ 개인적인 참여나 관찰(때로는 들은 이야기도 수집)로부터 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구술자와 함께 수행된
④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녹음된 인터뷰
⑤ 궁극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성테이프나 녹취록

따라서 도서관에서 다루는 구술사 혹은 구술자료는 형식적으로는 면담자와 구술자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된 구술기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나 사건에 대한 구술이어야 하는 것이다.

□ 한국 구술사 연구에서의 구술자료 정의[2)]

한국에서 구술사는 구술자료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역사쓰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술채록, 즉 구술기록의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학자며 구술사가인 윤택림은 구술자료를 "구술자가 면담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으로 얻은 자료"로 정의하고, 구술사를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 구술자와 역사가의 대화를 통해서 써 내려간 역사"라고 표현한다. 한편 역사인류학자 함한희는 구술사를 "기억을 통한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역사학자 김기석은 구술사를 "구술기록에 근거한 역사서술"로 보고, 역

2)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80-81쪽.

사학자 이용기는 “구술을 통해 쓰인 역사”라고 정의하는데, 역사학자들은 대개 구술자료에 기초한 역사쓰기를 구술사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역사학자 허영란은 “역사 속에 녹아들지 못했던 개인의 기억 또는 경험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구술사를 정의하면서도, 구술사를 ‘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서술’인 동시에 ‘구술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자료’로 보고 있어 역사쓰기로서의 구술사와 더불어 기록으로서의 구술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회학자 김귀옥은 구술사를 “구술자의 기억이 연구자와의 구술과정을 통해 이야기되고 문자화되면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사료화되는 것을 구술사로 본 것이다. 종합하면, 구술사 및 구술자료에 대한 한국 구술사 연구자들의 다양한 개념 정의는 구술사를 ‘구술에 근거한 역사쓰기’와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생산된 구술기록’ 모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학계에서도 구술사, 구술자료, 구술사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구술자료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이정연, 2009). <표 1>은 역사학과 기록학에서 학자들이 정의한 구술사, 구술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구술사 및 구술자료에 대한 개념 정의

구분	내용
역사학	• D.Ritchie(1995) :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 • P.Thompson(2000) : 피지배층의 구술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 • 허영란(2004) : 개인의 기억 또는 경험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획-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서술/ 구술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자료 • 박경용(2014) : 역사적 연구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이자 역사적 기록 그 자체
기록학	• L.Starr(1996) :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일차적 자료 • J. E. Fogerty(2006) : 구술자(narrator)와 연구자(interviewer)의 관계를 통해 구술자의 기억과 연구자의 질의를 중심으로 상호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적인 내용(text)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구분	내용
기록학	• 한국기록학회(2008) :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록 • 이정연(2009) : 구술자 또는 화자가 연구자 또는 해석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 • 김명훈(2010) :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는 영역에 대한 기록 생성 및 현재 보유 중인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와 함께 기록 속의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며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님. • 최정은(2011) : 구술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자료로, 문헌기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술기록 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문헌기록과 함께 다양한 기록군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함. 구술기록의 구분은 구술면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구술 기획 단계 기록(기획단계에서부터 구술면담 행위 직전까지의 기록, 기존의 문헌기록이나 영상기록 등)', '구술면담 기록(음성파일, 영상파일, 질문지)', '면담후 기록(면담일지, 면담후기, 녹취록)'으로 나눌 수 있고, 전후 맥락을 반영한 전단계의 기록을 이해해야 함. 면담 후 기록의 경우, 다양한 형태, 판본이 생산될 수 있음. • 최윤경, 정연경(2014) :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구술 행위를 통해 생성되는 기록물의 일종으로, 구술사를 비롯한 역사 연구의 중요한 정보 자료로 간주되며,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 영구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할 중요한 정보자원. 집단기억과 정체성 연구를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자료

이상의 구술사와 구술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할 때, 광의로서의 구술자료와 협의로서의 구술자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광의(廣義)로서의 구술자료

- 이호신(2010) : 구술자료(기록)에 대한 기획단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서와 연구계획서, 각종 행정 서식과 인터뷰 면담 후기,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된 일체의 관련 자료. 즉, 하나의 이벤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매체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것
- 표인주(2018) :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개인의 생애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질서 및 행위, 자연현상, 역사적 사건을 구술한 것

▶ 협의(狹義)로서의 구술자료

- 이호신(2010) : 구술사 인터뷰에서 직접 생산된 것으로, 구술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원저작물(1차적 저작물)로 녹음기록과 녹화기록. 구술채록을 통해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그 밖의 여러 저작물은 구술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물로, 구술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저작권 문제에 관해 상이한 특성을 나타냄.

따라서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등에서 실천하고 있는 구술사 연구의 구술자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된 구술기록이 되겠다. 그렇다면 '구술사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가 지역민이나 공동체에게 항상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관리하는 장소가 되려면 더욱 그러하다.

2.1.2 국가 차원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의 의의

미국 콜로라도 주의 사서로서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yns Nelson(2018)은 예전의 구술사가 연구자, 역사가, 민속학자들을 위한 학문적인 실천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실천이라고 보았다. 또한 구술사 인터뷰는 기록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창조의 행위로서 지역사회 단체, 조직, 도서관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구술자료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기록을 위해서 생산되는 구술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양과 한국에서 구술사 및 구술자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살펴볼 때, 공공도서관에서 수집, 보존, 관리 및 서비스(기증 포함)할 수 있는 구술자료는 협의로는 "면담자와 구술자가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서술했거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중요한 경험과 기억

을 기록한 음성파일과 동영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의로는 음성파일과 동영상, 그리고 녹취록을 포함하여 구술사 인터뷰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구술자료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물증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술자의 소장 사진이나 자료들도 관련 자료로서 보존·관리된다면, 전시나 출판과 같은 구술자료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서 디지털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구술자료(음성파일과 동영상)의 관련 자료로서 메타데이터에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도서관이 출판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던 데서 나아가 활자화되지 않은 개인의 기억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기억과 유산을 전승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 library+archive+museum)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 수집, 보존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술자료의 범위는 <표 2>와 같다.

<표 2> 공공도서관에서 다루는 구술자료의 개념 정의와 범위

구분	내용		
협의	면담자와 구술자가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역사적인 주제나 사건에 대해 서술하거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의미있는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음성파일과 동영상		
광의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생산된 음성파일, 동영상 그리고 녹취록을 포함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범위	음성파일 (녹음테이프)	면담일지	구술 공개 관련 서식(구술 공개 및 이용동의서, 검독확인서, 구술기록관리조건 협의서,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 구술 내용 상세목록 색인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상카드 등)
범위	동영상	면담후기	인터뷰 관련 구술자 소장 자료 목록
	녹취록	사진자료	

2.2 국내 구술자료 관리 및 이용 현황

2.2.1 국내 대표기관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는 2000년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출발하여 2001년 국회도서관 직제가 개정되면서 국회도서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현재,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정책과와 기록관리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구술자료를 직접 생산·관리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진행된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국회기록보존소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대한민국 정치사 및 의정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역대 국회의장단 등 국회 관련 인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 시절, 현재까지 생애에 걸쳐 중요한 일화나 사건 등 공식문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이면(裏面)의 정보를 제공함.
	수집대상	• 국회의장단, 국회 관련 주요 인사 등
	수행기관	• 구술수집은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28시간 이상, 4인 이상의 구술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 기관에서는 사전질문지를 제공하고, 총 2번의 검토작업(발주기관/의원 개인)을 통해 질문목록을 정함. 또한 구술대상인 의원을 섭외하고, 구술 산출물을 검수하는 부분은 외주업체가 아닌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수집매뉴얼 보유	• 편람을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구분		면담 결과
수집	구술자료 형태	• 녹취문, 동영상, 총서·구술집, 사진, 면담일지 • 용역업체는 녹취문, 음성, 영상파일, DVD 등을 보존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외장하드로 납품하고 있음. ① 보존용 : 원자료(raw data) ② 서비스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3자에 대한 내용이나 비공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등 편집된 형태로 제공(편집본)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구술동의서, 검독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술과정에서 기증을 권장함. • 11대 이전 국회의원의 구술자료 수집이 어려움. 예산 확충이 필요함.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서비스용 VOD로 제공되는 편집본은 열람 가능(구술자 약력, 면담자 약력, 면담일지, 해제문, 면담사진, 관련기록 확인 가능) * 관련기록 : 웹사이트, 질문지 작성에 대한 참조 기사, 간행물, 단행본, 논문, 전자저널 등 관련 리스트 제공 • 국회도서관에 비치된 구술집·총서 열람 가능 • 구술자료 서비스 초기에는 녹취문도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문자 해석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녹취문을 제외한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방문 또는 정보공개를 통해 녹취문 열람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음.
	열람·사용방식	• 온라인 검색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별도의 로그인 필요 없음) ↳ 한눈에 보기/인물별 보기/영상별 보기(주제별) • 유튜브(YouTube) 플랫폼으로 연동하여 영상자료 열람 가능
	공개범위	• 온라인을 통해 전체 공개 • 회차별 타임라인/주제별 메타데이터 제공 - 면담 기본정보 및 개요(구술사업 개요/ 구술녹취개요/특이사항)
	공개 범위	- 구술자, 면담자, 면담날짜, 면담장소, 연구기관, 총시간, 면담횟수, 녹취문 등 - 구술자 약력, 면담자 약력, 면담일지, 해제문, 면담사진, 관련 기록
	기타서비스	• 총서 출판, 온라인 열람, 내부시스템 등록
	이용자층	• 별도의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주이용자층 파악 불가 • 단순 영상자료 조회 순으로 이용빈도를 파악하는 정도
	법적 절차	• 구술자료 활용동의서 작성

구분		면담 결과
활용·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참여 : 공동간사회의 참석 ↳ 수집 지침 및 매뉴얼 작성 시 참고 •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 현황 조사(2018-2019) 협조 • 주로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교류가 많은 편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같은 국가대표기관에서 구술자료 수집 및 협력관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기록원 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의 어려움	• 유튜브 플랫폼이 개방적이라는 측면에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유튜브 내 추천콘텐츠가 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부정적인 연관 콘텐츠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음.
보존	보존 형태	• 녹취문, 동영상(보존용, 편집본), 총서·구술집, 사진, 면담일지 등
	관리 방법	• 보존소 내 보관·관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
	보존의 어려움	• 전산실은 국회도서관과 공유하는 형태로, 현재 구술자료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미디어 서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구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디어 서버 구축이 필요함.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중복 구술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관리할 필요는 있음. 이는 구술자료 수집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 단, 구술자료로서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구술자료의 단순 통합이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임. • 구술자료는 특성 및 수집·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구술자료 수집 지침·매뉴얼, 관리할 전문인력, 발주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요함.
		• 본 기관은 구술자료 수집 현황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구술자료 국가자원화에 동의하는 바임. 특히 구술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구술사연구소, 가장 많은 구술자료를 보유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직원교육, 전문가초빙 등)을 제공하여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향후 계획	• 대상별 및 주제별로 구술자료 수집을 확장할 계획이 있음. - 대상별 :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 주제별 : 역대 국회별·사례별

□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 1946년 국사관으로 시작하여, 1949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 보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다양한 인물, 정책, 사건에 대한 구술자료를 2004년부터 수집하여 2017년까지 구술자 1,942명을 대상으로 650여 시간에 달하는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구술사료선집』 24책을 간행하여 사료로서의 구술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국사편찬위원회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인물, 정책, 사건에 대한 사료로서의 구술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문헌사료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함.
	수집대상	• 각 계층 인사 (2018년부터 기획주제로 진행, 2018년 이전에는 자유공모로 주제 선정)
	수행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에서 사료의 조사수집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지역별, 소장처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사료의 소재 정보, 주요 내용, 수집의 필요성과 사료적 가치, 기수집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진행함. • 연간 구술채록 관련 사업비는 총 2억 6천만 원, 그중 자유 공모는 1억 4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기획주제인 독립운동가 후손의 구술채록은 6천만 원, 기타 6천만 원이 배정됨.
	수집 매뉴얼 보유	• 수집 매뉴얼 있음.
	구술자료 형태	• 간행물, 동영상 자료, 음성자료 등

구분		면담 결과
수집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2017년까지는 수집된 자료를 검수하여 공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당해연도의 구술자료가 그 다음 해에 바로 공개가 가능하게 됨. • 기획주제를 고집하지 않고 자유 공모로 진행한다는 것과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과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큰 어려움은 없음.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간행물 • 구술자료 목록 • 구술자료는 오프라인 기관 방문을 통해 열람 가능 ↳ 녹취문(보안각서 작성 시, 출력 가능)
	열람·사용방식	• 온라인 : 전자사료관에서 구술자료 목록 서비스 • 오프라인 : 구술자료 열람
	공개 범위	• 온라인을 통해 구술자료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 맥락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사료군(연도별), 사료계열(연구제목별) - 생산자(구술자, 면담자), 생산연도, 최종결과물, 최근 지명, 혹은 인명 관련 사건, 주제어, 해제
	기타서비스	-
	이용자층	• 하루에 1-2팀이 방문하여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법적 절차	• 보안각서 작성 후 녹취문 출력 가능 • 동영상은 열람실에서만 시청 가능 • 구술자의 동의가 있다면, 동영상과 음성파일을 대여해주기도 함.
	협력 네트워크	•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참여 •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주요 회원기관으로서 워크숍을 주관해왔고, 구술채록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음.
	서비스의 어려움	-
보존	보존 형태	• 녹취문, 동영상 자료, 음성자료, 구술선집 등
	관리 방법	• 전자사료관을 통해서 관리
	보존의 어려움	-

구분		면담 결과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현재로서는 목록화하여 PDF파일로 홈페이지 내 서비스할 예정임. • 구술자료 목록을 타 기관과 공유할 계획은 없음. •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구술사학회의 요청이 필요함. 국사편찬위원장도 한국역사통합시스템과 같은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해외사료 수집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NARA에서 공개되는 사료를 복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국가기록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임.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존의 구술채록기관들이 했던 구술채록 주제들을 다루는 것은 구술자료의 중복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만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채록을 한다면, 도서관학이나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원로 학자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하는 것을 추천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의 공공도서관들의 구술채록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하여 작은 도서관들이 공모사업에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 그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이면 좋겠음. 이때, 작은 도서관들이 수집한 구술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관리, 서비스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구술아카이브 구축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사 워크숍이나 구술채록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향후 계획	• 구술사료 수집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할 예정임.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조직개편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팀이 신설되고, 2007년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대통령기록관 직제가 신설되어 설치된 기관이다. 2019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두고 있으며, 국정 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구술기록은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초

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16대 노무현 대통령까지, 총 9명의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인사 233명을 대상으로 약 1,252시간의 구술기록을 채록하여 소장하고 있다(오명진, 2019).

대통령기록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대통령기록관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역대 대통령 국정운영 관련 자료 수집
	수집대상	• 역대 대통령 관련 인사(장・차관, 보좌관 등)를 대상으로 수집
	수행기관	•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진행함. : 조달청 나라장터 용역에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구술자 사례비는 사업 예산 내 포함 • 구술채록사업비는 연간 1억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국가기록원 본원에서는 구술기록과 관련된 예산이 없음.
	수집 매뉴얼 보유	• 수록매뉴얼이 있으나 수집・프로세스 매뉴얼은 없음. :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구술채록사업팀 내 기준을 따름.
	구술자료 형태	• 동영상, 음성, 사진, 녹취록, 관련 서류, 관리조건합의서, 기증자료, 사업 최종보고서, 외장하드 등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동의서 작성 - 구술원자료(녹음・녹화테이프), 녹취록 생산 확인 - 구술채록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관리 • 구술자료 검독 확인서(보안각서 포함) 작성 - 구술자료(동영상, 음성자료 및 녹취록 등)에 대한 면담자 검독 및 확인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없음
	열람・사용방식	• 현재로서는 구술자료 접근 불가(10년간 서비스된 적 없음) : 이용자 활용・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논의 중임.
	공개 범위	• 모든 구술자료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음. : 비공개 기록이 많고, 부분 공개라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처리함. • 향후 구술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임.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면담 결과</th></tr>
<tr><td rowspan="5">활용·
서비스</td><td>기타서비스</td><td>• 없음</td></tr>
<tr><td>이용자층</td><td>• 파악 불가</td></tr>
<tr><td>법적 절차</td><td>•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관리조건 협의서 작성함.
- 구술기록(원본 원자료, 사진 및 녹취록 등을 포함한 일체의 구술기록)에 대한 보존·이용 조건 기술
- 구술기록의 영구보존·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출판·교육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권, 각색권, 영화화권 등) 등을 구술기록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시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양도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행사를 대통령기록관에 위임
- 구술기록 전체 또는 일부내용에 대한 구술자 협의하에 비공개 처리</td></tr>
<tr><td>협력
네트워크</td><td>• 협력하지 않음.</td></tr>
<tr><td>서비스의
어려움</td><td>• 구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분할 스트리밍에 대한 기술적 고민이 있음. 즉, 구술자료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함.</td></tr>
<tr><td>보존</td><td>보존 형태</td><td>
<table>
<tr><th>구분</th><th>내용물</th></tr>
<tr><td>동영상</td><td>• 동영상 원본 테이프(아날로그) : 6mm HDV(60분용)
• 동영상 디지털 매체변환(M2T, MPEG2, MP4) : DVD</td></tr>
<tr><td>음성</td><td>• 동영상 추출 음성파일(mp3) : DVD
※유사시 대체 가능한 별도 디지털 녹음(MP3) 병행</td></tr>
<tr><td>사진</td><td>• 사진 파일(TIFF, JPEG) : DVD</td></tr>
<tr><td>녹취록</td><td>• 녹취록 원본/교정본/수정본 : DVD 및 인쇄물
※ 수록내용 : 사업명, 구술자 신상카드, 면담자 신상카드, 촬영자, 면담일시 및 장소, 면담일지 및 후기(면담주제, 주요내용, 특이사항), 상세목록 및 주제어(색인어), 녹취전문</td></tr>
<tr><td>관련서류</td><td>• 구술자 구술동의서/면담자 검독확인서/녹취록 수정안내문 등</td></tr>
<tr><td>관리조건
협의서</td><td>• 구술자 관리조건협의서(비공개 사항 등)</td></tr>
<tr><td>기증자료</td><td>• 구술자 기증자료 : 도서, 간행물, 각종 문서 등</td></tr>
<tr><td>사업최종
보고서</td><td>• 사업 최종보고서 : DVD 및 인쇄물</td></tr>
<tr><td>외장하드</td><td>• 산출물 사본, 산출물 세부 색인 목록, 구술대상자관리카드 등</td></tr>
</table>
</td></tr>
</table>

구분		면담 결과
보존	관리 방법	• PAMS 등록・보존 • 영상/음성 원자료의 경우, 원본, 라이트 버전으로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지만, 라이트 버전이 서비스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음.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음.
	보존의 어려움	• 디지털 객체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패키지 편성, 마이그레이션 등 장기보존 전략은 부재한 실정임. • 예산 확충이 필요함.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구술자료 국가자원화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움. • 대통령기록관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그러나 구술자료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무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타	전문 인력	• 현재 국가기록원의 구술자료 관리는 조직개편 후 부산기록관 (역사기록관)에서 주관하고 있음.
	향후 계획	• 현재로서는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으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1단계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집된 구술자료의 아카이브 구축이며, 구술자료의 집합적 축적, 축적 자료의 지속적 관리, 보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중적인 과정을 포함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면담 결과</th></tr>
<tr><td rowspan="6">수집</td><td>수집목적</td><td>• 현재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단계 사업에서 구축된 구술자료관을 구술사종합센터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장됨. 구술자료의 학문적, 사회적 역할 강화, 구술자료 기능 확장 강화, 구술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구술사종합센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td></tr>
<tr><td>수집대상</td><td>• 2019년 상반기까지 수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5개의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었고,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이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서비스를 담당함.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의 사업단은 해당 주제 영역에서의 경험을 가진 구술자를 섭외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함.
<table>
<tr><th>주제</th><th>연구수행기관</th><th>수집자료 건수</th></tr>
<tr><td>정당과 정치</td><td>명지대학교</td><td>95건</td></tr>
<tr><td>경제와 외교</td><td>한국외국어대학교</td><td>77건</td></tr>
<tr><td>민주화와 종교</td><td>한신대학교</td><td>67건</td></tr>
<tr><td>현대사와 군</td><td>서울대학교</td><td>69건</td></tr>
</table>
• 2단계 사업에서는 다른 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에서의 구술자료가 수집될 예정임.</td></tr>
<tr><td>수행기관</td><td>• 구술자료의 수집은 ‘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의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됨.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의 연구팀(3개)이 확정됨.</td></tr>
<tr><td>수집 매뉴얼 보유</td><td>• 구술자료의 생산과 보존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수집과 관련된 매뉴얼은 필수적임. 매뉴얼을 통해 각 연구팀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를 표준화하고 있으며, 결과물의 종류와 필요한 양식 등을 모두 매뉴얼에 포함하고 있음.</td></tr>
<tr><td>구술자료 형태</td><td>• 각 사업단이 생산한 구술자료는 구술자별로 외장하드 디스크에 담아서 제출하고 있음.
• 녹음자료, 동영상, 녹취문, 구술자신상기록부, 면담자신상기록부, 면담일지, 상세목록, 구술자검독확인서 등 각종 서식을 모두 함께 관리하고 있음.</td></tr>
<tr><td>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td><td>• 구술채록에 앞서 구술자의 구술사 인터뷰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며, 녹취문이 완성된 후 구술자의 검독확인서, 구술자료 기증 및 활용동의서(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 포함)를 받고 있음.
• 초기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결과물이 제출되어 연구팀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연구수행이 지속되면서 해결된 상태임.</td></tr>
</table>

구분		면담 결과
수집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내부의 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자료의 수집까지 염두하고 있어 예산이나 관련 인력이 부족하며 협조체계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었음.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술사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동영상, 녹음자료, 녹취문, 구술사 신상명세서 등)를 전면적으로 공개함.
	열람·사용방식	• https://mkoha.aks.ac.kr/IndexMain.do
	공개 범위	• 디지털 아카이브와 별도로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동영상, 녹취문, 구술자 이력 등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기타서비스	• 내부 연구진에게는 별도의 서약을 받고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대여함. • 구술사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이용자층	• 별도의 분석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법적 절차	• 구술동의서, 검독확인서, 구술자료 공개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음. • 구술자가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술자 보호를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협력 네트워크	•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구술사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구술사 연구수행 주체들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비스의 어려움	-
보존	보존 형태	• 녹음자료, 동영상, 녹취문, 구술자신상기록부, 면담자신상기록부, 면담일지, 상세목록, 구술자검독확인서 등 각종 서식을 모두 함께 관리하고 있음.
	관리 방법	•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시스템에 탑재하여 디지털아카이브로 관리하고 있으며, 외장하드는 구술자료관 내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함.
	보존의 어려움	-

구분		면담 결과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가능성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2단계 사업 방향은 내부 연구팀에서 수행된 구술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술사종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지만, 외부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참여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과 관련된 영역을 잘 개발하면 될 것임.
기타	전문 인력	• 책임자 및 구술사 사업 관련 전임연구원이 있음.
	향후 계획	• 올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구술자료 일부를 기증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임.

□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은 파주시청 소속으로, 20만의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 대표도서관이다. 파주 중앙도서관은 이례적으로 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사서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파주시 기록물(민간기록물) 수집(구입・기증), 기록물 평가 프로세스 구축, 지역자료 수집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기록물 전시・기획, 라키비움 건립 추진, 기관 연계 협력 자료 수집, 기관 및 공동체 아카이브 추진, 시민참여 기록화 사업,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기록 수집 업무 등 지역 기록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구술자료는 2017년 3월,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라는 주제의 마을아카이브 기획강좌를 개설하여 시민채록단을 결성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민들의 구술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면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현재까지 마을아카이브 기획강좌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채록단의 결과물은 ‘휴먼 IN PAJU :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12명의 구술자료를 편집한 구술채록집을 출판하여 단행본

의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한편 2019년 7월에는 ‘휴먼 IN PAJU 시민채록단사업’이 한국매니페스토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도서관 서비스 측면의 발상에서 시작됨. •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했을 때, ‘당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네에 오래된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작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휴먼 IN PAJU”를 시작함. • 파주시 내에서 구파주와 신파주 간의 지역 격차가 많이 심한 편. 현재 구파주에 있던 인구들이 신파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갖는 박탈감이 큼. 한편 파주라는 도시는 역사적·지리적·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며, 특히 역사적으로는 장길산, 임꺽정 등 소설에 나오듯이 임진강 나루터와 같은 장소가 중요한 공간으로 비춰짐. • 중앙도서관은 차별화된 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됨.
	수집대상	• 지역 내 40년 이상 삶을 일궈온 주민들
	수행기관	• 2017년 3월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구성된 시민채록단 12명 - 성인, 월 2회 주기로 시민채록단 모임 진행(멘토, 작가 포함), 2인 1조로 1명의 구술을 채록하였음. • 구술자료 수집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채록단 내 기록학 전공자, 출판계 종사자, 역사학 전공자 등 포함됨) •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예산은 단행본 제작과 구술 강좌만 포함됨. 나머지는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로 이뤄짐.
	수집 매뉴얼 보유	• 아카이브 강좌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구술자료 형태	• 단행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구술 원자료(일부)

구분		면담 결과
수집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라키비움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술기록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해 논의 중임. • 시민채록단 내 지식・정보 격차가 발생하면서, 합의 도출의 어려움. • 구술자료 수집대상 선정의 어려움(개인적 부담감, 청탁 등). • 시민채록단 대상 교육의 전문성 확대가 필요함. •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예산 필요함(자원봉사 실비 및 구술자 사례비 등).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구술자료집 단행본 • 기획전시 자료(전시기간 내에만 열람 가능)
	열람・사용방식	• 자료실 내 비치 자료(단행본) 열람 및 대출 가능 • 1층 커뮤니티 자료실 내 컬렉션 코너에 마련된 전시 관람 가능 ※ 기존의 도서관서비스 방식과 같은 맥락임. : 컬렉션, 컬렉션 주체와 시민과 연결, 전시, 출판 등
	공개 범위	• 단행본 내 기술된 내용은 편집본으로, 원본 내용은 모두 담지 못함.
	기타서비스	• 1층 커뮤니티 자료실 내 컬렉션 코너에 마련된 전시 • 2층 디지털자료실을 아카이빙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로 활용 예정. 메이킹이 가능한 스튜디오, 채록실로 구성(10월 오픈) • 파주시청 인트라넷(전자결재시스템) 내 공람문서 기능 외 도서관 정보 섹터가 추가되면서 도서관의 소식지, 프로그램, 콘텐츠, 휴먼 IN PAJU 인물 등 관련 정보들을 시정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관광과, 복지정책과에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층	• 지역 주민 : 주로 고령자층(70-80대), 구술자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이 방문・열람 ※ 도서관으로서는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할 수 있는 접점이 됨.
	법적 절차	채록동의서, 활용동의서를 작성
	협력 네트워크	• 구술채록 관련하여 영상자료원에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음.
	서비스의 어려움	• 오픈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보존	보존 형태	• 단행본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
	관리 방법	• 단행본은 서가에 배가하여 도서관 자료로 동일하게 관리함. • 원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최근에 인지하면서 현재 기존의 원자료(음성자료, 영상자료)를 채록단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는 중임.

구분		면담 결과
보존	보존의 어려움	•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기록관리팀이 구성되면서 지난 2018년에 ‘DMZ 평화와 전쟁의 기록들’을 기획하여 관련 강좌, 주제포럼을 기획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경에 반영함. • KOLAS, KORMARC과 같이 표준화된 구술자료 메타데이터가 필요함. : 현재의 KOLAS는 그 자체만으로 갖는 문제점(신뢰성, 체계성 등)이 있으며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제작된 시스템으로, KOLAS 내 모듈로는 구술기록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움. • 2010년에 제작된 역사자료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문 축적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상용화는 어려움. ※ 별도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함.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가능성	• 구술자료 국가자원화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움. •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 구술채록사업 범위 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관리가 가능하고 납본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표준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배포한다면, 자동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가능함. 또한 KOLAS와의 연동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통합관리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이라고 봄. • 마을 아카이브에 관해서는 공공도서관이 하는 것이 합리적임. 즉, 공공도서관이 갖는 이점이 있음. : 대중성, 개방성, 접근성, 프로그램 연계성(컬렉션, 전시, 출판 등) 기록관은 연구자 중심이라면 공공도서관은 일반 주민, 보통사람의 자원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점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 기대하는 역할 : 시민채록단 양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및 (단기)프로그램 지원, 구술자료 관리자를 위한 구술자료 관리 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지원사업(예산 지원)
기타	전문 인력	• 처음 1년간 “휴먼 IN PAJU”를 진행하면서, 1층 컬렉션 코너를 만들게 되고, 파주시장이 관내 방문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면서 중앙도서관 내 체계적인 구술자료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함. 그에 따라 지속적인 구술자료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록관리팀 구성을 요청하였고, 6개월 이후 7월 8일, 중앙도서관 내 기록관리팀이 만들어짐. • 기록관리팀은 기록연구사, 사서, 학예연구사로 구성됨. 기록연구사도 신규로 채용하여 기록사업의 체계를 정립(조례, 라키비움 등)하고, 학예연구사는 12년간 시청에서 학예직으로 근무한 인력을 중앙도서관으로 발령하고 시청에는 신규로 학예직을 채용함. 이로써 학예직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범위를 넓혔다고 생각함. 사서는 시민채

구분		면담 결과
기타	전문 인력	록단을 담당하고 있음. • 기록에 대한 파주시장의 관심이 높은 편으로, ‘시장 지시사항’ 으로 “휴먼 IN PAJU”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읍·면·동 마을 살리기’에 관심이 많고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함.
	향후 계획	• 중앙도서관의 기록화 사업을 위한 라키비움 건립 계획을 진행하는 중임. 그 일환으로 시장 보고회가 있었으며, 전문가를 통해 기록화 방향성, 단계별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개인 구술채록에서 마을 구술채록으로 전환하는 과정임. 주제는 시민채록단에서 결정함.

□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서부지역을 아우르는 거점도서관으로 파동도서관(파동), 무학숲도서관(황금·지산동) 2개의 분관을 두고 있다. 용학도서관은 향토자료 수집사업을 수행하여, ‘도서관, 우리 마을의 기억을 담다’라는 주제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진전을 기획하여 지역의 옛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과 사진 속 주인공들의 구술채록 자료를 함께 전시하였다(영남일보, 2018. 12. 12).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대구 수성구의 향토자료 수집
	수집대상	• 대구 수성구의 어르신들
	수행기관	• 수성구청의 1년간 인력지원 사업, 2명을 계약직(최저임금)을 채용 • 2명의 기간제 담당자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구술채록을 진행함. • 구술대상은 관장님이 동장들을 만나서 지원자들을 섭외함.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 매뉴얼 보유	• 향토사업 수집사업으로 구청의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구술사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없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였고, 수집 매뉴얼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
	구술자료 형태	• 도서관용 결과물 제출용 단행본, 원고 파일, 사진 자료 • 음성파일은 없고, 구술을 수기로 받아 적은 원고 파일, 사진 스캔 파일만 소장하고 있음.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간단한 구술동의서를 작성하였음. • 구술과정에서 관련 사진을 받아 스캔하고, 사진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큰 사이즈로 확대하여 구술자에게 돌려줌. • 예산 부족으로 구청의 인건비 지원이 1년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추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구술자 섭외도 어려움. 또한 관련 교육을 받을 만한 곳도 부재함.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단행본
	열람·사용방식	• 온라인 검색을 통해 단행본의 소재 파악 후 대출 가능
	공개 범위	• 단행본만 대출이 가능, 원고 파일이나 사진 파일 등은 보존 형태로 열람이 불가함.
	기타서비스	• 출판, KOLAS에 최소한의 기본 정보만 등록
	이용자층	• 별도의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주이용자층 파악 불가
	협력 네트워크	•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구술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기관이 필요함.
	서비스의 어려움	• 단행본만 대출하므로, 서비스로 인한 어려움은 파악이 불가함.
보존	보존 형태	• 구술 원고 파일, 스캔 사진 파일 등
	관리 방법	• 도서관에서 파일로 보존하며, 장기보존까지 생각해보지 않음.
	보존의 어려움	• 아직 구술자료가 많지 않고, 파일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구술자료 보존의 어려움을 잘 모르겠음.

구분		면담 결과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국내에서 수집한 구술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의 구술자료를 관리하고 지원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지만, 구술사업의 예산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함. • 도서관의 구술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의 입장에서 관리하면 좋겠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각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해줘야 함. 예를 들면, 구술사업 예산 지원이나 구술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함.
기타	향후 계획	•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없음. •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수성문화재단에서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 중이고, 도서관에서도 2018년에 수행한 구술사업처럼 인력지원사업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구술자료를 향토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수행할 의향이 있음.

□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 · 연구 · 조사 · 기록관리 ·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이다. 2014년 10월 1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오늘날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하기 전 업무의 일부는 과거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담당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국립무형유산원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영상 및 도서) 사업을 추진함.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채록사업은 이들의 생애와 이들에게 체득, 보전된 무형의 전통지식 등 고도의 기능과 예능에 도달하기까지의 길고 다양한 과정을 구술로 채록하여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함.
	수집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명예보유자 등)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행기관	• 2011년 기획연구의 형태로 구술채록사업 실시 •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매년 구술채록 대상이나 여건에 따라 변동됨.) • 2019년 기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구술자는 총 10명, 구술시간은 구술자 1인당 최소 14시간 이상 채록하고 있음.
	수집 매뉴얼 보유	-
	구술자료 형태	• 기록화 사업은 주로 무형문화재가 지니는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등을 영상과 도서 형태로 수집하고 있음.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성이 강하며 독특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면담자로 참여해야 함.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자서전 형태로 발간
	열람·사용방식	• e-book으로 서비스 제공
	공개 범위	• 녹음자료 및 전사본은 비공개 • 녹음자료 내 구술자들의 무형문화 지식 외 사적인 요소들, 인간관계에 대한 구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음. • 구술자서전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검수를 거친 공개용 편집본임. • 구술자들의 사망 후에도 유족 및 구술에 언급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임.
	서비스의 어려움	-
보존	보존 형태	• 녹음자료, 전사본, e-book, 단행본 형태
	보존의 어려움	-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답변하기 어려움.
기타	기관의 기여도	• 구술채록 자료 및 성과는 무형문화재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촉진, 전승자에 대한 인적정보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자서전 등 콘텐츠 개발로 무형문화재 가시성 및 위상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건, 사진, 영상, 박물관의 사료를 수집 •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민주화운동 사건과 기록물 대안을 채록
	수집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행기관	• 사료관에 책정된 구술채록사업 예산은 연간 1억 원 책정됨. • 연간 30여 명의 구술자, 100시간 이상의 구술채록을 수행함. • 사건별 구술채록 3건, 인물별 구술채로 1건 • 구술채록사업은 외부발주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수집 매뉴얼 보유	-
	구술자료 형태	• 동영상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사료관의 인력 부족 • 사료관 직원 6명이 수집, 보존, 서비스, 콘텐츠까지를 다 다루고 있어서 작업이 과중함.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사건별 구술채록과 인물별 구술채록의 구분이 어렵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음. • 사건 중심의 구술채록을 하게 되면 구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지 못하여 아쉽고, 어떤 인물은 여러 사건에 참여하여 여러 번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모든 구술자들을 생애사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의 부족과도 관련됨. • 구술채록사업은 외부발주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단체나 기관과 용역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훌륭한 개인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려움. 그래서 개인 연구자들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비를 받아야만 함.

구분		면담 결과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5분 동영상, 동영상 원본
	열람·사용방식	• 5분 동영상은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열람 가능 • 동영상 원본은 관내 열람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 (관내 열람은 연간 30건 이상 요청되고 있음)
	공개 범위	• 5분 동영상, 동영상 공개(관내 열람서비스 검토 후)
	기타서비스	• 작고한 구술자의 경우, 장례식이나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의 어려움	• 열람본을 따로 제작하지 않아 열람 신청이 된 구술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열람을 승인하는 어려움이 있음.
보존	보존형태 및 방법	-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 목록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됨. 처음에는 목록만 공유하다가 차후 자료 공유까지 요구한다면 곤란함. 특정 기관에서 자료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채록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구술사네트워크와 같은 구술채록기관들의 협의체에 참여하여 다른 기관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구술채록사업의 한계는 민주화운동 가해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안된다는 것임.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기념사업회에서 하기 힘든 구술자들에 대한 구술채록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주었으면 함. • 기념사업회에서는 6.10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단위로 나누어서 103명에 대한 구술채록을 하였다면, 전국 규모의 대단위 구술채록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해주었으면 함.
기타	향후 계획	• 이제까지 1960년대, 1970년대 주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술채록을 해왔고, 올해 1980년대 초 유화국면 전까지 구술채록을 진행함. 향후 1980년대 유화국면 이후와 1987년 민주항쟁 시기에 대한 구술채록을 수행할 예정 • 1970년대는 민주노조 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이 빈약하여 구술채록을 추가하였음. • 역사정리사업에서 1960년대, 1970년대 사료들을 목록화 및 사료화 • 2020년에는 사료관에서 “촛불집회”에 관련한 구술채록 예정

구분		면담 결과
기타	기관의 기여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관 구술채록이 시작된 초기부터 제대로 사료관이나 사업 설계를 하여 시작하였다고 생각함. •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효재 선생님의 구술자료를 요청하여 구술자의 동의를 얻어 단행본을 출판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사료들을 수집하여 축적하였다고 평가함.

□ 외교사연구센터

외교안보연구소는 국립외교원의 소속기관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외교안보연구소 내에 5개의 센터가 있는데 외교사연구센터는 그 중 하나이다. 외교사연구센터는 외교정책 결정과 외교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외교자원을 발굴 및 수집, 분석, 편찬하여 외교사 연구와 외교관 교육에 기여하고자 2011년에 개소되었다.

외교사연구센터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외교사연구센터의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외교정책 결정과 외교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외교자원을 발굴 및 수집, 분석, 편찬하여 외교사 연구와 외교관 교육에 기여하고자 함.
	수집대상	•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의 초기 외교관 (2016년까지 개인 구술생애사 구술채록을 수행함)
	수행기관	• 구술채록사업 예산은 연간 5천만 원 정도 책정됨. • 연간 2-3명의 구술자, 20-30시간 정도의 구술채록을 수행함.
	수집 매뉴얼 보유	-
	구술자료 형태	• 단행본

구분		면담 결과
수집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2011년~2016년까지 외교관 구술 생애사 채록에 대한 비판을 받음. (인물의 구술이 주관적이라는 평가. 학계에서는 구술 생애사 수집을 인정하지만 국회나 외교원 내에서는 공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비판 받음. 따라서 구술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 • 2017년부터 주제별 구술채록으로 변경함. 외교관들의 구술자서전이라는 비판 때문에 구술 생애사 인터뷰 내용 중에 외교사 외의 생애사는 최소화하여 단행본을 출판하고 있음.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단행본 - 편집본으로 단행본 출간 - 인물별 출판된 단행본은 온라인 서비스로만 제공
	열람·사용방식	• 오프라인/ 온라인
	공개 범위	• 인물별 단행본은 온라인 서비스로 열람 가능 • 수집된 원본 구술자료는 모두 3급 비밀문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오프라인 열람 불가능 • 외교원 내에서도 3급 비밀문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열람이 가능 • 앞으로도 모든 구술자료는 3급 비밀문서로 지정, 공개하지 않을 예정
보존	보존 형태 및 방법	-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한 기관이 통합관리하는 것에 찬성.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오프라인 열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건 해당기관에 가면 전체 구술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열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외교사연구소로 연결하여 서비스하는 것에 동의함. • 현재 구술채록기관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구술자료 수집은 잘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부족함.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함. 또한 국회도서관에 동영상 자료실이 있듯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구술자료 서비스실을 만들어서 구술자료 목록과 열람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함. • 도서관은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남. 따라서 지역민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구술채록을 지원했으면 함. 예를 들면 강원대 한 교

구분		면담 결과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수가 강원도 재야 통일운동가 구술채록을 한다고 할 때, 지역에서 필요한 구술채록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여 구술자료를 관리 보존 서비스한다면 통합관리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라 판단됨.
기타	향후 계획	• 인물 구술채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따라 2017년부터 주제별 구술채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 - 2017년 :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한중수교' 주제로 구술채록함. - 2018년 : 연구소 내 다른 사업 일정으로 구술채록을 수행하지 않음. - 2019년 : '북방외교' 주제로 구술채록 진행하고 있음. • 주제별 인터뷰를 하니까 주제에 집중이 되어 구술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집단인터뷰도 가능하여 그 주제에 대한 증언을 다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함. •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못함.
	기관의 기여도	• 외교관이라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구술채록을 해 왔다고 생각. 구술자서전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 한국에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나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정치학 연구자나 외국의 연구자들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료로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외교 문서로서 알 수 없는 외교사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구술을 통해 확인 가능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한국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작하여 2005년 8월 민간 자율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된 기관이다. 현재 예술 기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료생산을 위해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과 공연 및 전시 영상제작사업을 진행하는 등 아카이빙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구술자료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구술채록기관이자 수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면담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문항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에 따른 예술사 연구의 단절과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결락의 보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수집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문학, 대중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원로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된 주제를 수집함.
	수행기관	• 아르코예술기록원이 보유한 구술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과 개별 계약을 체결함.
	수집 매뉴얼 보유	• 2003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초설계 작업을 통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장르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음.
	구술자료 형태	• 영상자료, 녹음자료, 녹취문, 관련 사진이나 기록물, 관련서식(구술동의서, 구술자료검독확인서, 자료공개허가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구술자와 면담자의 검독을 거치고, 자료공개허가서를 취득하여 구술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비공개를 요청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함.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녹취문(온라인/오프라인), 영상자료 및 녹음자료
	열람·사용 방식	• 비공개 영역을 제외한 녹취문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자료나 녹음자료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공개 범위	• 홈페이지 내 아르코예술기록원 회원 가입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본 녹취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영상과 녹음자료는 오프라인으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이용자 열람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보존	보존 형태 및 방법	• 구술자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중성지 상자에 보존함. • 녹음자료와 동영상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CD에 저장하여 보관함.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통합 목록을 통한 정보검색 환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술자료 원문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진행하기 어려움.
기타	향후 계획	• 매년 10-15건 정도 구술채록 지속 추진 예정

구분	문항	면담 결과
기타	기관의 기여도	• 예술 분야의 구술채록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실시 • 예술 분야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내 도서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외 경기도와 관련된 지식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 '경기도 메모리'라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경기도민의 지역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존과 기록콘텐츠로의 활용
	수집대상	•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경기도민 이야기' '수려선', '경기도민의 삶과 술 : 술과 함께 삶을 빚어가는 경기도민 이야기' 등 매해 선정된 주제에 따라 구술자료를 수집함.
	수행기관	• 매년 사업 수행 기관을 공개입찰하여 선정하고 있음.
	수집 매뉴얼 보유	•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구술자료 형태	• 인터뷰 현장을 동영상으로 제작 • 단행본으로 제작 • 원자료(동영상 원본) 도서관 내 보관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매년 기획주제 하나 정도만 수행하고 있음.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메모리 코너에 영상 및 관련 자료 제공

구분		면담 결과
활용·서비스	열람·사용 방식	•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편집본) 제공 • 해당 내용을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국내외 유관기관에 제공
	공개 범위	• 홈페이지 및 단행본은 제한 없이 공개
보존	보존 형태 및 방법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탑재 (서비스용 자료) • 구술동영상 원본은 외장하드 디스크에 보관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통합목록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지만, 구술자료 원본이나 동영상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할 수는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이나 보존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좋으리라 생각함.
기타	향후 계획	• 매년 1개 정도의 기획주제로 콘텐츠 개발할 예정
	기관의 기여도	-

□ 경기도 평택장당도서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평택장당도서관은 2014년에 개관한 시립도서관으로, 장당중학교와 효명고등학교, 송탄고등학교, 이충고등학교 등 학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 중 '우리동네 오성, 마을인물백과사전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와 이웃, 마을로 관심을 넓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3].

경기도 평택장당도서관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14>와 같다.

3) 배유미(2018.10.19.). "평택 장당도서관의 공간을 만나다". 희망평택(평택시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t_story/221380980481

<표 14> 경기도 평택장당도서관 심층면담 결과표

구분		면담 결과
수집	수집목적	•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을 확대하며, 도서관과 마을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함.
	수집대상	• 경기도 오성마을 어르신(오성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
	수행기관	• 마을 청소년과 자원봉사자가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마을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술채록 수행
	수집 매뉴얼 보유	• 간단한 수집 매뉴얼 보유
	구술자료 형태	• 녹음자료, 녹취록(녹취록은 구술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서 문맥에 맞게 순서를 조정하고 제목을 붙임), 관련 사진
	법적 절차 및 수집의 어려움	•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많이 봐서 구술한 내용을 그대로 출판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2015년과 2016년은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고, 2017년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활용·서비스	접근가능 자료	•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1, 2, 3
	열람·사용 방식	• 오성마을인물백과사전 1, 2, 3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활용 •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 등으로 관련 사진 등 활용
	공개 범위	• 책자에 포함된 내용만 공개
보존	보존 형태 및 방법	• 단행본은 도서관에 비치하여 활용 • 원본 자료 도서관에 보관 중이나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지 않음.
국가 자원화	통합관리 견해 및 참여 가능성	• 구술자료 원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면 자료 정리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함.
기타	향후 계획	-
	기관의 기여도	-

2.2.2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본 연구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7개의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관할 공공도서관에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다.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관의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여 PC/모바일 설문조사와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1,096개관을 모집단으로 한 총 응답 건수는 76건으로 약 6.9%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러한 회수율은 구술자료 수집을 하는 도서관이 아직은 소수이고 구술자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결과는 응답기관의 기본정보,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있는 기관과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기관, 그리고 구술자료 국가자원화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 응답기관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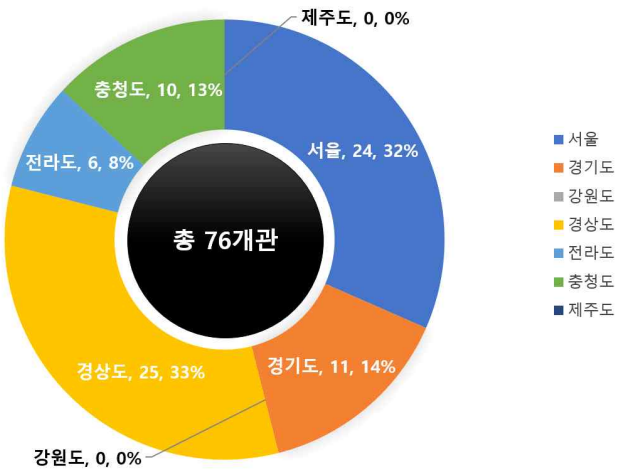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소재지 및 응답률

<표 15>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장서량 및 담당자의 근무 경력

근무경력 / 장서량	3년 이내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무응답	총합계
1만 미만	-	-	1	-	-	-	1
1만~5만 미만	8	2	6	4	2	-	22
5만~10만 미만	7	2	3	6	1	-	19
10만~30만 미만	6	4	5	5	4	-	24
30만 이상	1		1	1	6	-	9
무응답	-	-	-	-	-	1	1
총합계	22	8	16	16	13	1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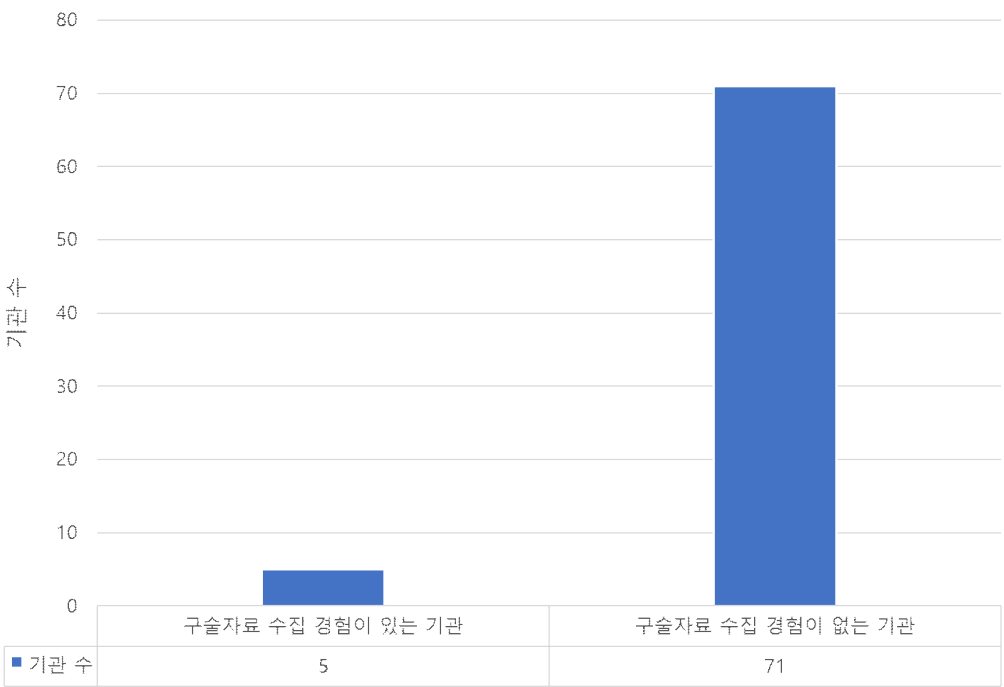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응답기관의 구술자료 수집 경험 여부

〈표 16〉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의 문항별 응답 사항 정리표

문항 \ 기관	파주중앙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영종도서관	부전도서관	용학도서관
소재지	• 경기도	• 서울	• 경기도	• 경상권	• 경상권
수집 목적	• 지역 관련 자료 수집 •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관련 자료 수집 •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관련 자료 수집	• 지역 관련 자료 수집 •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집하는 자료 유형	• 단행본, 녹취록(녹취물), 사진자료, 박물류	• 동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 녹취문(녹취물),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동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웹기사	• 단행본	• 단행본, 녹취록(녹취물), 음성자료, 사진자료
수집사업의 유형	• 자체수집 (시민채록단 운영)	• 자체수집 • 공모사업	• 자체수집 • 공모사업	• 자체수집	• 자체수집
수집 주체	• 도서관 직원 • 자원봉사자 • 기증	• 도서관 직원 • 자원봉사자	• 도서관 직원	• 도서관 직원 • 기증	• 도서관 직원 • 지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집 매뉴얼	• 없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없음

기관 문항	파주중앙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영종도서관	부전도서관	용학도서관
서비스 되는 자료 유형	• 단행본	• 동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 녹취문(녹취물),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동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자료, 웹기사	• 단행본	• 단행본
도서관서비스 시스템 내 서비스 계획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 있음
협력 네트워크	• 협력 경험 있음 • 구술채록사업 지침 공유 • 구술관련 인적 교류	• 협력 경험 있음 • 구술관련 인적 교류	• 협력 경험 없음 • 구술채록사업의 연계나 협력기관에 관한 정보 부족	• 협력 경험 없음 • 구술채록사업의 연계나 협력기관에 관한 정보 부족	• 협력 경험 있음 •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 목록 공유
협력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사네트워크의 활성화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채록기관들의 지원 기관 설립 또는 지정 •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구술채록사업 확대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사네트워크의 활성화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구술채록사업 확대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문항	파주중앙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영종도서관	부전도서관	용학도서관
수집, 관리, 서비스과정의 어려움	•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의 한계 •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의 한계 •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 자료 보존을 위한 기술 및 공간 부족 • 도서관 내 관심 부재 • 구술자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부재	•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의 한계 •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	•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의 한계	• 구술채록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구술채록기관의 네트워킹 부족

□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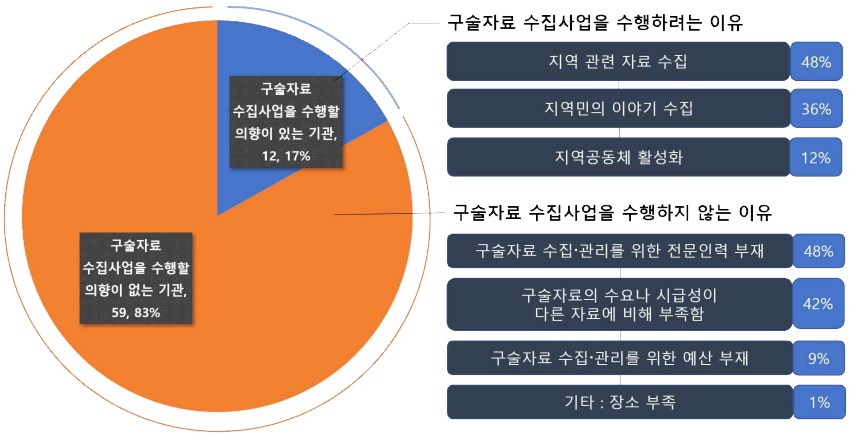

[그림 3]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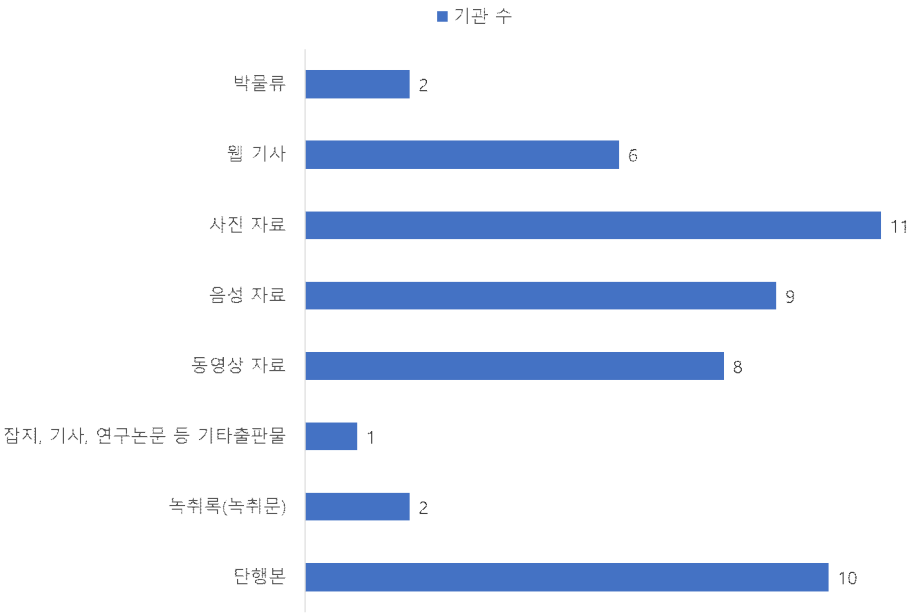

[그림 4] 향후 구술자료 수집계획이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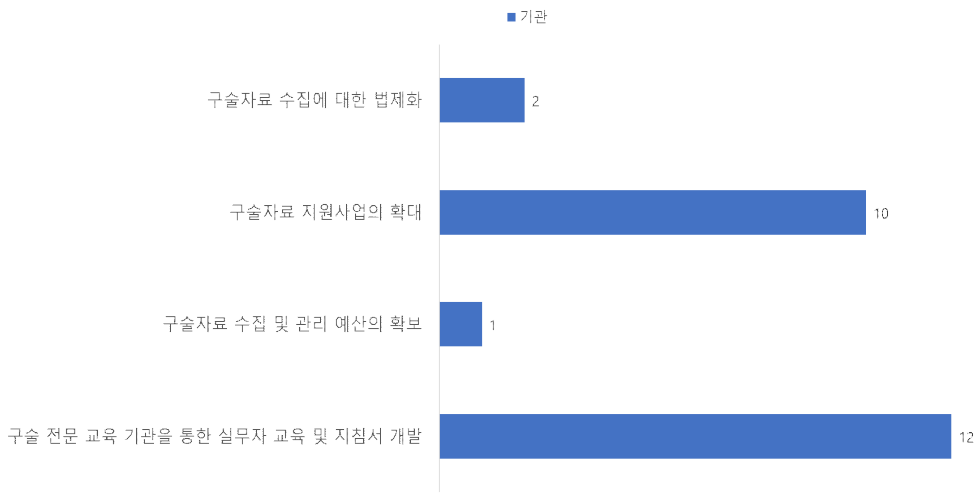

[그림 5] 공공도서관 내 구술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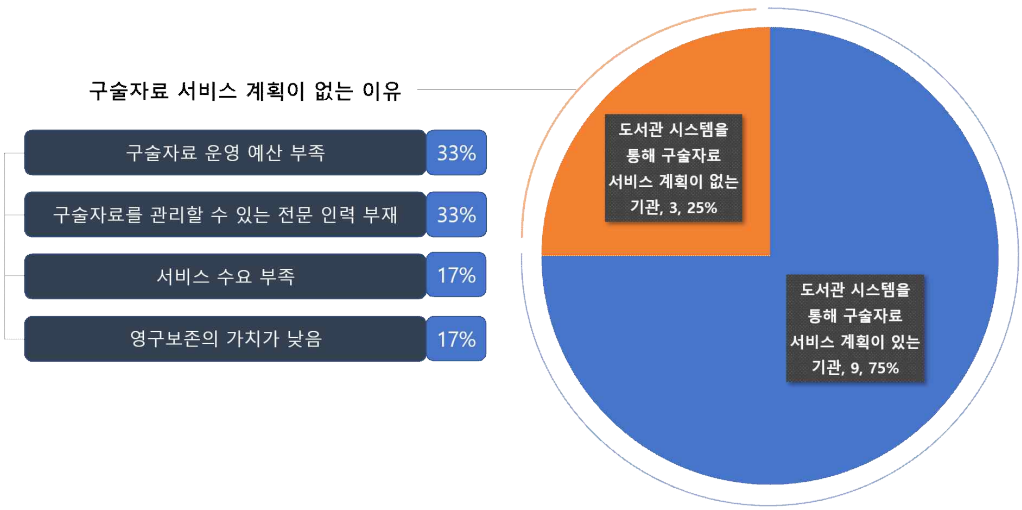

[그림 6] 도서관 시스템 내 서비스 계획

□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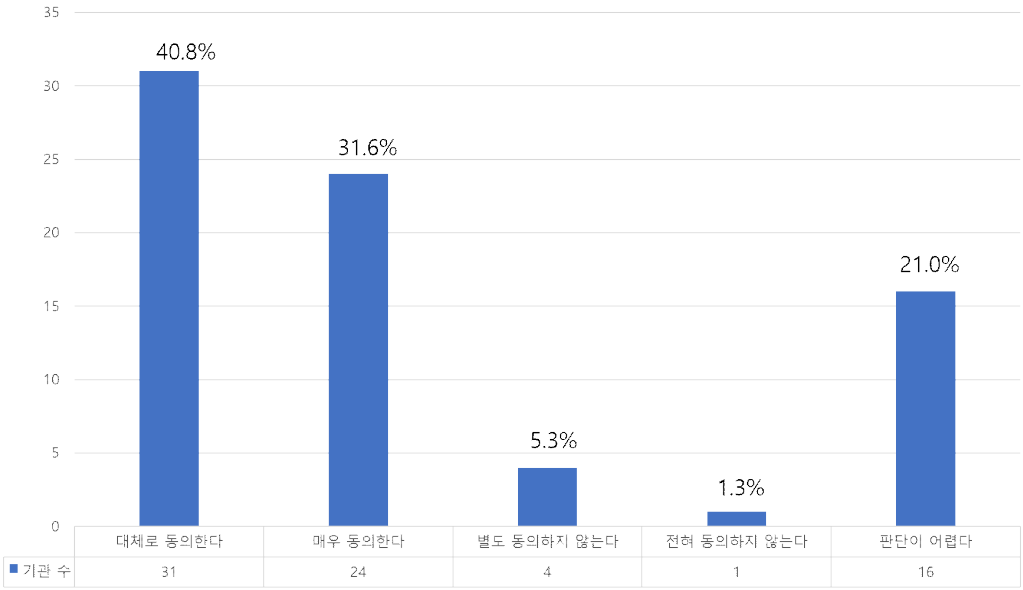

[그림 7]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에 대한 국가자원화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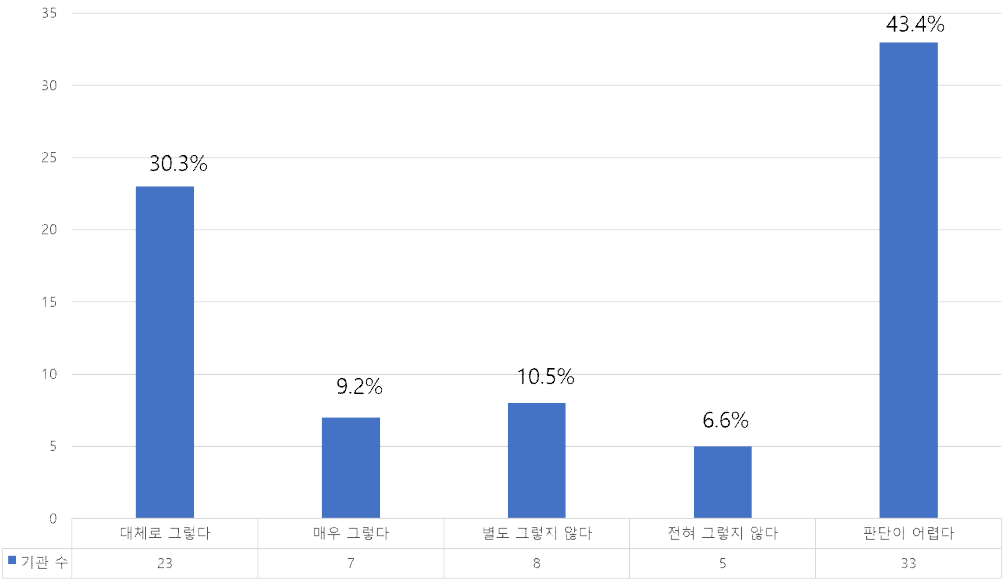

[그림 8]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참여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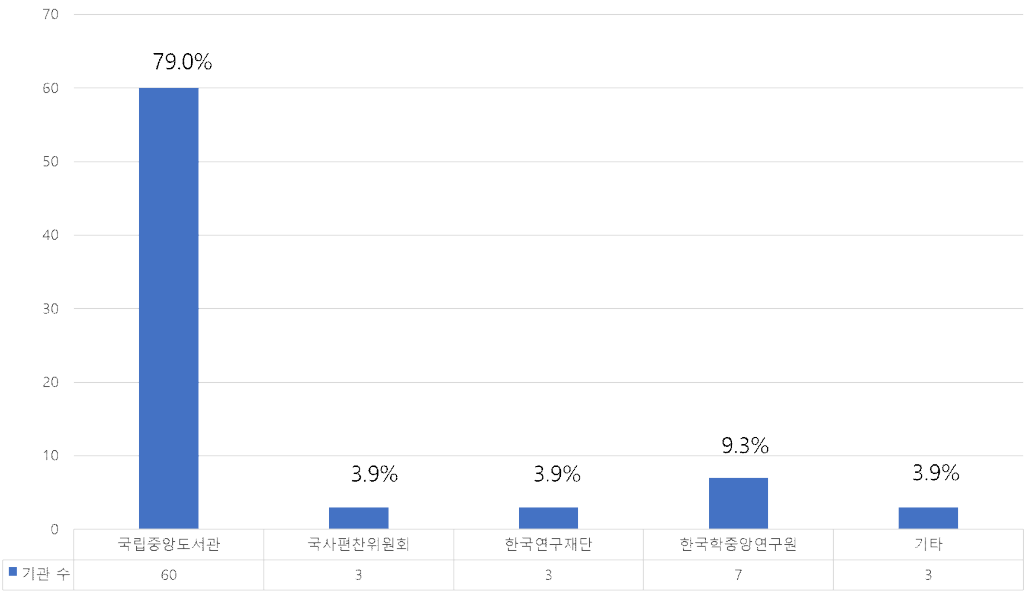

[그림 9]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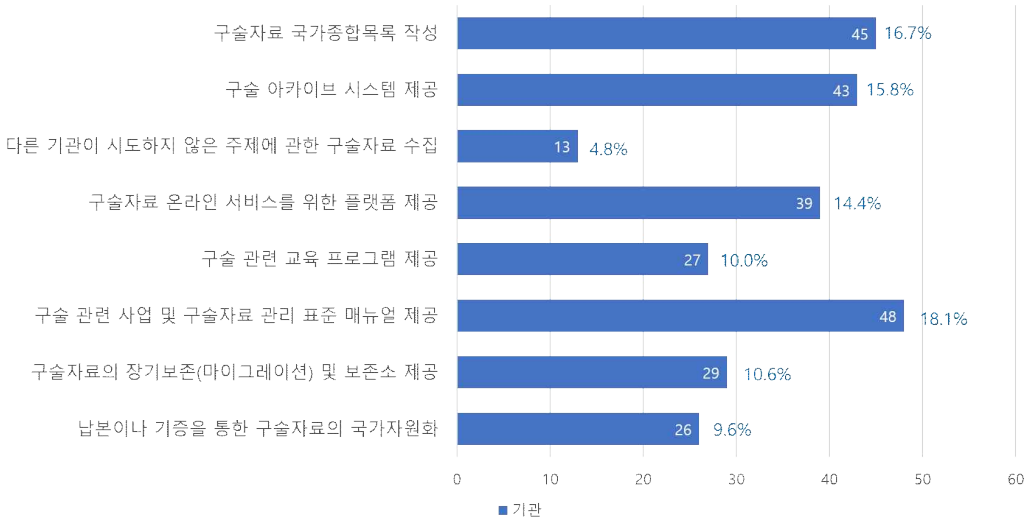

[그림 10] 전국 공공도서관-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중복응답)

2.2.3 국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구술자료 생산 및 이용 실태

국내 구술자료 현황 보고는 2018년 한국구술사연구소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전국 각 기관·공공단체 등의 구술 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조사'에 기초한 것이다.[4)]

한국에서 구술사 연구는 1980년대 말 사회단체들이 과거사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구술 증언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구술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구술채록이 증가하였다. 기관구술채록은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동안 생산된 방대한 양의 구술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다. 특별히 2009년도에 한국구술사학회가 창립되면서 학회를 중심으로 구술사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인 한국구술사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서는 2013년에는 10개의 구술채록사업 기관들의 노력으로 『구술자료 공동 목록집』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구술사네트워크의 14개 기관들이 공동 목록 파일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목록 파일 외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구술자료 현황은 거의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술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서비스와 구술 아카이브 구축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중앙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다음은 중앙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관들에서 생산한 구술자료 현황표이다(<표 17> 참고). 총 78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에 자료를 제출한 중앙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은 26개소이다.

---

4) 이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구술사연구소가 수행한 국사편찬위원회 지원의 '전국 각 기관·공공단체 등의 구술 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조사'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선영란이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선영란, 2019,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주소」,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표 17> 중앙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자료 현황

기관명	구술주제	생산 년도	기본 목록	간행물	서비스 방식	비고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역대 국회의장단, 국회 관련 주요 인사 구술	2012~	O	4권	온라인 (15분), 열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	2002, 2015	O	4권	×	출판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가 구술	2012~ 2013	O	4권	×	출판용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와 재외동포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 구술	2004~	O	24권	열람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토대연구 사업관련 구술	2002~	×	-	-	기초 학문자료 센터DB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운동 증언, 격동기 지식인, 해방과 분단, 민주와 독재, 건국과 갈등, 한국전쟁과 박정희정부 관련 인사 구술	1986~ 2004	×	7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정당정치, 한국군, 경제 외교, 민주화와 종교 관련 인사 구술	2008~	O	×	온라인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역대 외교관의 구술	2011~	O	15권	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자 구술	2001~ 2003	×	4권	×	
국가기록원	민간 구술	2007~	O	×	비공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관련 구술, 통일·외교 관계 인사 구술	2008~	×	×	비공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위안부, 강제동원, 친일 반민족, 동학 등 위원회 사업 구술	2001~ 2013	×	16권	×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	2002~	O	4권 (목록집)	온라인 (5분), 열람	
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2005~ 2014	O	9권	온라인 (3분)	
국립국악원	원로 국악인의 삶과 예술세계 구술	2011~ 2016	O	21권	열람 (녹취문)	

기관명	구술주제	생산 년도	기본 목록	간행물	서비스 방식	비고
국립남도국악원	남도 국악인 구술	2004~ 2008	O	4권	×	출판용
국립부산국악원	영남권 국악인의 구술	2009~ 2016	O	5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미국평화봉사단, 6.29 선언 관련 주요인사 구술 등	2012~	O	1권	온라인 (기증자 구술)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2017~	O	×	온라인 (전체)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	2017~	O	20권	온라인 (15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2003~	O	210권(총서 5권, 자료집 205권)	열람, 온라인 (녹취문 ○, 영상 · 음성×)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 구술채록	2004~	O	78권 (증언집 4권, 자료집 74권)	열람 (녹취문 ○, 영상 · 음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구술증언	2009~ 2012	O	4권	온라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박물관추진단	스포츠발전에 공헌한 원로 구술	2016~	O	2권	온라인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구술증언	1992~ 2017	O	11권	비공개	
국립여성사전시관	이주여성, 다양한 직종 종사 여성 구술	?	O	×	비공개	위안부 특별전

□ 지방정부기관 산하기관

다음은 지방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관들에서 생산한 구술자료 현황표이다(<표 18> 참고). 중앙 기관을 포함하여 총 78개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에 자료를 제출한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은 21개소였다.

<표 18>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 구술자료 현황

기관명	구술주제	생산 년도	기본 목록	간행물	서비스 방식	비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과정에서 주민 구술 수집	2007~	×	9권	×	출판용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의 변화상과 서울개발 정책, 서울시정과 공무원, 방적업과 노동자 등의 구술	2009~	O	8권	열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지역 주민 생활사 구술	2010 ~2018	O	2권	열람 (녹취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마민중항쟁 관련인사 구술	2006 ~2017	O	2권	열람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여성 생애구술	2014 ~2017	×	4권	×	출판용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대구 지역 주민의 생애사	2013 ~2017	×	100권	×	출판용
인천연구원	인천 시민의 구술생애사, 지명유래담 수집	2012 ~2017	O	4권	비공개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2006 ~2015	O (피해자 구술 제외)	17권 (증언집 16권, 목록집 1권)	비공개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울산의 근로자, 염부, 해녀 등 구술	2013 ~2017	O	4권	×	출판용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민의 삶이야기	2015 ~2016	O	3권	온라인	
수원박물관	수원 근현대 지역사 증언	2001 ~2017	×	11권	×	출판용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시리즈	2011 ~2017	×	5권	×	출판용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의 구술현대사	2016 ~2018	O	2권	×	출판용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지역 주민 구술	2013 ~2014	×	2권	×	출판용
충북여성재단	충북지역 여성생애 구술	2016 ~2017	O	2권	비공개	출판용
전주문화재단	전주지역 마을조사 과정 중 주민 구술	2015 ~2018	O	23권	비공개	출판용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 전통 예인 구술	2011 ~2017	O	24권	×	출판용

기관명	구술주제	생산 년도	기본 목록	간행물	서비스 방식	비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경북 여성의 삶	2007 ~2017	×	5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해녀박물관	제주여성, 여성무형문화재, 해녀 등 구술	2004 ~2014	×	4권	-	해녀 전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제주해녀 음식문화 등 구술	-	×	×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관련 증언채록	1989 ~2015	×	20권	비공개	

※ 본 표에서 '기본목록'은 각 기관에서 수집한 구술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철을 말한다. 대체로 구술주제, 구술자, 면담자, 생산년도, 구술시간, 공개여부 등이 담겨있는 자료이다. 기관의 기본목록이 있는 경우 ○, 없으면 × 로 표시하였다. 간행물은 자료집이나 증언록, 회고록, 구술총서, 생애사 열전의 형태로 발간된 책을 말한다.

□ 국내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보존 현황

국내 중앙 및 지방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생산한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가)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구술증언 원사료 보존 문제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과 대일배상, 위안부 문제, 광복 후에 일어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민간인학살, 제주4.3, 부마민중항쟁, 광주5.18 등의 구술증언 작업과정에서 생산되었던 구술자료들의 원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누구의 구술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구술자의 상당수가 사망한 상황에서 당시 그들이 남겼던 구술은 앞으로 한국사 연구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구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관리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고자 수집된 구술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연구나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비공

개’ 상태로 수집기관이 소장하고 있거나, 정리되지 못한 채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근현대사 관련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자료에 대한 공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정리 및 서비스를 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나) 기관들의 구술자료 원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대부분 기관과 단체들의 구술자료 수집이 간행물 발간에 그 목적이 있고, 원자료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구술자료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의 예가 간행물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는 ‘오럴히스토리 총서’ 발간을, 대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생애사 열전 100선’을 발간하고 그 간행물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많은 기관들은 간행물이라는 성과물을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간행물은 증언록이나 회고록이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연구서나 자료집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간행물로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된다. 즉,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녹취과정을 거치면서 구술은 수정이 가해진다. 이 점에서 원자료의 가치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도, 많은 기관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원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공개’ 상태로 보존·관리만 하는 기관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구술 원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지방지 편찬에서도 만연해있다. 그간 경기도의 많은 지역에서 편찬되고 있는 지방지 작업에 구술사 방법론이 널리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지방지 편찬사업이 끝난 뒤 원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지방지를 발간한 바 있는 경기도 광주시사편찬위원회, 하남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부천시사편찬위원회, 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편찬위원회 등이 그러하였다. 이 기관들은 단지 원고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집필을 위한 구술채록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구술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시사편찬위원회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사 편찬이 끝나면 수집된 지역사료들이 문화원이나 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존·관리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준 지방정부가 없었다. 이처럼 많은 기관에서 간행물 발간을 목적으로 구술자료가 수집되고, 그 후 원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 보존 · 활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다) 기관들의 구술자료 보존,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재

구술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도 막중하다. 간행물 발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술자료에 대한 수집에서부터 보존, 관리, 서비스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중앙의 몇몇 대표적인 기관들을 제외하고 수집, 보존 및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앙 및 지방의 공공기관과 단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술채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홍보용으로 구술자료를 이용한 간행물 발간에서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사료를 전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라) 기관들의 중복수집과 교류의 부재

구술채록기관들은 수집한 구술자료가 기관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구술자료가 중복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엘리트 구술채록의 경우, 명망가들은 여러 기관구술채록의 구술자 명단에 올라서 중복수집이 이루어졌다. 구술자료는 구술채록 주제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판본(version)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타 기관에서 수행한 구술채록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복수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구술채록기관들 사이에서 교류가 없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방치, 정보의 차단 등 자료 관리에 관한 문제점도 드러나기 힘들다.

2.2.4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 설문조사

본 연구는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구술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술자료 활용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구술사학회는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민속학, 국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학문배경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술사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비영리 학술단체이다. 조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안내를 통해 1회 진행하였으며, PC/모바일 설문조사와 이메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2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다음은 설문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응답자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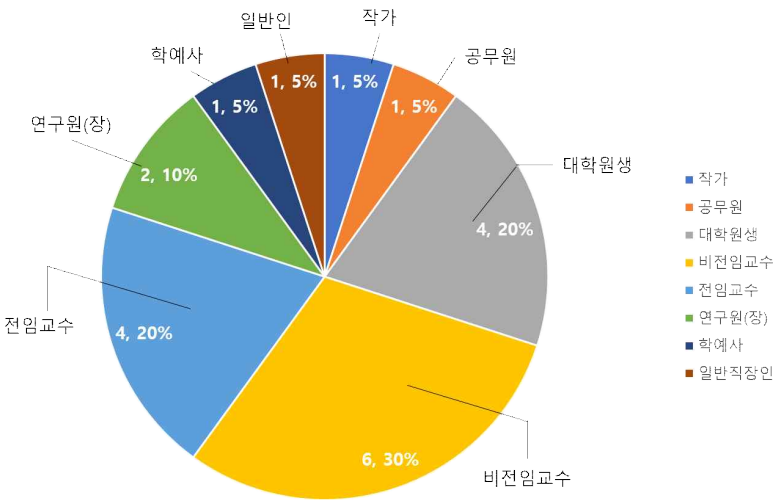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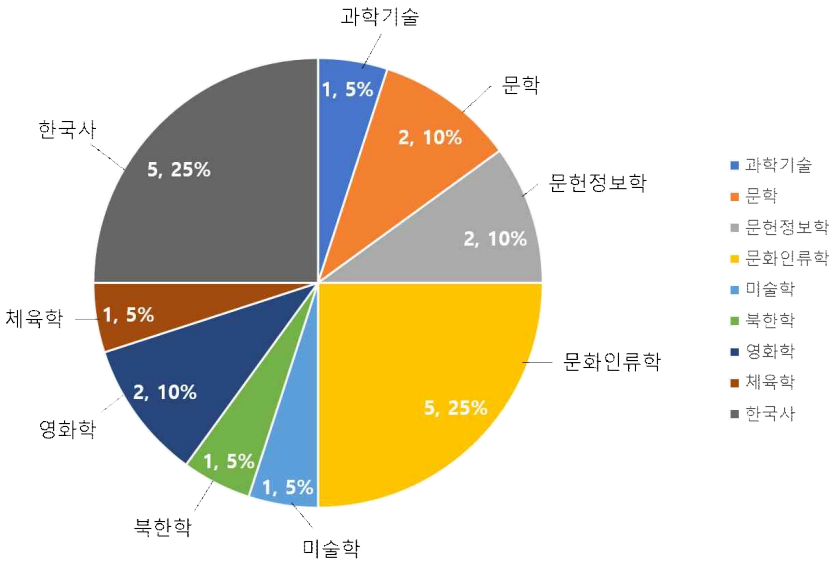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전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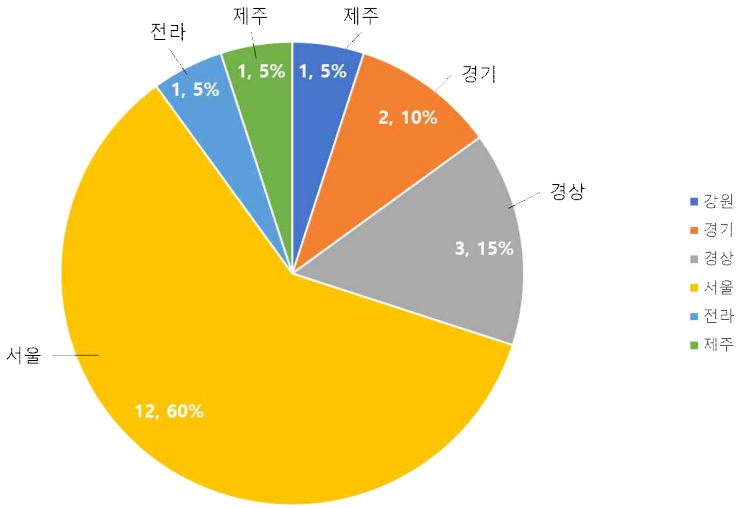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자료 이용자의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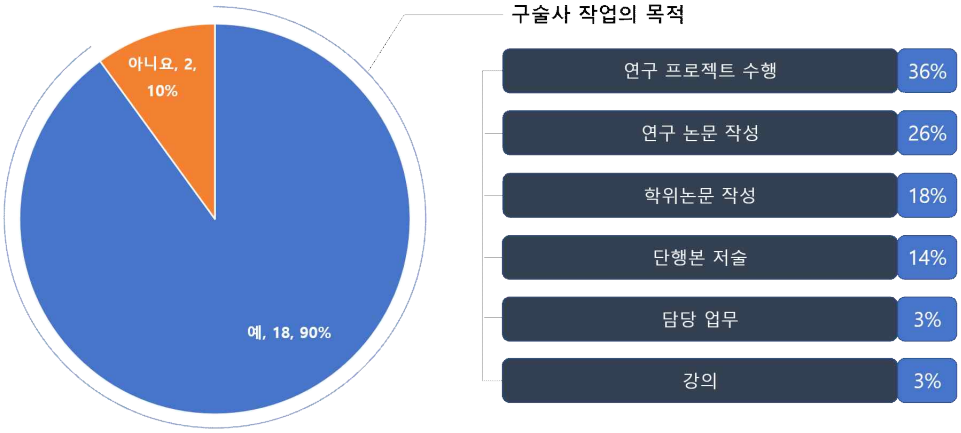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구술사학회-구술사 관련 작업 경험 여부 및 작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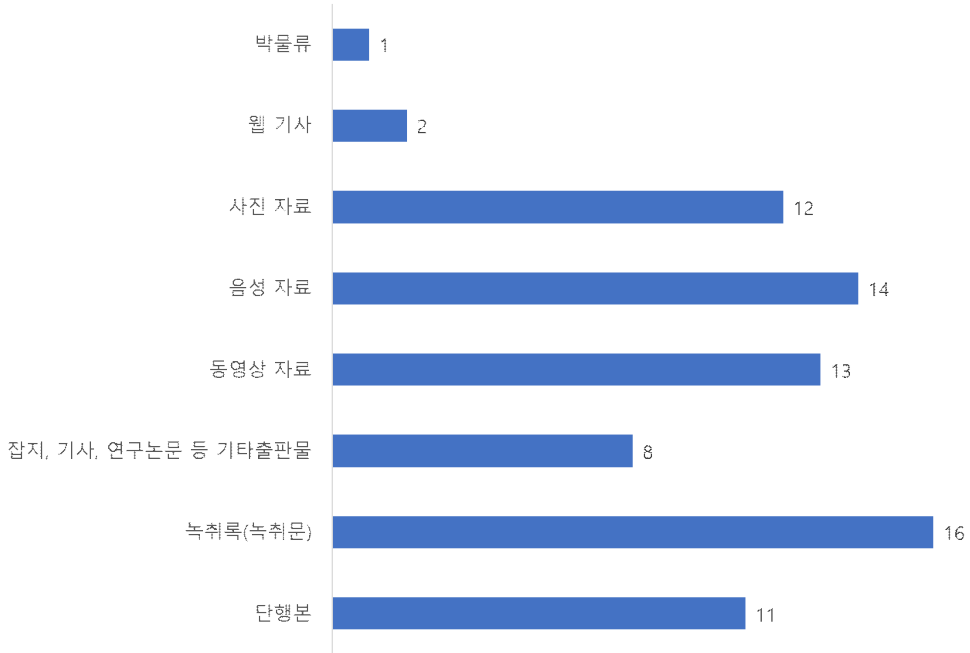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의 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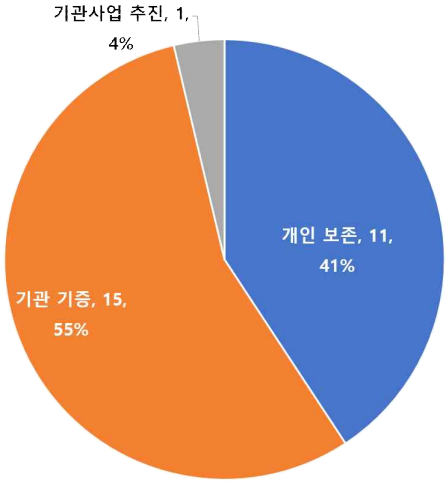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 처리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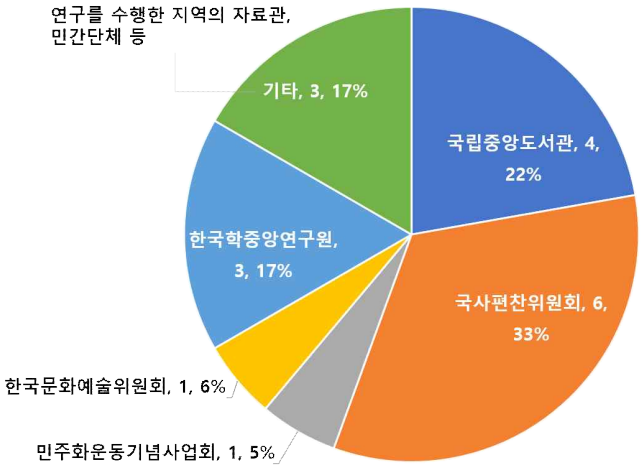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구술사학회-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기증할 경우, 선호하는 기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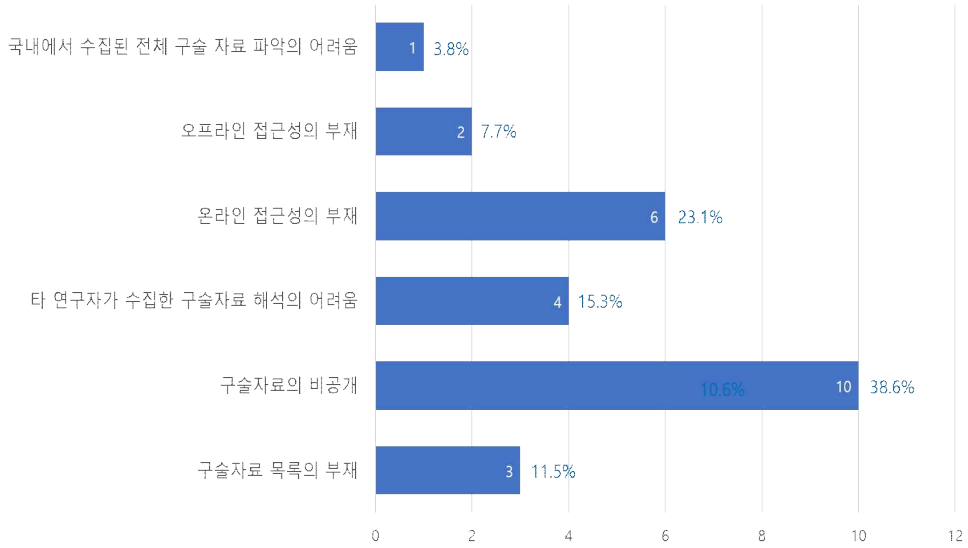

[그림 18] 한국구술사학회-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 이용 시 어려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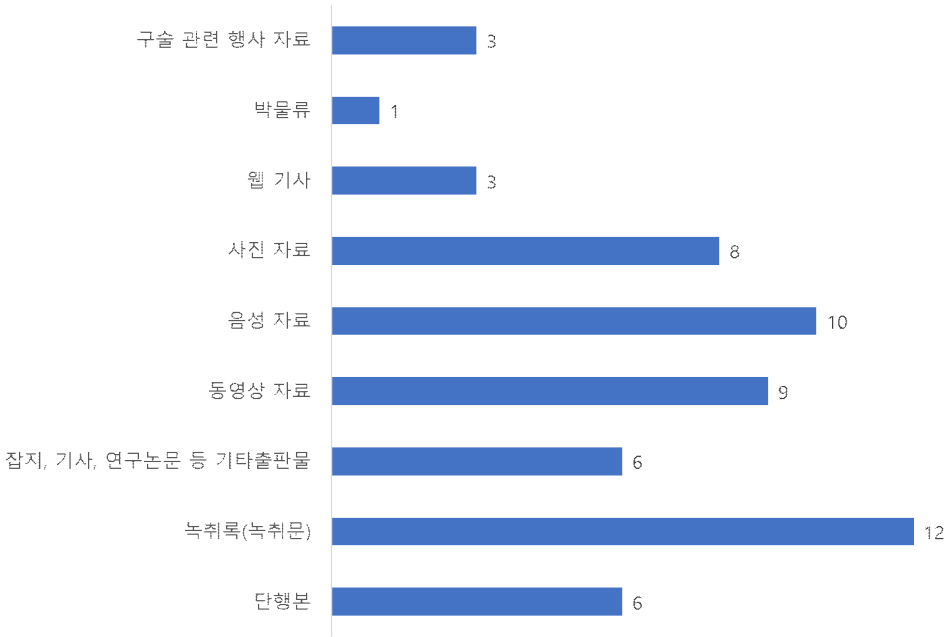

[그림 19]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와 관련하여 이용 및 활용하고 싶은 자료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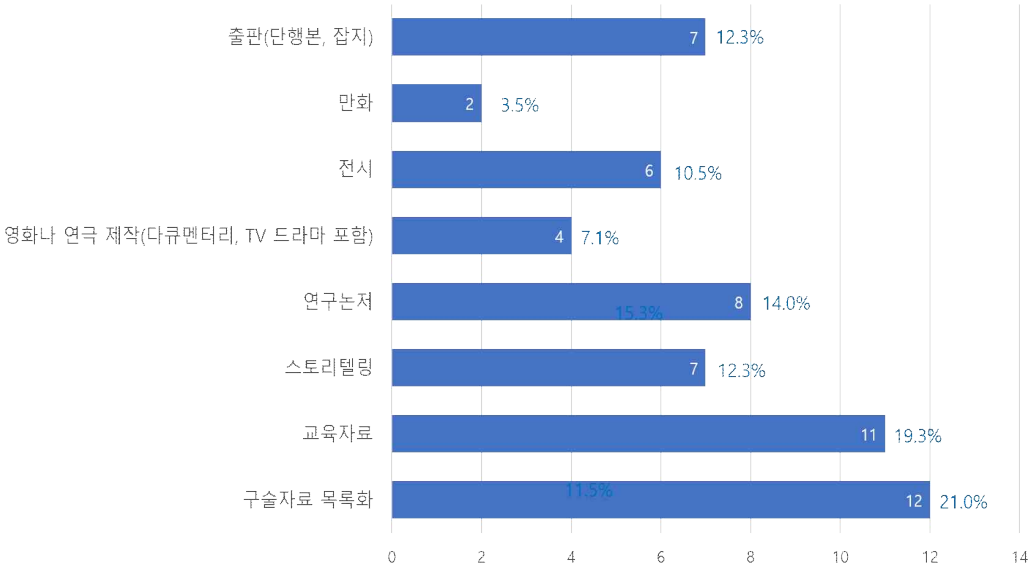

[그림 20] 한국구술사학회-응답자가 희망하는 구술자료 활용 용도(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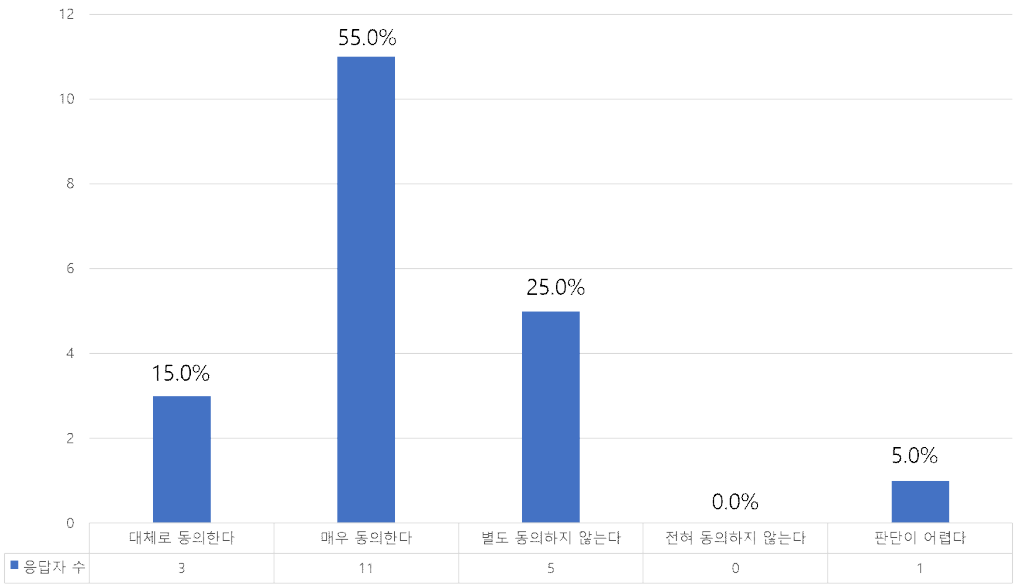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에 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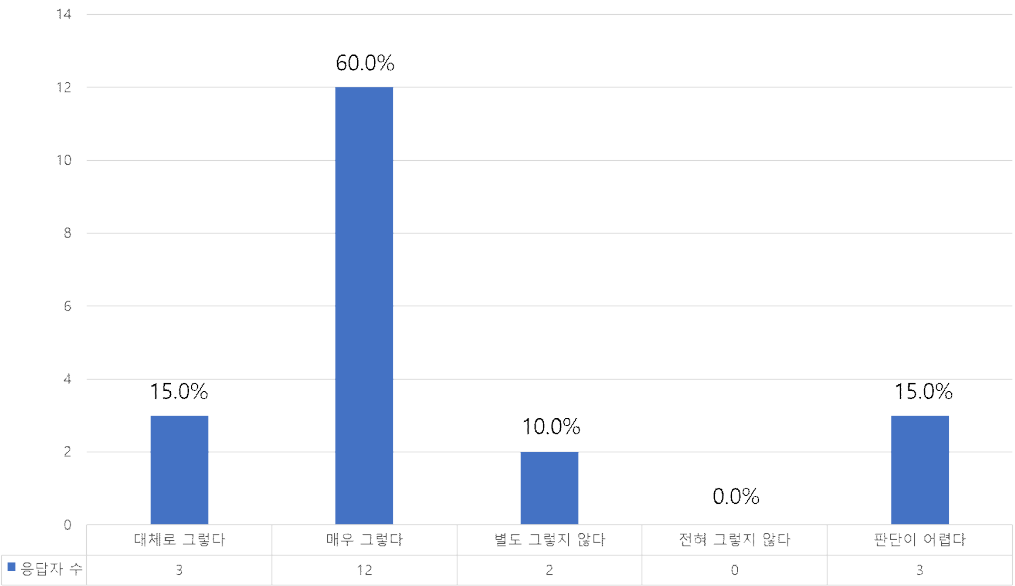

[그림 22]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국가자원화 시,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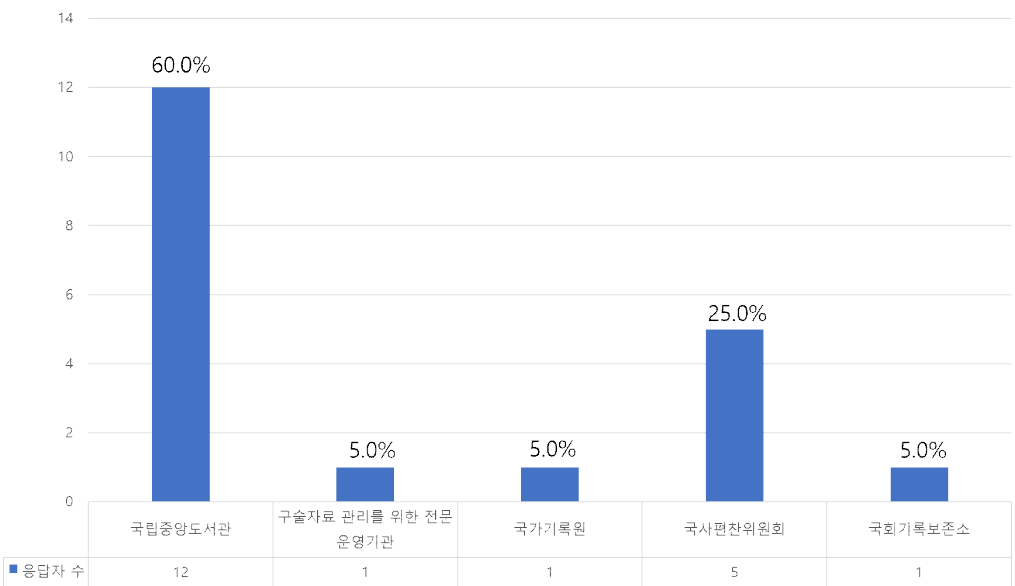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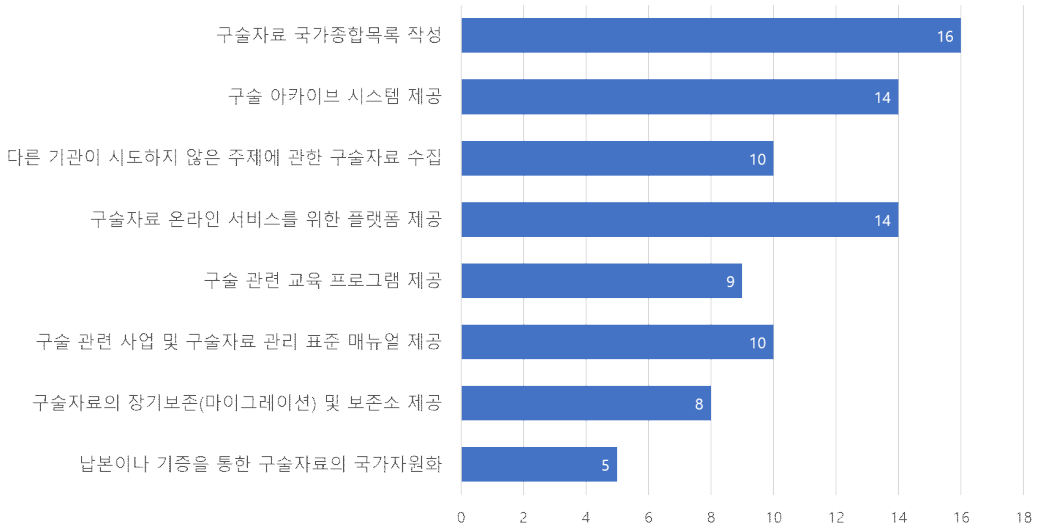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구술사학회-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중복응답)

2.3 해외 국가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2.3.1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5)]

미의회도서관은 의회, 정부, 학술 단체,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범국가적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3대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의회와 연방정부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하고, 둘째,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미국인이 관심을 갖는 인물, 사회, 집단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원본이나 사본, 대표작을 수집한다. 미의회도서관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을 수집하기 위해 각 주제 영역의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수집 정책을 수립하여 컬렉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억 6천만 건이 넘는 컬렉션 중 많은 부분이 스페셜 컬렉션(special collection)이며 비도서 자료의 형태인 매뉴스크립트, 마이크로폼, 사진, 녹음자료 등 각각의 유형에 따른 수집 정책을 갖고 있다. 특히 구술자료는 다양한 형태의 관련 자료가 생성될 수 있는데, ‘American Folklife Center(이하 AFC) Archive’에서는 미발행 민속학적인 녹음에 대한 AFC 컬렉션의 마스터 레코딩 책임은 센터가 갖고, 접근용 카피 녹음은 각각의 주제 부서와 공동 소장하여 이용자들이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출신 미국인들에 대한 구술자료는 Hispanic Division과 AFC에서 소장하게 된다. 이렇게 미의회도서관의 구술자료는 AFC가 중심이 되어 수집, 처리 및 관리하고 있다.

□ 역사

AFC의 시작은 1928년의 미의회도서관의 Music Division이 Archive of

5)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loc.gov/

American Folk-Song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의회도서관장인 Herbert Putnam(1861-1955)은 Winslow Gordon(1888-1961)에게 민속 노래와 구비 문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 Gordon은 미국 민속 음악의 헌신적인 수집가였고, 1906년부터 1917년까지 하버드 대학생으로 미국 민속 음악을 전수 조사하여 수집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연구기금을 받으며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각 지역의 민속 음악을 에디슨의 왁스 실린더 기계에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및 저술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는 미의회도서관 Music Division의 부서장으로 있던 Carl Engel에게 '밑바닥부터의 전통'을 국가도서관이 보존하고 재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Archive of American Folk-Song이 설립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민속 아카이브에 대한 사고는 텍사스 출신의 민속 음악 수집가인 John A. Lomax를 통해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 전문가들이 미국 독립 100주년, 민속, 전통, 하위문화, 민족적·지역적 다양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민속학 연구와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6년에 미 의회는 "미국의 민속생활사를 보여주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여 연구, 기록화, 영구기록 보존, 정보 봉사, 공연, 전시, 출판과 훈련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을 만드는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Public Law 94-201을 제정함으로써 AFC가 설립되었다. 1976년 9월, Folk Archive의 부서장으로서 있던 Alan Jabbour가 AFC 센터장으로 발령받아 1977년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인 'Chicago Ethnic Arts Project'와 'South Central Georgia Folklife Project'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각 지역의 문화유산 서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AFC는 1979년에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1만여 개의 왁스 실린더에 녹음된 민속학 자료를 보존 테이프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0년에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와 함께 'Save Our Sounds Audio Preservation Project'를 시작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음성 기록의 보존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컬렉션들이 추가되는데, 25만 건(8,000여 시간의 녹음)이 넘는 테네시 주 Jonesborough의 International Storytelling Center의 기증, ‘Local Legacies Project’의 일부로 수행된 미국 전역의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 800개 컬렉션, National Council for Traditional Arts로부터 National Folk Festival의 4,700시간이 넘는 공연 녹음자료 컬렉션, 비영리기관인 ‘StoryCorps project’에서 수집한 10만여 민초들의 구술사 인터뷰 자료, 1만 시간이 넘는 녹음, 5천여 개의 동영상 자료, 5,500개의 사진과 네거티브, 150여 개의 매뉴스크립트를 포함하는 ‘Alan Lomax Collection’을 기증받게 된다. 2012년에 부임한 Elizabeth Peterson 센터장과 Nichole Saylor 아카이브 부서장은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 그리고 Archie Green Fellowship과 기타 연구기금을 통해 컬렉션을 지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민속생활사 연구와 기록화를 위해 국가센터로서 미 의회가 제안한 AFC는 모든 국가의 민속 음악, 춤, 구술, 예술과 전통문화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기록화하는 것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 의회의 보존 시설 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컬렉션의 미래를 위한 보존까지 담당하고 있다.

□ 관련 법령

AFC를 위해 Public Law 94-201, 94th Congress, H. R. 6673, January 2, 1976,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Folklife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라고 한다. 이 법령은 의회에서 공표하는 내용과 법령의 정의, 센터 설립과 위원회 운영, 센터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미의회도서관장이 이 법령에 근거하여 센터의 기능을 완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령은 국가 아카이브로서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1999년에 AFC는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을 의회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한편 2000년에는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전쟁 영웅, 참담함, 공포, 승리를 배울 수 있는 정보원을 미래 세대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참전 용사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미의회도서관에 관련 기록자료를 컬렉션으로 만

든다는 법령이다. 이후에는 Public Law 114-246, 114th Congress, H. R. 4511, November 28, 2016, Gold Star Family Voice Act가 제정됨으로써 Veterans History Project를 넘어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군인들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구술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5월 12일에 미 의회에서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of 2009(Public Law 111-19)가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로 시작된 시민권 역사 프로젝트가 미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와 협업으로 시민권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게 되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 중의 하나인 시민권 쟁취 운동에 대한 기록은 미국의 후속 세대들이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자유와 평등의 꿈을 향한 투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조직

AFC의 조직도를 보면, 총 2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irector 1명, Head of Research and Programs, Head of Archive 아래 Research and Programs에 9명, Processing에 11명, Reference에 4명, Digital Assets Manager 1명, Administrative Specialist 1명으로 구성된다. Research and Programs에는 6명의 Folklife Specialist가 있고, 나머지는 Program Specialist, Reference Automation Specialist, Writer-Editor이다. Processing에는 5명의 Archivist가 있으며, 나머지는 Library Technician, Cataloger, Digital Conversion Specialist, Folklife Specialist로 구성된다. Reference는 2명의 Folklife Specialist와 2명의 Reference Librarian이 전담하고 있다.

□ 아카이브

사람, 관습,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현장연구의 토대나 그들 연구의 원자료로 아카이브 컬렉션을 이용한다. AFC의 아카이브는 193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민속 음악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였다. 공연자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스타일과 초기 예술가들의 심미적인 유대를 제공하고 그들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자료를 계속해서 찾는데, AFC의 아카이브는 미의회도서관의 보고 중의 하나로, 미국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민속과 전통적인 문화를 기록한 민속학적인 도큐멘테이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현재 AFC 아카이브는 100만 건이 넘는 2천여 개의 컬렉션을 포함하고 있다. 소장 건수의 최소 25%는 외국으로부터 이관된 것이고, 약 20%는 미국 내 비영어권 전통에 대한 기록들이다. 즉, AFC 아카이브는 미국과 전 세계의 민속 관련한 최대의 아카이브 중의 하나로, 민속학, 민속생활, 사회언어학, 인류학, 민족학적인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35만 시간 이상의 녹음, 80만 장 이상의 사진, 필드 노트, 매뉴스크립트 자료, 비디오테이프와 동영상 이미지를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민속학자, 민속음악가, 인류학자,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연구를 하면서 생성된 것들이다. 개인 및 미의회도서관에서 수행한 작업물, 다른 연방정부나 주, 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등 자료의 출처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외부 현장연구가, 학자들, 그리고 공적 민속생활사 프로그램으로부터 핵심 컬렉션을 수집하면서 컬렉션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종합하면, AFC 아카이브는 미국의 첫 번째 전통생활사에 관한 국가 아카이브이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리포지터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컬렉션은 전통예술, 문화적인 표상, 구술사의 방대한 시청각 도큐멘테이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노래, 이야기, 다른 창조적인 표현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단, 센터 방문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정보서비스 담당 직원과 연락을 해야만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로 처리되지 않은 자료들과 다른 곳에 소장된 자료로의 접근은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수집

AFC는 민속학 컬렉션을 각각 생산된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개인 컬렉션의 경우, 생산자가 컬렉션의 범주, 콘텐츠, 정리에 대해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AFC는 이를 존중한다. 센터는 자료 중 필드 노트, 녹음, 사진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이외에도 컬렉션의 조직화와 보존에 있어서는 수집자의 원래 의도를 유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속생활, 민속 음악, 인류학, 문화사, 사회언어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AFC의 장서로 남길 경우, 이는 국가 리포지터리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수집한 컬렉션이 학생, 연구자, 교육자, 연구하는 문화집단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컬렉션은 국가유산의 일부로 남게 되고 문화적 유산을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보존됨으로써 문화적 집단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컬렉션은 훼손되거나 망실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AFC는 "Ethnographic Collections in the Archive of Folk Culture: A Contributor's Guide"라는 실용지침서를 제공하여 컬렉션 조직화, 레이블 생성, 기록화 방법 등 개인 컬렉션에 대한 기증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미의회도서관으로 해당 컬렉션을 기부하기 전까지의 컬렉션 보관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여자는 자신의 컬렉션에 적합한 리포지터리를 선택하게 되는데, Archive of Folk Culture에 컬렉션을 두고 싶은 경우, AFC의 수집 부서의 담당 직원을 통해 해당 아카이브가 적합한 리포지터리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컬렉션의 기부는 수기로 작성하고, 컬렉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잠재적 수서 데이터 양식(Potential Acquisitions Data Sheet)"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부에는 기증(Gift)과 교환(Exchange), 복본을 위한 대여(Loan for duplication), 구입(Purchase), 이관(Transfer), 저작권 납본(Copyright deposit)으로 구분된다.

- ○ 기증 : 자료의 무상 기증을 말한다. 기부자의 원자료 생산이 아닌 도서관 자료의 기증은 일반적으로 세제 감면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의회도서관은 기증자료의 평가를 제공하지 않고 세제 관련해서도 조언을 하지 않으므로 기증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 교환 : 녹음이나 촬영을 포함하는 컬렉션에 적용되는 것으로, 두 가

지 유형의 교환이 가능하다. 소장량을 확대하고 싶은 기록관, 도서관, 다른 기관은 Archive of Folk Culture 안의 자료 복본을 위해 그들의 컬렉션 복본과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의 두 번째 유형은 컬렉션에 기증하길 원하는 개인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이용을 위해 자료의 복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증자들은 아카이브에 원본을 주고 복사본으로 교환 받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용 복본은 매우 최상의 품질이어야 하고, 원본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환은 기증자의 참고용 복본과 미의회도서관의 원본 컬렉션 보호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복본 서비스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환 동의서는 복본을 만드는 재원의 이용 가능성에 따른다. 교환용 복본은 보상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복본을 위한 대여 : 음성이나 동영상을 포함하는 컬렉션에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원자료로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경우, 센터에 원자료를 대여하고 센터에서 복본을 제작한 후에 원본을 다시 반환해준다. 교환에서처럼 교환용 복본을 만드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용과 부담을 낮추는 것은 컬렉션의 사이즈와 상태, 배열, 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 가능성, 도서관 녹음실의 사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대여용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구입 : 때때로 특별히 중요한 자료이면서 다른 수집 방안이 없을 때, 판매를 위한 컬렉션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 이관 : 다른 연방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적절한 컬렉션을 센터가 이관받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 납본 : 민속학과 관련된 저작권을 갖는 자료에 적용되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과 납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의회도서관 저작권 부서로 자료가 보내지면, 경우에 따라 특수 컬렉션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다. 아카이브는 저자들이나 공연자들이 완전하게 편집한 산

물이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미간행된 자료이므로 저작권 납본은 Folklore 열람실이나 도서관의 일반 장서로 출판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단 개별 수집가와 도서관이 수집한 장서는 Archive of Folk Culture에 보존해야 함을 합의하고, 컬렉션의 이관이 결정되면 이관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컬렉션을 정리하고 레이블을 부착하기 위한 안내 지침은 타 기관에게 제공되거나 컬렉션의 사용과 관리를 촉진시킨다. 한편 이용자에게 복잡한 방식으로 혼합된 형태의 컬렉션을 배열하고 보관하여 보여주는 것은 특수한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즉, 수집가의 의도와 경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컬렉션을 유지하는 센터의 원칙은 수집가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진의 주제나 녹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수집가의 수집·관리 수준에 따라 누락된 사진이나 녹음은 연구자에게 결코 유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증자가 Archive of Folk Culture에 컬렉션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 서비스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AFC는 온라인 포맷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연구자나 청취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AFC 웹사이트는 수천 건의 컬렉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연과 심포지엄의 비디오도 수백 개의 웹캐스트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컬렉션의 디지털화, 온라인 교육자원 개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홍보 등 센터의 온라인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 실례로, AFC는 Folklife Today라는 미의회도서관의 블로그를 2013년 10월에 시작하여 AFC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홍보를 위해 American Folklife Center Facebook, American Folklife Center News and Events, Dispatches from the Veterans History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AFC는 민속생활사 주제와 관련된 강연과 음악회, 심포지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기록화하여 미의회도서관의 장서로 추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AFC는 녹음 참고용 복사본, 동영상 자료, 매뉴스크립트를 열람실에서 제공하여 장서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자는 원본이나 보존용 복본으로 된 기록 사본을 미리 요청함으로써 해당자료를 미의회도서관의 공연예술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AFC의 모든 자료는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을 허용하지만, 수집한 사람들과 공연한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 공연자는 저작권에 관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공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컬렉션은 전체 저작으로서 그것을 모은 수집가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센터의 정책은 컬렉션의 복본에 대하여 기증자가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적당한 형태로 완성된 후에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연구자가 구입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발행을 위해 복본을 요구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공연자(또는 그 상속자나 다른 권리를 갖는 집단)나 수집가로부터 이용 허락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필드 컬렉션은 방송이나 박물관의 이용을 위해 복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의회도서관 AFC의 Archive of Folk Culture와 해당 수집가, 공연자, 기관에 관해 사사(謝辭)를 밝혀야 하고 이용 허락서도 준비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집가는 그들의 컬렉션에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Archive of Folk Culture는 연구자들을 위한 공적인 리포지터리이므로, 매우 제한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컬렉션에 관해서는 다른 리포지터리를 제안할 수도 있다. 즉, 센터는 컬렉션을 만드는데 종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자료를 연구하거나 열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컬렉션

미의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주제(Subject) 범주에 구술사(Oral Histories)가 있다. 그리고 구술사와 관련하여 ‘Local History & Folklife(8), Interviews(sound recordings)(7), Interviews(7), Field Recordings(7), Photographs(6), Ethnography(6),

Manuscripts(5), Songs(5), Correspondence(4)' 가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컬렉션으로는 'American Folklife Center(10), Lowell Folklife Project Collection, Montana Folklife Survey Collection, American English Dialect Recordings, Rhode Island Folklife Project Collection, South Central Georgia Folklife Project Collection,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 등이 있다. 각각의 컬렉션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American English Dialect Recordings : The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Collection으로 북미 영어 방언에 관해 기록한 118시간의 녹음이다. 녹음은 말하기 샘플, 언어학적 인터뷰, 구술사, 대화 등 505건을 포함하고 있다.
- Chicago Ethnic Arts Project Collection : 1977년, Illinois Arts Council이 AFC에 민속 예술에 대한 기록화를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1,136건을 포함하고 있다.
-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 2009년 5월 12일에 미 의회에서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rt of 2009(Public Law 111-19)가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로 시작된 시민권역사 프로젝트이다. 이 법으로 인해 미의회도서관은 시민권과 관련된 기록화 144건을 수행하였다.
- Lowell Folklore Project Collection : 1987-1988년까지 AFC와 Lowell Historic Preservation Commission이 Massachusetts Council on the Arts와의 협업으로 수집한 1,140건을 포함하고 있다.
- Montana Folklife Survey : 1979년 여름, 미의회도서관의 AFC에서 Montana Arts Council과의 협업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607건을 포함하고 있다.
- Rhode Island Folklife Project Collection : 미의회도서관의 AFC에서 Rhode Island Heritage Commission과의 협업으로 수행한 79건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 South Center Georgia Folklore Project Collection : 미의회도서관의

AFC에서 1977년 여름에 수행한 민속학적인 필드 프로젝트의 결과물 1,123건을 포함하고 있다.

- ○ Voices Remembering Slavery : 1932년부터 1975년 사이에 9개 주,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23명의 구술자들이 경험한 노예 제도와 노예 주인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69건의 녹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 Working in Paterson : 미의회도서관의 AFC가 Paterson에서 일하는 470명과 인터뷰를 하고, 3,882장의 사진을 담은 총 4,388건의 기록이다.

AFC의 대표적인 컬렉션인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OFP)는 다년간 수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전환 시대의 현대 직업 문화를 기록화하고 있다. OFP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필드워커들이 무역, 산업, 선박, 전문직 분야에 있는 일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600건 이상의 기록들로 구성된다. 인터뷰의 완성본은 미의회도서관의 AFC Archive로 통합되었다. 평균 50분에서 60분에 이르는 인터뷰는 해당 직업의 커뮤니티, 노동을 통해 느끼는 도전과 보상, 자부심, 훈련과정에 대한 회고와 현재의 직업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OFP는 미국 전역의 연구자 수집 명의 제안을 통해 선정된 주제의 필드 도큐멘테이션을 포함한다.

한편 민속학자인 Archie Green(1917-2009)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Archie Green Fellowship program이 AFC에 2010년 만들어졌는데, 이 장학금은 OFP 컬렉션 대부분의 기초 작업과 필드워크를 지원해왔다. 장학금의 수혜조건으로는 필드워크의 결과물인 기록물을 AFC Archive에 납본하여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Archie Green Fellowship 수상자의 우선순위는 소수를 차지하는 직업을 기록화하는 필드워커들에게 주어져 왔다.

현재 OFP 기록물 중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컬렉션은 컬렉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컬렉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관련 기사와 에세이 등 컬렉

션과 관련된 맥락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은 OFP의 컬렉션을 기술한 것이다.

- ○ Cultural Traditions of Ironworkers in the Midwest : 일리노이 주와 위스콘신 주의 철강업 종사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기록화한 구술 컬렉션으로, 구술채록물, 인터뷰 로그, 사진, 녹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의 중서부 문화 센터의 James P. Leary 교수와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의 Dr. Clark Dr. Archie Green Fellowship을 통해 서부 지역의 26명의 철강업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 ○ Western Folklife Center: Gold Mining in Nevada : 네바다 주 북부의 금 채굴자와 그 지역의 다른 직업, 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술사 인터뷰의 녹음 컬렉션이다. 2011년 Western Folklife Center의 민속학자인 Charles Seemann과 네바다 주 엘코에서 온 Margaret Meg Glaser는 Nevada Gold Mining Association과의 협업으로 북부 네바다에서 현재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5명의 구술자로 집중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는 'Terms & Lingo' list, 기타 자료, 금 채굴 시 안전을 기원하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다.
- ○ The "Big Top" Show Goes on : 다세대에 걸쳐 서커스 종사자들의 복잡한 직업 문화, 훈련과 경험을 구술사 인터뷰로 기록화한 구술채록물, 인터뷰 로그, 사진과 녹음 컬렉션이 있다. 2011년에 오클라호마 주의 스틸워터에 소재한 Oklahoma State University의 Edmon Low Library에 있는 오클라호마 구술사 연구 프로그램의 사서 Tanya D. Finchum and Juliana Nykolaiszyn이 Archie Green Fellowship을 받아 오클라호마의 휴고라는 작은 동네에서 세대에 걸쳐 서커스를 하는 서커스 종사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 Working the Port of Houston : 텍사스 주의 휴스톤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를 구술사 인터뷰로 기록화한 컬렉션이다. 2011년 Houston Arts Alliance에 있는 Houston Folklife and Traditional

Arts Program 소장인 민속학자 Pat Jasper와 University of Houston의 영문학과 휴스턴 연구 교수인 Martha Gano가 Archie Green Fellowship을 지원받아 휴스턴 항만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기록화하였다.

○ Stable Views: Voices and Stories from the Thoroughbred Racetrack : 경마장의 다양한 위치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 경마자, 훈련생, 조련사, hot-walker, jockeys를 포함해서 경주마를 관리하고 훈련하는데 고용된 사람들의 구술사 인터뷰 컬렉션이다. 2012년 민속학자 Dr. Ellen McHale이 Archie Green Fellowship을 통해 미국 동부해안을 따라서 경마장이 있는 곳의 경마 관리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경마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trainer, grooms, exercise riders, horse-walkers, jockeys, blacksmiths 등)을 기록화하였다. 필드워커는 17명에 대한 구술을 수행하였고 벨몬트, 사라토가 스프링스, 뉴욕 등 경마장이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기록 사진을 남겼다.

○ Hairdressers and Beauty Shop Culture in America : 미국의 미용실 문화의 전통과 문화를 기록화한 구술사 인터뷰 채록문, 인터뷰 로그, 사진, 녹음 컬렉션이다. 2012년에 문서학자인 Candacy Taylor가 Archie Green Fellowship을 통해 미국 전역의 미용실 문화와 미용사를 기록화하였다. 16명의 심층 인터뷰가 다양한 유형의 미용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뉴욕시의 살롱에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버지니아의 동네 미용실, 워싱톤 D.C, 보스턴, 캘리포니아의 변두리 지역과 작은 동네 미용실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술을 진행하였다.

○ Taking Care: Documenting the Occupational Culture of Home Health Care Workers : 오리건 주의 가정 사회복지사의 경험, 훈련된 직업 문화를 기록화한 구술사 인터뷰 채록문과 인터뷰 로그, 사진, 녹음, 비디오 컬렉션이다. 2014년에 오리건 주의 유진에 있는 University of

Oregon,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의 Bob Bussel과 그의 동료들이 Archie Green Fellowship을 통해 오리건 주의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집에서 돌보는 종사자의 구술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AFC에서 독특하게 강력한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술 컬렉션으로는 Veteran History Project(VHP)가 있다. 2000년에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가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 제1차 대전부터 최근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쟁 영웅, 피폐, 공포, 승리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정보원을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의 참전용사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미의회도서관에 관련 기록자료를 컬렉션으로 만든다는 법령이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전쟁 참전용사의 증언과 개인사 녹화와 녹음 기록 컬렉션을 국가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새롭게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예산을 제공하여 국가의 전쟁 참전용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지역적인 노력을 제공하며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미국인들이 참전용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전쟁 기간에 종사한 사람들의 희생과 전쟁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에게 더 나은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령의 목적이기도 하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부터 21세기, 최근까지 진행 중인 전쟁사에서 미국을 위해 봉사한 남자와 여자 군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에 따라서 2000년 11월부터 AFC는 Veterans History Project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 이상이 된다. VHP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국가 전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누구든지 15세 이상이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드 킷(Field Kit)을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불가한 경우, 무료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면 마이크와 스마트폰이나 캠코더를 사용하여 30분 이상 참전용사와 함께 음성이나 비디오 녹화를 하고, 최소 20페이지의 오리지널 미간행 기억, 잡지 기사나 일기, 10장 이상의 사진 원본, 편

지, 예술 작품, 영화, 스크랩북, 개개인의 참전용사 이야기 서비스를 설명해 줄 공식적인 군대 기록과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팸플릿 등으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함께 송부하면 된다. VHP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료는 반환하며,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전기적인 데이터 양식(Biographical Data Form)과 참전용사 관련 양식(Veteran' s Release Form)을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우편보다는 FedEx, UPS와 같은 상업적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일정 형식에 맞춰 보내고, 보내는 사람과 참전용사용 복사본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택배 대신 직접 컬렉션을 가지고 AFC 근무시간에 방문해도 된다.

VHP 컬렉션 웹사이트는 참전용사들의 생물학적 정보와 군 복무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전용사의 이름, 상세한 군복무 기록, 기증자나 인터뷰한 사람의 직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컬렉션은 쉽게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VHP는 이렇게 컬렉션을 아카이빙하여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구술자료를 정보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집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제1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최고령 참전용사의 생각을 수집한다. 둘째,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참전용사와 여성 참전용사의 생각을 수집한다. 셋째, 인터뷰의 지적이고 기술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모든 미국 전쟁 참전용사의 기억을 기록화한 것을 기부하도록 요청한다. 수집의 기본적인 목적은 법령에 근거하여 참전용사의 경험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접근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도 노령 참전용사의 기억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전반적으로 군대 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참전용사들의 관점으로부터 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VHP는 2001년에 자료를 기증받기 시작한 이래로 10만 건 이상의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확장되었고, 각 컬렉션은 미국에 독특한 이야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미군의 경험에 관한 아카이브 중에는 VHP의 수준만한 것이 없다.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대다수가 고위급 장성이나 매체, 영화, 문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쟁 영웅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양한 군

대의 의무 안에서 명예롭게 임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배경, 민족으로부터 구성된 일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군대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VHP는 참전용사 자신들로부터 각각의 이야기가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프로젝트는 참전용사 기관, 기록관과 박물관, 대학, 참전용사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관심을 갖는 개개인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로 인해 한 주에 100여 건 정도를 상회하는 꾸준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 작업에 계속되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승인을 받은 디지털 컬렉션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기기가 마련된 곳이라면 집, 도서관, 교실 어디에서든지 해당 컬렉션을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가 수십개의 조합으로 검색을 조직화할 수 있게 해준다. 컬렉션의 디지털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60% 정도가 완료된 상태이다. 컬렉션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문 10일 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사전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VHP에 참여한 면담자와 구술자는 그들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다른 목적, 개인적인 이용, 연구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구술자와 인터뷰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며, 특별히 출판이나 방송을 위해 기록한 것을 사용할 계획에 있는 경우라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참전 용사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VHP 직원은 연구자에게 참전 용사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미의회도서관은 공적으로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이 컬렉션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컬렉션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용요금을 부가하지 않으며, 컬렉션의 발간이나 배포를 거절하거나 수용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저작권법 Title 17 of the U,S. Code의 공정한 이용(Fair Use Doctrine)에 근거하여 인용이나 주해, 비평, 뉴스 보도, 학문적 보고를 위해 저작의 제한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수나 메모, 저작의 일정 비율을 허용하는 법규는 없다. 공정한 이용으로 해당되는 특별한 사용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

로 허가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인용이 있고, 사례가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자료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저작권에 관한 허가를 사전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의 컬렉션에서 자료의 활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료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있다. 또한 이용자의 사적·공적 권리는 저작권 이해와는 분리되고 명백히 다른 것으로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VHP 컬렉션은 2016년 11월, Public Law 114-246, Gold Star Families Voices Act가 통과되면서 전쟁 동안 군복무를 한 결과로 사망한 군인들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손)에 대한 구술사까지 VHP 컬렉션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이러한 경우, 구술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서 VHP는 인터뷰하는 사람과 구술자의 연령을 최소한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센터에서 중요하게 수행하는 프로젝트로는 VHP 외에도 Civil Rights History Project(CRHP)를 들 수 있다. 이는 2009년 5월 12일에 미 의회가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of 2009(Public Law 111-19)를 통과시키면서 국가 주도로 시작된 시민권 역사 프로젝트인데, 미의회도서관은 시민권과 관련된 144건의 기록화를 수행하였다. 공화당 의원인 McCarthy는 이 법령을 제안할 때 "시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 중의 하나이고,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가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자유와 평등의 꿈을 향한 투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령으로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NMAAHC)과 미의회도서관은 Civil Rights Movement(CRM)에 적합한 현존하는 구술사 컬렉션을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의 시민권 운동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새로운 인터뷰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서베이 정보와 인터뷰의 결과물은 미의회도서관과 박물관의 영구보존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참여자 139명의 100여 건이 넘는 구술 인터뷰가 고

화질 비디오로 수집되었다. 미의회도서관에서 이 비디오의 전체를 열람할 수 있다. 컬렉션의 내용으로는 자유를 향한 투쟁, 조직적인 노동 운동, 비폭력과 자기 방어, 신앙, 음악, 가족과 우정의 중요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구술자들의 회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술자들은 변호사, 판사, 의사, 농부, 기자, 교수, 음악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 안에서 논의된 활동과 사건은 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1963), Albany Movement(1961), Freedom Rides(1961), Selma to Montgomery Rights March(1965), Orangeburg Massacre(1968), 남부의 선거권 등록 운동, 지역 운동과 1955년의 14살 소녀 Emmett Till의 죽음 등을 포함한다.

많은 구술자가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NAACP), Congress of Racial Equality(CORE), 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SNCC)와 같은 국립 협회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으며, Medic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Deacons for Defense and Justice, Cambrige(Maryland) Nonviolent Action Committee, Newark Community Union Project와 같은 특수단체에 소속된 핵심 회원들도 있었다. 이외 구술자들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어거스틴, 루이지애나주의 보갈루사와 같은 시민권 운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투쟁의 전선에 있었던 남성과 여성들이다. 일부 구술은 Clara Luper, Robert Hicks, Gayle Jenkins를 포함하는 지역 시민권 지도자의 아이들과 진행하였다. 현재 CRHP는 비디오 파일, 비디오 테이프, 디지털 사진, 인터뷰 채록문으로 구성된 401건을 갖고 있으며, 2015년에 구술채록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면서 자료들이 더 추가되었다.

□ 인턴쉽

AFC에는 자원봉사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으며, 제한된 수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센터의 아카이브와 Veterans History Project에서 활용하고 있다. 무료 자원봉사이지만, 학술적인 경험 또는 다른 직업에 필요한 경험을 얻거나 커리어 계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필수 요건은 최

소한 200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민속학과 미국학,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아카이브나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을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며, 주말 근무는 불가하다. 인턴쉽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외국 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학위를 바로 마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의 사서는 무급으로 기관 간 전문직 교환으로만 봉사할 수 있다.

□ 연구기금

AFC는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 컬렉션 자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연구자와 필드워커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금은 다음과 같다.

○ Archie Green Fellowship : Archie Green(1917-2009)을 기념하여 만든 장학금이다. Green은 미의회도서관의 AFC를 만든 선구자로, 미국의 노동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기록화하고 분석하였다. 이 장학금은 해당 분야의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현대 미국의 노동자 인터뷰를 중요한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음석 녹음, 사진, 비디오, 필드노트 등)으로 생성하여 연구자와 일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대 3만 5천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미국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현대 미국 노동자들 또는 직업군에 대한 문화나 전통 등 새롭고 창의적이며 독립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에는 반드시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으로 수행되는 연구 중의 원자료는 모두 AFC 아카이브로 이관된다.

○ Jon B, Lovelace Fellowship for the Study of the Alan Lomax Collection : 미 의회의 John W. Kluge Center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으로, AFC 연구지원도 가능하다.

○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Internship Program Fund : AFC의 개별 프로젝트에 관해 직원과 함께 일하는 2명의 인턴을 매년 선정해서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턴에게 AFC의 연구 컬렉션을 소개하고 도큐멘테이션과 관련된 비판 능력을 개발하거나 기록관리 실습 및 문화유산 연구와 프로그램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주에 해당하는 인턴쉽에 대해서는 생활비가 제공되는데, 그 비용은 다양하다.

○ The Gerald E, and Corinne L. Parsons Fund Award :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을 위한 기금으로, 총액 4천 달러를 1명 이상의 지원자에게 나누어준다. 이 기금의 목적은 미의회도서관의 민속학 컬렉션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있으며,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민속학 컬렉션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특수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된다.

○ The Blanton Owen Fund Award : 격년으로 제공되는 상으로, 올해에는 2019년 3월 12일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민속학자인 Blanton Owen을 기념하여 가족과 친구들이 미국 내 민속학 분야의 연구와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1천 달러 정도의 기금을 한 명 이상의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수혜자는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되지만, 미의회도서관으로부터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해야만 한다.

○ The Henry Reed Fund Award : 격년으로 제공되며, 현재 2020년 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바이올리니스트 Henry Reed를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수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상금은 AFC의 센터장과 바이올리니스트 Alan Jabbour가 마련하였다. 이 기금의 목적은 민속예술가가 직접 관여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 정도의 작은 상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AFC 컬렉션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다.

□ 후원

센터의 후원은 세제 혜택을 주고, 후원금은 국가의 문화적 탁월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AFC의 컬렉션은 미의회도서관의 보고 중의 하나이며, 노예, 시민 권익 지도자, 미국의 참전 용사들의 구술사를 갖고 있다. AFC는 국가와 세계의 풍요로운 민속 생활 자료를 미 의회와 미국 대중의 지원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은 센터가 새로운 컬렉션과 필드 녹음을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민속생활 컬렉션을 확장하게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출판, 보존 프로젝트, 공연, 강의 심포지엄,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 자원을 통해 센터의 민속생활 보고에 좀 더 접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국가의 유산을 보존하고 훈련, 상담,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록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문화 커뮤니티와 전 세계 기관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다양하고 동적인 문화유산을 기록화하는 개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독립 연구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 세계의 연구자,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다른 문화적 유산 기관의 지침이 되는 기록보존 방법을 위한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AFC를 지원하는 네 가지 방법은 첫째, 새로운 컬렉션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Friends of the Folk Archive Fund에 기부하는 것이다. 둘째, 공적이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훈련, 연구 기회를 지원하는 AFC Fund에 기부하고, 셋째, Veterans History Project에 기부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Fellowship funds 중의 하나를 통해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기부는 원하는 기부 양식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체크를 AFC에 송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3.2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6]

대영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이하 BL)은 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이다. BL은 누구나 지적유산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자료 및 디지털 자료로 발행된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소

6) 영국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l.uk/

장자료를 관리·보존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 개인, 단체, 정부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을 제정하여 인쇄 및 디지털 자료를 납본받고, 각 컬렉션별 장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납본 이외 수집, 기증,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3백만 권의 인쇄자료가 수집되고 1억 7천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여 보존하고 있다. BL의 다양한 컬렉션 중 하나인 Oral Collection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으로, 가장 많은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영국구술사협회(Oral History Society, 이하 OHS), 지역도서관, 타 기관 구술 아카이브 간의 협력을 통해 구술 아카이브의 허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구술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립재단으로 National Life Stories(이하 NLS)를 1987년에 설립하여 자체적인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Oral Collection은 Sound and Moving Image Catalog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 후 열람실인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역사

NLS는 1985년 구술사가 Paul Thompson과 Asa Brgiggs가 진행한 National Life Story Collection으로 시작되었다. National Life Story Collection은 정치, 산업, 행정, 문화, 종교 등 영국 내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 여성의 구술 인터뷰를 담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단면을 기록화하는 프로젝트이다. 즉, National Life Story Collection은 남성과 여성, 노동자와 자본가 등 역사에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함께 수집된 종합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는 Thompson과 Brgiggs가 정치인인 Baroness Ewart-Biggs, Russell Johnson MP와 아동문학자 Penelope Lively, 환경공학자 Austin Mitchell, 역사가 Robert Blake와 함께 NLS를 창립하였으며, 이듬해인 1987년 10월에는 자선단체로 인정을 받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금 마련

을 위해 부동산 개발자 Jack Rose와 재무책임자인 Peter Hand가 The Wingate Foundation과 Nuffield Foundation의 기부를 받았으며, Paul Thompson이 기증한 'Henry Moore'의 조각상을 판매하여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후 첫 프로젝트인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 City Life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시작한 Artists' Lives는 350건 이상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여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최장수 프로젝트이다.

□ 관련 법령

「영국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1972))」이 제정됨에 따라 1973년에 건립된 BL은 현재 영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법적으로 규정된 납본제도는 국가 장서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은 1709년 저작권법에 납본규정을 마련하여 1801년, 1814년, 1836년, 1842년, 1911년 총 다섯 차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이후 저작권법이 아닌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납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정납본도서관법」은 인쇄출판물의 법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인쇄 출판물, 온라인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개정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첫째, 비인쇄 자료에 대한 수집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녹음자료, 영화 필름을 제외한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였다. 2013년에 제정된 「법정납본도서관(비인쇄자료)규정(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2013)」은 납본의 범위를 디지털 출판, 웹사이트까지 확장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술자료에서 중요한 음성자료에 대한 납본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구술자료에 대한 데이터보호법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 8월 25일, EU 전체에서 발효된 「데이터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on, GDPR)」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개인 및 조직에게 적용됨에 따라 구술자료 수집 프로젝트 수행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졌

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적인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따라 영국 구술 컬렉션과 영국구술사학회(OHS)는 구술자료에 적용되는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세미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술자료는 「저작권법(Copyright Law)」도 적용되며, Oral Collection 장서 정책에 따라 개인 및 단체가 구술자료를 납본(deposit)할 경우 지적 재산권을 양도 혹은 법적 권리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The deposit of your oral history recording at the British library』 가이드는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구술자료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술자료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구술자료 아카이빙에 대한 동의, 공적인 사용에 대한 동의 사항과 Sound & Moving Image Catalogue에서 기록을 검색할 때, 구술자의 서명이나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동의도 포함한다.

구술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생산자가 가지게 되며, 사후 70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BL에 납본한 경우, 저작권은 BL Sound Archive가 가지게 되며 영국인에게 공개된다. 생산자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 범위, 이용, 공개 여부에 대해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은 Sound Archive와 논의 후 결정된다. 이와 관련된 동의서는 모두 BL과 OH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National Life Stories

영국국립도서관의 독립적인 자선 신탁재단인 National Life Stories(NLS)는 1987년 National Life Stories Collection으로 설립되어 2005년에 National Life Stories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영국인의 삶에 대한 구술자료를 주제별로 생산・수집하고 있다. NLS는 후원, 자선 개인 기부금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연도별로 진행된 구술 프로젝트의 경과, 파트너십, 이용방법, 예산집행, 면담자 및 구술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 등이 수록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수행된 프로젝트는 총 31개로, 목록은 <표 19>와 같다.

<표 19> National Life stories 내 수행된 프로젝트 목록

순번	프로젝트명	MARC	인터뷰(건)
1	Leader of National Life	C408	31
2	City Life	C409	150
3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	C410	410
4	General Interviews	C464	94
5	Artists' Lives	C466	398
6	Architects' Lives	C467	146
7	Fawcatt Collection	C468	14
8	Lives in Steel	C532	102
9	Oral History of the British Press	C638	21
10	National Life Story Awards	C642	145
11	Legal Lives	C736	13
12	Food: From Source to Sales Point	C821	218
13	Book Trade Life	C872	120
14	Crafts Lives	C960	162
15	Lives in The Oil Industry	C963	178
16	An Oral History of The Post Office	C1007	117
17	An Oral History of Wolff Olins	C1015	40
18	An Oral History of British Fashion	C1046	18
19	Pioneers in Charity and Social Welfare	C1155	30
20	An Oral History of Theater Design	C1173	33
21	Authors' Lives	C1276	68
22	The Legacy of The English	C1316	15
23	An Oral History of The Water Industry	C1364	31
24	An Oral History of Barings	C1367	34
25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	C1379	132
26	An Oral History of the Electricity Supply Industry in The UK	C1495	58
27	An Oral History of Talking Therapists in The UK	C1553	13
28	Welcome Trust Life Stories	C1665	5
29	Science and Religion: Exploring The Spectrum	C1672	33
30	An Oral History of Farming, Land Management and Conservation in Post-war Britain	C1828	미상
31	Britain Building The World : An Oral History of Infrastru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미상	미상

2018년에는 An Oral History of Farming, Land Management & Conservation in Post-war Britain,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 Britain Building The World: An Oral History of Infrastru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Architects' Lives, Artists' Lives, Authors' Lives, Crafts' Lives로, 총 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NLS에서 생산한 모든 구술자료는 British Library Sound & Moving Image Catalog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이용자는 영국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아날로그 자료는 Listen & Viewing Service, 디지털 자료는 Sound Server Community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 BL Sound Archive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직

NLS는 2019년 6월 6일 기준으로, 총 60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Director 1명, Deputy Director 1명, Associate Director 1명, Treasurer 1명, Project Director 1명, Archivist 2명, Assistant Archivist 1명, Senior Academic Advisor 1명, Bookkeeper 1명, Oral Historian and Researcher 1명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Freelance Project Interviewer 5명, Collaborative Doctoral Student 1명, Freelance Oral Project Interviewer 7명, Transcriber 3명, Unlocking Our Sound Heritage Volunteer 2명, Trustees 12명, NLS Advisors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아카이브

Oral Collection은 영국에서 최대 규모의 구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인의 삶, 일, 문화, 개인적인 경험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오디오, 비디오 인터뷰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문서, 사진 등 문헌 역사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어 그 양이 방대하다. 컬렉션은 2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 비디오 인터뷰 자료와 관련 문서도 링크를 통해 연계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9만 건의 음성, 비디오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구술자료의 양은 차이가 있다. 구술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는 것은 NLS와 구술 컬렉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성, 동영상 인터뷰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곳은 BL Sound Archive에서 진행하고 있다.

Oral Collection은 British Library Sound & Moving Image Catalog를 통해 음성, 비디오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단어, 숫자를 이용한 간단한 검색과 주제, 장소, 언어, 수집, 생산연도 등 상세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색인을 이용한 검색과 다른 컬렉션으로 연계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술자료에 대한 마크, 제목, 유형, 수집 및 컬렉션 설명, 문서, 녹음 목적, 저작권, 접근, 이용 가능여부, 인벤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University of Kent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Finding Very Particular Material in Oral History Collections: a Research Toolkit and User Journey』 가이드는 Oral Collection 검색을 위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술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수집

각 주제 컬렉션마다 별도의 수집 정책을 가진 BL은 Oral Collection의 장서 정책을 통해 구술자료 수집 목적, 수집 대상, 기탁, 구술 컬렉션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Oral Collection은 영국 최대의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고, 영국 내 구술사의 중심기관으로서 표준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제공 및 타 기관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Oral Collection에서 수집하는 대상은 영국의 생활, 일 문화, 경험 등 광범위한 주제 영역 아래 오디오 및 비디오 인터뷰를 모두 포함하는 구술자료이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억, 경험, 정체성을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수집함으로써 국민과 공유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수집 시, 영국과 관련된 주제, 소멸될 수 있는 주제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관이 만든

구술자료는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이때, 큐레이터는 기존 자료와의 중복, 불충분한 문서, 법적 권리가 불명확한 구술자료의 경우, 기증 또는 기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BL에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대체 저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탁의 조건은 구술자료와 함께 메타데이터,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BL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조건을 분명히 기술하여야 한다. 기탁되는 구술자료가 영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일 경우는 영국국립도서관의 소장물로서 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될 수 있다. 한편 자료는 형태에 따라 관리·보존 방법이 결정되는데,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 작업과 함께 환경적으로 통제된 서고에서 보존되며, 디지털 자료-본디지털, 디지털화된 자료는 영국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용 저장소에 관리·보존된다.

수집은 기증, 기부, 기탁뿐만 아니라 NLS 재단의 자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구술자료를 별도로 수집하기도 한다. 영국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소멸 가능성이 있는 주제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있으며, 이때 생산된 모든 구술자료는 Oral Collection에 귀속된다. 또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중복되는 수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서 정책에는 영국 구술 컬렉션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용자들이 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기 위한 색인, 목록 작업을 진행하고, 둘째, 음성, 동영상 인터뷰, 녹취록을 제공하여 이차적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구술사 인지도 확산을 독려한다. 셋째, OHS, 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구술사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확대 및 윤리강령을 정립한다. 넷째, 구술사 관련한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구술사 방법론, 구술자료 수집, 보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NLS와 외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서비스

BL은 구술 컬렉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며,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비공개 자료, 아날로그 자료는 연구자들에 한하여 신청, 승인, 예약 후 사용 가능하며, 약 8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인들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음성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동일하게 신청, 승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BL의 희귀본 및 음악열람실(Rare Books and Music Reading Room)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디지털, 아날로그 음성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0시부터 20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BL은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팟캐스트 등 이용자들이 구술 컬렉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로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홈페이지[7]를 통해 주제별 구술 컬렉션에 대한 설명과 일부 음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9만 건이 넘는 녹음이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일부 컬렉션의 경우 음성파일의 중요 부분만 공개된 편집본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표 20> 참고).

또한 서비스되는 음성자료에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는 자료유형, 시간, 위치, 주제, 녹음 날짜 및 장소, 대상자, 면담자, 구술자료와 관련된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British Library - National Life Stories” 팟캐스트를 통해 일부 인터뷰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Sound and Vision 블로그, 트위터 계정인 @BL_OralHistory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련된 내용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다.

7)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홈페이지 https://sounds.bl.uk/Oral-history

<표 20> 음성자료 주제 목록(총 30개)

주제 항목				
Architecture	Art	Authors	Bank&Finance	Branding & Design
Charity & Social Welfare	Crafts	Disability Voice	Early Spoken Word Recordings	Fashion
Food	George Ewart Evans collection	Industry: Water Steel & Energy	Jewish Survivors of The Holocaust	Law
Listening Project	Observing the 1980s	Opie Collection of Children's Games & Songs	Oral Historians	Oral History Curator's Choice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	Oral History of Jazz on Britain	Oral History of Recorded Sound	Photography	Pioneering Women
Politics	Press & Media	Sport	St Mary-le-bow Public Debates	Theatre

한편 Oral Collection 중 26개의 주제에 대한 Collection Guide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를 통해 컬렉션 주제에 대한 설명과 온·오프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구술자료에 대한 설명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다른 컬렉션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다(<표 21> 참고).

<표 21> Oral Collection Guide 목록

컬렉션 주제
1. Artists' Books & Fine Press 2. Indian Independence 3. Major National Oral History Projects and Surveys 4. Oral Histories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Design 5. Oral Histories of Disability And Personal and Mental Health 6. Oral Histories of Business and Finance 7. Oral Histories of Sexuality, Reproduce Health and Prostitution 8. Oral Histories of Education 9. Oral Histories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컬렉션 주제
10. Oral Histories of Industry and Employment 11. Oral Histories of Jewish Experience and Holocaust Testimonies 12. Oral Histories of Medicine and Health Professionals 13. Oral Histories of Migration, Ethnicity and Post-colonialism 14. Oral Histories of Museum and Library Professionals 15. Oral Histories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16. Oral Histories of Politics and Government 17. Oral History(Oral Historians) 18. Oral Histories of Writing and Publishing 29. Oral Histories of War and Conflict 20. Oral Histories of Visual Arts and Crafts 21. Oral Histories of The Legal System 22. Oral Histories of The History of Women 23. Oral Histories of Sport 24. Oral Histories of Social Policy 25. Oral Histor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26. Oral Histories of Religion and Belief

□ 컬렉션

BL Oral Collection은 Sound Archive를 통해 이용 가능하나, 일부 자료는 생산자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열람이 불가하다. 온라인에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컬렉션은 Oral Histories of Jewish Experience and Holocaust Testimonies, Artists' Lives, Millennium Memory Bank(이하 MMB),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가 있다.

가) Oral histories of Jewish experience and Holocaust testimonies

영국 내 유대인 생존자들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인 구술기록으로,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와 The Holocaust Survivors' Centre Testimony Recording Project 두 구술사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는 1987년에서 2000년까지 14년간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생존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186건의

구술 음성자료를 수집하였으며, NSL에 의해 시작되어 세 개의 기관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을 거쳐 면담자로 활동하였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나치가 점령했던 유럽의 전역을 돌면서 생존자와 그 자녀들의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The Holocaust Survivors' Centre Testimony Recording Project는 제2차 대전 중 영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생존자들을 돕는 The Jewish Care Holocaust Survivors' Centre와 NLS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154건의 음성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웹을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는 총 1,818건이며 구술자를 알파벳순, 제목, 지도를 통해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BL의 교육 콘텐츠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알리는 역사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구술자료는 교육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Yale University Fortuniff 영상 아카이브와 협력하여 수집한 홀로코스트 생존자 170여 명의 영상 구술자료, 1985년에 진행된 유대인 이외의 수용자, 정치범, 유대인 수용자 59명의 구술자료 컬렉션인 Anton Gill Collection, 허버트 레비 독일 유대인 난민 인터뷰, Central British Fund Kindertransport Interviews 등이 있다.

나) Artists' Lives

1990년에 NLS와 Tate Archive, Henry Moore Institute가 협력하여 운영한 '예술가의 삶 프로젝트(Artists' Lives)'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구술 프로젝트로 영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을 구술자료로 수집하고, 인터뷰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Eileen Agar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난 예술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미술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Sound Archive뿐만 아니라 'Voice of Art'를 통하여 구술자료를 포함한 예술가의 생애, 작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Artists' Lives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4명의 구술사가

가 예술가들의 면담을 진행하고, 진행사항은 매년 발행하는 연차보고서와 Sound and Vision 블로그, @BL_OralHistory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The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을 비롯한 7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 및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다) Millennium Memory Bank(MMB)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년 동안 BBC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한 The Century Speaker 시리즈로, 라디오를 통하여 수집된 640여 건의 개인의 경험을 모아 구성한 유럽의 최대 단일 구술 컬렉션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 5세에서 107세,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구술자들은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상적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MMB는 영국 내 영어 방언조사(SED)에 사용되고 있으며 방언을 목록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공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컬렉션 항목의 수는 396개로, 인터뷰 일자 및 지역 라디오 방송국별로 접근이 가능하다.

라)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

영국 내 100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는 각각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의 개인적인 삶과 과학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인터뷰하였으며, 1,000시간이 넘는 인터뷰 영상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과학자로는 생물학자인 Max Perutz, 핵물리학자 Joseph, 사업가이자 컴퓨터공학자인 Rotblat Stephanie Shirley, 지구 물리학자 Joseph Farman가 있다. 이후 주제를 확장하여 2013년 5월에 Royal Society Diversity Programme과 협력하였다. Inspiring Scientists: Diversity in British Science라는 새로운 구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그 분야의 대가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Science and Religion: Exploring The Spectrum도 Templeton Religion Trust

의 기금을 받아 토론토 대학교, 요크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의 수는 1,658개이며, 대기과학, 생화학, 생물학 등 주제별로 접근할 수 있다.

□ 교육 및 컨설팅

BL, OHS, NLS가 공동으로 '구술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OHS와 BL에서 인증한 구술사가가 강의를 진행하며, 단계별, 분야별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입문과정, 비디오 인터뷰를 위한 교육과정, 실습과정, 구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교육과정, 수집한 구술자료의 보존을 위한 교육과정, 데이터 보호법률(GDPR) 교육과정, 수집한 디지털 구술자료를 편집하는 교육과정 등 지역별·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 내용 날짜와 장소, 위치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누구나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구술사와 관련된 컨퍼런스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술사를 장려·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술을 처음 해보는 개인, 단체를 위해 OHS 홈페이지에서는 지침을 별도로 게시하여 주제 선정, 준비,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 인터뷰를 위한 지침, 인터뷰 후 자료 관리, 아카이빙 등 관련 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금 마련을 위한 자료도 OH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개인 또는 학술 단체들을 위하여 구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Heritage Fund를 소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 유산복권 기금(HLF)과 주제별로 지원하는 테마 펀드, 예술 기금, 지역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 자금 규모를 자세히 기술하여 구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인과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기금

Goodison Fellow는 NLS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NLS 컬렉션을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NLS 컬렉션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

구 성과, 2차 창작물을 영국 국민들과 재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oodison Fellow를 통해 진행된 연구 결과는 전시회, 프로그램, 기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수혜자인 Hestein Westley와 Isabel Sutton은 Artists' Lives를 통해 20세기 영국 미술을 탐구하는 『Studio Voice』를 저술하고 Lightbox Gallery에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2018년 수혜자인 구술사가이자 극작가인 Rib Davids는 홀로코스트 증언을 바탕으로 연극 대본을 쓰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Goodison Fellow는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후원

NLS는 독립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 및 기부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첫째, The Gift Aid Scheme를 통한 기부이다. The Gift Aid Scheme은 NLS가 개별 납세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율을 국가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비율은 기부금의 25%으로, A Gift Aid Form(PDF format)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NLS에 기부하는 경우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법인세 산정 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자선단체도 주식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기부받을 수 있으며,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면제액이 결정된다. 법인에서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역시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유산에 의한 기부이다. 유언장을 통하여 자산의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유언장에 기입할 문구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문구의 예시는 재산의 비율로 기부하고 싶은 경우, 재산의 정해진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를 하려고 한 대상 기관의 명칭이 변경 또는 다른 기관과 합병되었을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2.3.3 호주국립도서관(NLA)[8)]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이하 NLA)은 건물 자체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미술관 혹은 박물관과 유사하게 도서관 입구 정면에서부터 설형문자와 기록을 의미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로비에는 세 개의 커다란 천으로 된 장식 벽걸이가 높이 걸려 있으며, 도서관의 창은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로비의 정면 1층에는 메인 리딩룸(Reading Room)이 있고, 홀을 따라 들어가다가 보면 왼쪽에 위치한 갤러리는 공간을 둘로 나누어서 왼쪽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물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쪽에서는 매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는 NLA가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이 융합된 라키비움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캔버라에 있는 NLA는 호주의회도서관에서 시작하여 1960년 국립도서관으로 승격하였으며,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NLA는 호주국가대표도서관으로 호주 및 호주 국민과 관련된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른 도서관 및 단체와 계약 및 협력을 통해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컬렉션마다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납본, 기부 및 구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 결과, 6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신문, 원고, 영화 등 매체별 컬렉션과 아시아, 태평양, 민속, 미술 등 주제별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정책인 ‘Service Charter’를 개발·도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Oral Collection의 경우, NLA의 통합 목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원하는 정보는 검색 후 특수 열람실이나 ‘Trove’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역사

NLA는 1901년 의회도서관으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멜버른에 위치하였으나

8) 호주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a.gov.au/

1927년 의회가 이전되면서 현재의 위치인 캔버라로 이전하였다. 1960년 의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NLA는 의회도서관에서 분리되었으며, 1968년 8월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은 1950년대 Hazel de Berg가 인터뷰한 자료를 기증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이후 John Meredith의 민속자료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구술 및 민속 컬렉션의 배경이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호주 유명인들의 경험, 삶 그리고 활동을 인터뷰하였으며, 대규모의 사회사 인터뷰도 진행되어 현재 51,000시간 이상의 구술자료가 수집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 관련 법령

「National Library Act(1960)」가 제정됨에 따라 호주의회도서관에서 분리된 NLA는 현재 호주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 장서를 구축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NLA는 관련 법에 따라 정책 수립, 도서관 위원회 구성, 장서개발, 조직형성, 예산집행 등 그 기준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 근거한 National Library Regulation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수집, 접근, 사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NLA는 Communications and the Arts에 속하는 정부 기관으로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lilty Act(2013)」의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A는 「Copyright Law(1968)」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법정납본도서관으로, 호주 내에서 출판된 모든 인쇄자료는 1부씩 의무적으로 NLA에 납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납본의 대상은 도서, 신문, 악보, 지도, 포스터,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이다. 하지만 자료의 형태가 변화와 디지털 자료의 증가에 따라 NLA는 디지털 자료까지 수집하기 위하여 2014년에 「Digital Legal Deposit(2014)」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NLA는 인쇄자료 및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자료까지 납본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미간행물로서 납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어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와는 다른 특성의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 조직

NLA은 크게 다섯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술 컬렉션은 Collection 아래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에 속해 있다. 총 부서의 인원은 12명으로, 기획, 수집, 정리, 보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Senior Curator 1명, 보존 전문가 4명과 수집, 정리, 기술, 서비스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 기획부터 보존까지 한 부서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구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 인력으로는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면담자가 있으며, 이들은 면담자 리스트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 아카이브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은 호주 최대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 유명인들과의 구술사 인터뷰, 평범한 호주인들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사회사 인터뷰, 호주인들의 전통적인 대중문화, 노래, 춤,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민속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1,000시간 이상의 녹음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00시간 이상의 자료가 추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가 음성으로 수집되며, 일부 자료는 영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구술사 인터뷰뿐만 아니라 개인 일기, 사진, 강연, 연설 등 관련 문서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다. NLA에서는 매년 10만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컬렉션을 확장하여 보존하고 있다.

컬렉션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질 수 있다. 첫 번째, 민속녹음이다. 호주 원주민의 노래, 춤, 음악, 구전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호주의 대중문화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각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의 인터뷰이다. 과학자, 작가, 예술가, 스포츠, 정치인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저명한 호주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세 번째, 호주 전체에 큰 영향을 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 단체를 대상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실례로, 1920년대 대량 실업, 1992년 에이즈 확산으

로 인한 호주인의 대응 등과 같은 큰 사건에 영향을 미친 개인, 단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시대에 발행된 뉴스, 신문, 사진도 함께 수집하여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다. 네 번째로, 소리 컬렉션이 있다. 해변의 파도 소리, 희귀 동물의 울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여 소장하고 있다. 컬렉션은 통합 Catalog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Trove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수집

NLA은 주제 컬렉션에 따라 수집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은 NLA 장서개발정책 아래 Unpublished Collection의 수집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Library Corporate Plan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수집 정책에는 Oral History and Folklore에 대한 정의, 수집 목적, 대상 범위, 접근 제한, 우선순위 등이 기술되어 있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은 각계각층의 호주인 인터뷰와 호주인들의 전통문화, 노래, 춤 등 민속기록을 수집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주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한 분야에서 국가적 명성을 얻은 호주인, 두 번째 인종, 직업, 특정한 장소 거주인, 소아마비 경험 등 같은 경험을 공유한 호주인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사 인터뷰, 마지막으로 호주의 사회적,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속자료가 포함된다.

NLA는 지금까지 기록을 남길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과 사건, 문헌기록이 담아낼 수 없었던 삶과 경험을 찾아서 인터뷰하고 침묵 및 감정을 담는 소리 등을 수집하여 음원, 문서화 하는 것을 주요한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적 컬렉션을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될만한 것을 수집한다. 둘째, 지역사회를 국가적 컬렉션에 연결시킨다. 셋째, 문화적 컬렉션의 국가적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이처럼 NLA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하고 수집하고 있다. 예

를 들어 Australian Generation Project는 3년이 걸린 자체 구술사 프로젝트이다. 2년간 기획하여 실제 채록은 1년이 걸렸으며, 면담자와 1대1 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되었다. 면담자에게는 시간당 100달러와 여비, 조사 시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반면 구술자들에게는 인터뷰 사례를 지급하지 않는다. 생산된 구술자료에 대한 접근은 구술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면담자가 접근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면담자는 구술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장서 정책에는 협력 및 타 기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첫째, 중복 수집을 피하기 위하여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NLA의 경우 호주 방송위원회, 전쟁기념관, 국립 영화 및 음향 자료 아카이브, 국립기록원, 호주 원주민 연구소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아카이브와 협력을 하고 있다. 둘째, 구술사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들만의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구술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형식의 자료를 권장 및 장려하고 있으며,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하여 시간 요약문, 녹취록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서비스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구술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호주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구술자료는 NLA 종합목록을 통해 검색 가능하며, NLA에 방문하여 특수 열람실에서 열람하거나 Trove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Trove는 연간 2,45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구술자료와 함께 시간별 요약문(time coded summary)과 녹취록(time coded transcrip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키워드)검색도 녹취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과의 통합목록(Union Catalogue)은 없지만, NLA에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이 구독(Subscription)을 하면 Trove를 통

해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술자료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연구를 위한 접근이다. 연구자들은 도서관의 Special Collections Reading Room에서 직원의 감독하에 구술자료를 듣거나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출로 다른 도서관에서도 직원의 승인하에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으로 구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인터뷰나 녹취록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도서관의 복사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뷰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구술자가 NLA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하도록 동의했다면, 연구자는 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뷰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셋째, 공공적 활용이다. 연구자는 책에 기술된 인터뷰의 부분을 인용하거나 라디오 방송이나 공공 프리젠테이션에서 인터뷰의 클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공적 세팅에서 인터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위하여 구술자는 인터뷰를 공개할 것인지 혹은 서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구술자가 자신의 생애 동안, 혹은 특정기간 동안 비공개로 정할 수 있다. 구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구술사 큐레이터가 인터뷰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고 있다.

□ 컬렉션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의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Interviews by Hazel de Berg, Folk Music by John Meredith,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Project가 있다.

가) Interviews by Hazel de Berg

Hazel de Bergs는 구술사가이자 사진작가이다. 그는 20세기 호주 문화에 기여한 호주인에 대한 구술 컬렉션을 구축하였고, 이를 NLA에 기부하면서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의 시작이 되었다. 이 컬렉션은

1950년대 호주의 유명한 시인, 예술가, 작가, 작곡가, 배우, 학자, 출판사, 사서, 과학자, 인류학자,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한 구술기록과 일부 강연 자료, 독서기록, 성적 증명서, 인터뷰 메모 등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91건의 디지털화된 구술자료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각 구술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와 접근 권한 등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Folk Music by John Meredith

John Meredith는 Bushwhackers의 창립 멤버이자 호주민속협회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1953년부터 1994년까지 호주 전통민속 음악 연주, 암송, 구전, 춤곡 등을 500회 이상 녹음하여 NLA에 기부하면서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tion의 주요 컬렉션의 되었다. 음성자료뿐만 아니라 악보, 메모 등 문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연구 및 개인적 복사를 위한 접근을 허락하고 있으나 공공 사용, 이차적 이용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는 주정부의 16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NLA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Oral Collection으로, 과거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원주민 강제이주와 아동 분리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때, 정책의 영향을 받은 호주인을 대상으로 구술자가 선정되었으며, 1999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진행되었다. 이후 Br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의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추가적인 후속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컬렉션은 NLA 종합목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Copies Direct를 통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될 사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얻기 위해서는 구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Project

2009년 호주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로 시작된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Project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호주인들과 아동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호주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주정부, 개인, 지역사회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았으며, 두 개의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Lost Innocents: Righting the Record(2011), Forgotten Australians(2004) 수집을 기획하였다. 200여 명의 면담자가 투입되어 진행되었으며, 2012년 11월에 종료되었다. 인터뷰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신문, 개인 일기, 사진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되었다. NLA는 이를 바탕으로 'You can't forget things like that'을 발간하여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의 역사를 호주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구술자료는 NLA 통합목록을 통해 구술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Copies Direct를 통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될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자료의 경우 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얻기 위해서는 구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육 및 컨설팅

NLA는 Unpublished Collection 수집 정책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술한 만큼 고강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호주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호주 국립영화와 음향 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호주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사람 연구기관(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기타 주립도서관 등이 있다. NLA는 협력을 통해 구술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수집을 방지하고 있으며, 구술자료의 메타데이터와 같은 기술적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공유하고 있다. 공식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 않은 개인, 단체, 지역사회에도 컨설팅을 진행하여 자체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후원 및 연구기금

NLA는 Communication Heritage Grant(CHG)를 통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원주민 단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관리·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네 가지 사업의 유형인 Significance Assessments of Collections, Preservation Needs Assessments of Collections, Conservation Activities and Collection Management, Training Workshops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외 특정 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자, 작가, 예술가 등 젊은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참고 서비스, 예산 지원, 별도의 연구장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Fellowship, Creative Arts Fellowship, Summer Scholarship, Asia Study Grants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 호주 국립영화와 음향 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호주 국립영화와 음향 아카이브(이하 NFSA)는 호주국립도서관에 속해 있다가 1990년대 독립하여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산업에 대한 인터뷰 자료로 된 구술사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구술사 컬렉션 담당자 Sean O' Brien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수집 대상은 영화, 방송, 음향 산업에 한정된다.

구술사 인터뷰는 수집된 영화, 방송, 음향자료에 대하여 보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구술자 선정기준은 해당 산업의 기여도에 따라 선정하고, 각 면담자들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위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 해에 25~30명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00시간에서 150시간의 인터뷰 자료가 수집된다. NFSA는 구술사와 인터뷰를 구분하고 있다. 구술사는 구술자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삶 전체에 대한 생애사 인터뷰로, 4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으로 진행된다. 구술자료는 음성녹음만을 수집하며, 이를 위한 녹음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카탈로그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온라인서비스는 Media Flex(UK)를 사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녹취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Voice Detecter를 이용하고 있다. 다음은 호주 국립영화와 음향 아카이브의 구술사 컬렉션으로, 주로 영화, 방송, 음향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Distributed National Collection

Distributed National Collection은 호주 내 시청각 컬렉션을 생산하고 있는 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기관 네트워크에는 1991년에 시청각 컬렉션 개발에 협력적이고 비경쟁적인 공공적, 국가적 접근에 동의하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 시청각 컬렉션에 타 기관이 생산한 시청각 관련 자료를 등록하면, NFSA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의 컬렉션인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들에 대한 시청각자료, Australian War Memorial의 호주의 세계 전쟁 참여와 관련된 시청각자료,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정부 문헌으로 생산된 동영상과 음향자료,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있는 구술사와 민속 컬렉션 등이 있다.

이외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 이때, 초기 생산자가 녹음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복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3자에 의한 편집이 진행되기도 한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모든 자료들은 원본 외에도 Fresh File Card와 Hard File Card로 이중 보존하고 있다. 공개는 구술자의 의향에 따라서 제한된 내용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본은 원본과 편집본(Distribution File과 Presentation File)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는 학자들과 다큐멘터리 연구자, 영화제작자들이 많고, 구술사는 이들에게 연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는 LC, BL, NLA의 특징을 개요, 역사, 관련 법령, 조직, 아카이브, 수집・제작, 서비스, 컬렉션, 교육・인턴쉽, 연구기금, 후원・협력 등 총 11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22] 해외 국가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사례 정리표

<table>
<tr><th></th><th>미의회도서관(LC)</th><th>영국국립도서관(BL)</th><th>호주국립도서관(NLA)</th></tr>
<tr><td>개요</td><td>• 범국가적 장서 구축
• 3대 기본원칙
① 의회, 연방정부는 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모든 도서와 매체 자료를 수집한다.
②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한다.
③ 미국인이 관심을 갖는 인물, 사회, 집단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원본이나 사본, 대표작을 수집한다.
• 각 주제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수집 정책을 수립하여 컬렉션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약 1억 6천만 건의 컬렉션 중 많은 부분이 스페셜 컬렉션으로, 비도서자료 형태인 매뉴스크립트, 마이크로폼, 사진, 녹음자료 등을 수집함.
• American Folklife Center(AFC) : 미발행 민속학적 녹음자료에 대한 마스터 레코딩 책임이 있으며, 구술자료에 대한 수집, 처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 모든 국가의 민속 음악, 춤, 구술, 예술과 전통문화를 광범위하게 수집, 기록화, 보존까지 담당함.</td><td>• 인쇄 및 디지털 자료로 발행된 국가 장서 구축
• 다양한 분야의 컬렉션 구축을 위해 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 제정하여 각종 자료를 납본받음.
• 납본 이외 수집, 기증,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장서를 보유, 매년 3백만 권의 인쇄자료 수집, 1억 7천만 건의 자료를 소장하여 보존하고 있음.
• Oral Collection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으로, 영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영국 구술사협회(Oral History Society), 지역도서관, 타 기관 구술 아카이브 간의 협력을 통해 구술 아카이브의 허브로서 기능하며 각 기관을 지원함.
• National Life Stories(NLS) : 1987년 독립재단으로 출발하여, 자체적인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음.
- Sound and Moving Image Catalog를 통해 검색,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를 통해 이용 가능</td><td>• Archived Websites, Asian, Dance, Printed Ephemera, Indigenous, Manuscripts, Maps, Music, Newspapers, Oral History and Folklore, Pacific, Pictures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별 자료가 혼합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음.
• 특히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호주인들의 인터뷰와 녹음들을 보존하고 있음 : 약 51,000시간의 녹음기록(recordings), 약 1,000시간의 인터뷰(interviews)가 매년 추가되고 있음.
• 컬렉션은 민속녹음기록(대중문화, 전통 노래, 전통 춤, 음악 이야기 등)과 호주 유명인사(과학자, 작가, 예술가, 정치인들, 스포츠인 등) 인터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과의 인터뷰(실업, 원주민 아동 분리 영향, 대공황, 호주이민자 등), 환경 음향(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역사적인 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료는 Trove(음악, 음향, 비디오 포탈)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음. 일부 인터뷰는 녹취문이나 요약문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함.</td></tr>
<tr><td>역사</td><td>• 1928년 미의회도서관의 Music Division이 Archive of American Folk-Song 설립함.
• 1906년~1917년 Winslow Gorden은, 연구기금을 바탕으로 미 전역의 민속음악을 수집하여 Archive of American Folk-Song 설립에 기여함.
<table><tr><th>시기</th><th>내용</th></tr><tr><td>1976년</td><td>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Public Law 94-201 제정 및 AFC 설립.</td></tr><tr><td>1977년</td><td>Chicago Ethic Arts Project, South Central Georgia Folklife Project 수행</td></tr></table></td><td>• NLS : 1985년 구술사가 Paul Thompson과 Asa Brgiggs가 진행한 National Life Story Collection으로 시작하여 1986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NLS 창립함.
- 정치, 산업, 행정, 문화, 종교 등 영국 내 모든 분야의 남성과 여성의 구술 인터뷰를 담고 있음.
- 초기, 기금 마련을 위해 The Wingate Foundation, Nuffield Foundation의 기부를 받고, ‘Henry Moore’의 조각상 판매대금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함.
• 첫 프로젝트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 City Life를 시작. 1990년에 시작한 Artist Lives는 350개 이상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여 현재까지</td><td>• 1901년 영연방 의회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됨.
• 1927년 멜버른 의회가 캔버라로 이전하면서 영연방 의회도서관도 캔버라로 이전됨.
• 1960년 의회 법령에 따라 의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 분리됨.
• 1968년 현 호주국립도서관 건물 완공
<table><tr><th>구술사와 민속 컬렉션의 하이라이트</th></tr><tr><td>Hazel de Berg 컬렉션
: 1957년부터 작가, 화가, 예술가 등 1290명을 인터뷰하여 호주국립도서관에 기증함.</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th><th>미의회도서관(LC)</th><th>영국국립도서관(BL)</th><th>호주국립도서관(NLA)</th></tr>
<tr>
<td>역사</td>
<td>
<table>
<tr><th>시기</th><th>내용</th></tr>
<tr><td>1890년대
~1930년대</td><td>1만여 개의 왁스 실린더에 녹음된 미속 학자료를 보존테이프로 변환</td></tr>
<tr><td>2000년</td><td>스미스소니언 연구소와 Save Our Sounds Audio Preservation Project 진행</td></tr>
<tr><td rowspan="5">2000년대
~2010년대</td><td>테네시 주 Jonesborough의 International Storytelling Center의 25만 건의 자료 기증・수집</td></tr>
<tr><td>Local Legacies Project : 800개 컬렉션의 기증・수집</td></tr>
<tr><td>National Folk Festival의 공연자료 컬렉션 기증(4,700시간)・수집</td></tr>
<tr><td>Story Corps project에서 수집한 10만여 민초들의 구술사 인터뷰 자료의 기증(비영리기관의 자료)・수집</td></tr>
<tr><td>Alan Lomax Collection 기증・수집</td></tr>
<tr><td>2010년대~</td><td>•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및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
• Archie Green Fellowship 및 기타 연구기금 조성을 통한 컬렉션 수집 확대</td></tr>
</table>
</td>
<td>
지속되고 있음.
• 매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연도별로 진행된 구술 프로젝트의 경과, 파트너십, 이용방법, 예산집행, 면담자 및 구술자 등 기고 및 인터뷰 등이 수록되어 있음.
• 2018년 현재까지 총 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함.
• 2018년에 수행된 프로젝트 목록
<table>
<tr><th>프로젝트명</th></tr>
<tr><td>An Oral History of Farming, Land Management & Conservation in Post-war Britain</td></tr>
<tr><td>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td></tr>
<tr><td>Britain Building The World: An Oral History of Infrastru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td></tr>
<tr><td>Architects’ Lives</td></tr>
<tr><td>Artists’ Lives</td></tr>
<tr><td>Authors’ Lives</td></tr>
<tr><td>Crafts Lives</td></tr>
</table>
</td>
<td>
<table>
<tr><th>구술사와 민속 컬렉션의 하이라이트</th></tr>
<tr><td>John Meredith의 민속음악
: 1953년~1994년까지 수집된 500여 개의 전통민속음악, 노래, 암송, 춤곡, 이야기, 회상들로 구성</td></tr>
<tr><td>Bringing Them Home Oral History Project
: 1998년~2002년 사이에 수집된 300개의 인터뷰. 원주민 아동 분리 과정에 연루된 원주민, 선교사, 경찰, 행정관들에 대한 인터뷰</td></tr>
<tr><td>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 아동기 때 기관이나 홈 돌봄시설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td></tr>
<tr><td>호주 장애인 올림픽 이야기들
: 호주의 장애인 올림픽 스포츠의 성장과 성공에 관련된 주요인사들과의 인터뷰</td></tr>
</table>

[NFSA]
• 2008년 Na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NFSA Act)에따라 호주국립영상과음향아카이브 설립
• 1935년 내각 결정에 의해 영연방 국립도서관의 일부로서 국립 역사적 영화와 구술기록 도서관(National Historical Film and Speaking Record Library)로 시작
• 1960년 호주국립도서관의 의회도서관이 분리, 호주국립도서관의 국립영상아카이브와 음향기록(National Film and Archive and Sound Recording) 섹션으로 이전
• 1992년 NFSA를 위한 정책이 수립
• Screen Sound Australia(1999/호주영상위원회 소속)에서 200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호주영상위원회로부터 분리)
</td>
</tr>
</table>

<table>
<tr><th></th><th>미의회도서관(LC)</th><th>영국국립도서관(BL)</th><th>호주국립도서관(NLA)</th></tr>
<tr><td>관련법령</td><td>• (1976) Public Law 94-201, American Folklife Preservation Act : 의회에서 공표하는 내용, 법령의 정의, 센터 설립과 위원회 운영,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국가 아카이브로서의 설립 및 유지에 대한 내용 포함
• (1999)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
• (2002)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 : 국가 참전용사들의 구술기록 수집 및 컬렉션 구성
• (2016) Public Law 114-246, Gold Star Family Voice Act :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군인들의 직계가족의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수집범위를 확대함.
• (2009) Public Law 111-19, The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Act : 국가 주도로 시작된 시민권 역사 프로젝트로, 스미스 소니언과의 협업으로 진행함.</td><td>• (1972) British Library Act : 국가장서 구축, 보존의무 등
• (2003) Legal Deposit Libraries Act : 납본제도로, 1801년, 1814년, 1836년, 1842년, 1911년 등 총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인쇄출판물의 법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음.
• (2013) The Legal Deposit Libraries(Non-Print Works) Regulations : 납본의 범위를 디지털 출판, 웹사이트까지 확장하였으나 구술자료(음성자료)에 대한 납본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 Copyright Law
- The Deposit of Your Oral History Recording at the British library 가이드 : 구술자료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적 근거 제시, 구술자료 기탁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 제공함.</td><td>• (1960) National Library Act : 국립도서관 설립
• (1968) Copyright Law : 납본 제도 확립
• (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lilty Act
• (2014) Digital Legal Deposit : 저작권법 납본 조항들이 온라인 출판으로 확대됨. 이는 모든 호주 인쇄물, 전자책, 학술지, 잡지 뉴스레터, 리포트, 악보, 지도, 웹사이트와 공공 사회적 미디어를 포함함. 납본은 모든 호주 개인, 집단, 조직에 적용됨.
※ 구술자료는 납본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2008) Na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NFSA Act) : 호주국립영상과음향아카이브(호주국립시청각 아카이브) 설립</td></tr>
<tr><td>조직</td><td>• 총 28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됨.
- Director : 1명
- Head of Research and Program, Head of Archive : 1명
- 하부조직 구성원 : 26명
<table><tr><th>부서 및 직책</th><th>명</th></tr><tr><td>Research and Programs
(Folklife Specialist, Program Specialist, Reference Automation Specialist, Writer-Editor)</td><td>9명</td></tr><tr><td>Processing
(Archivist, Library Technician, Cataloger, Digital Conversion Specialist, Folklife Specialist)</td><td>11명</td></tr><tr><td>Reference
(Folklife Specialist, Reference Librarian)</td><td>4명</td></tr><tr><td>Digital Assets Manager</td><td>1명</td></tr><tr><td>Administrative Specialist</td><td>1명</td></tr></table></td><td>• 총 60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됨.
- Director : 1명/DeputyDirector : 1명/ Associate Director :1명
<table><tr><th>직책</th><th>명</th></tr><tr><td>Treasurer</td><td>1</td></tr><tr><td>Project Director</td><td>1</td></tr><tr><td>Archivist</td><td>2</td></tr><tr><td>Assistant Archivist</td><td>1</td></tr><tr><td>Senior Academic Advisor</td><td>1</td></tr><tr><td>Bookkeeper</td><td>1</td></tr><tr><td>Oral Historian and Researcher</td><td>1</td></tr><tr><td>Freelance Project Interviewer</td><td>5</td></tr><tr><td>Collaborative Doctoral Student</td><td>1</td></tr><tr><td>Freelance Oral Project Interviewer</td><td>7</td></tr><tr><td>Transcriber</td><td>3</td></tr><tr><td>Unlocking Our Sound Heritage Volunteer</td><td>2</td></tr><tr><td>Trustees</td><td>12</td></tr><tr><td>NLS Advisers</td><td>17</td></tr></table></td><td>• 총 12명으로 구성됨.
- Senior Curator : 1명
- 보존 전문가 : 4명
- 수집, 정리, 기술, 서비스 : 6명
• 호주국립도서관의 Collection 부서 아래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s으로 운영.

[NSFA]
• Collection and access에서 컬렉션의 수집, 접근, 정책, 큐레이터, 관리를 진행. 다섯 개의 부서로 이루어짐.
- Community Engagement
- Curatorial
- Access and commercial
- Indigenous connections
- Collection stewardship
• 구술사 담당자 : 1명</td></tr>
</table>

	미의회도서관(LC)	영국국립도서관(BL)	호주국립도서관(NLA)
아카이브	• 미국의 첫 번째 전통생활사에 대한 국가 아카이브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 • 미국과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민속과 전통적인 문화를 기록한 민속학적인 도큐멘테이션 자료 소장 • 민속학, 민속생활, 사회언어학, 인류학, 민족학적 분야 : 35만 시간 이상 녹음, 80만 장 이상의 사진, 필드노트, 매뉴스크립트, 비디오, 100만 건이 넘는 2천여 개의 컬렉션 소장 • 아카이브 이용은 센터 방문 일주일 전, 정보서비스 담당 직원과의 사진 연락이 필수, 일부 자료는 사전 승인이 필요함.	• Oral Collection은 영국 최대 규모의 구술 컬렉션 • 구술자료(오디오, 비디오, 인터뷰) 외 관련 문서, 사진 등 문헌 역사자료도 함께 수집하고 있어 양이 방대함. • 맥락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 간의 링크→ 연계자료 제공 • 약 9만 건의 음성, 비디오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 구술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업무는 NLS와 Oral Collection에서 담당. 음성, 동영상, 인터뷰 자료를 서비스하는 업무는 BL Sound Archive에서 진행함. • British Library Sound & Moving Image Catalog를 통해 음성, 비디오 자료 검색, 상세검색 지원, 구술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마크, 제목, 유형, 수집, 컬렉션, 문서, 녹음, 목적, 저작권, 접근, 인벤토리 등) 제공 - Finding Very Particular Material in Oral History Collections : A Research Toolkit and User Journey 제공	• Oral Histrory and Indigenous Program Collecion은 호주 최대의 컬렉션 구축 • 유명한 호주인들과의 구술사 인터뷰, 평범한 호주인의 목소리, 사회사 인터뷰, 민속기록을 구성됨. • 총 51,000여 시간의 녹음자료로 구성 • 개인 사진, 강연, 연설, 일기 등 관련 문서자료도 함께 수집. • 컬렉션 구축하기 위해 매년 1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됨. • 4개의 주제로 나누어짐. ① 민속음악 ② 각 분야에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호주인 ③ 호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 및 단체 ④ 소리 : 자연, 동물 등 ---------- [NFSA] • 호주국립영상과 음향아카이브 • 현재 300만 개의 시청각 컬렉션(필름, 텔레비전, 소리, 구술사, 관련 문서와 물증 등)으로 구성 - 디지털화가 진행됨 : 디지털(Born-digital) 자료 수집, 장기보존, 시청각 컬렉션 매체 변환 등
수집·제작	• 기부, 자체 프로그램 제작으로 진행 - 기부(기증, 교환, 복본을 위한 대여, 이관, 저작권 납본)를 통해 컬렉션 구축 - 개인 컬렉션의 경우, 생산자가 컬렉션의 범주, 콘텐츠, 정리를 직접 구성하여야 함. - 포맷 메타데이터를 생산자가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실용지침서(Ethnographic Collections in the Archive of Folk Culture: A Contributor’s Guide)를 제공함.	• 기증 또는 기탁(Deposit), 자체 프로그램 제작으로 진행 • 각 주제 컬렉션마다 별도의 수집정책을 가지고 있음. • Oral Collection의 장서 정책을 통해 구술자료 수집 목적, 수집 대상, 기탁, 구술 컬렉션의 역할을 명시함. • 기탁의 조건 : 구술자료, 메타데이터, 동의서 등 관련 서식 제공, 지적재산권 양도 여부 기술 • NLS 재단의 자체프로그램 : 소멸가능성이 있는 주제 영역에 우선수위를 둠. 지역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여 중복되는 수집을 최소화하는 작업 수행	• 기증(Donation), 구매(Purchase), 자체프로그램(제작) 운영 •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Unpublished Collection - 도서관은 수집 방식을 출간, 비출간 컬렉션을 구분 - “비출간 컬렉션은 납본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원고, 사진, 영화, 구술·민속문학으로 구성 - 장서정책을 통해 정의, 수집목적, 범위, 우선 순위, 접근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Oral History and Indigenous Programs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 운영 - NLA의 사명을 담은 주제선정 및 기획 - 면담자와의 1대1 계약을 통한 위탁수집 진행

	미의회도서관(LC)	영국국립도서관(BL)	호주국립도서관(NLA)
수집· 제작			[NFSA] •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 제작·운영 - 관련 산업 기여도에 따라 구술자 선정 - NFSA Collection Committee에 기획안을 제출 - NFSA Board 승인에 따라 진행함 - 면담자와의 1대1 계약을 통한 위탁수집 진행 • 기증, 기탁, 구매, 위탁 수집, 사후 증여(유증)
서비스	• 온라인 : 온라인 포맷을 통한 자료 제공 - 웹사이트를 통해 컬렉션 제공, 자료 이용, 블로그 (Folklife Today)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진행 • 오프라인 :연구자들의 자료 요청 - 모든 자료는 궁극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은 허용하나 생산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함. - 복본을 요구할 경우, 구술자나 수집가로부터의 이용허락서 필요 - 이용협약서 등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용자 서비스 제공 • 일부 비공개자료, 아날로그 자료는 사전 신청, 승인, 예약 후 열람 가능(8주 시간 소요) • 오프라인 : Rare Books and Music Reading Room 직접 방문하여야 함. •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 팟캐스트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여 구술 컬렉션에 대한 정보 공유 • 현재 9만 건이 넘는 녹음이 디지털화되어 서비스, 일부는 편집본의 형태로 제공되며, 음성자료에는 메타데이터가 함께 제공됨. • Collection Guide 제공 : 컬렉션 주제 설명, 온/오프라인 이용가능 여부, 관련 컬렉션 소개	• Trove나 카탈로그를 통해 이용· 검색 가능 • 참조데이터(메타데이터, 디지털 오디오 제공 : 일부 요약문과 녹취록 전문 열람서비스 제공 • 구술사 컬렉션 접근 조건 : 구술자가 정해놓은 접근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규정되어 있음. ① 연구를 위한 접근 ② 개인적 이용에 대한 복사 ③ 공공적 활용에 대한 접근 - 접근 조건에 따라 연구, 개인적 복사, 공공적 사용에 허가 서류 필요 ※ 도서관은 허가 서류작성 관련 지원
컬렉션	• Occupational Folklife Project(OFP) -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전환시대의 현대 직업문화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 Veteran History Project(VHP) - 국가 참전 용사들의 구술 프로젝트 - 10만 건 이상의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음. - 자원봉사자(15세 이상)들에 의해 구술채록이 수행됨. : 필드 킷(Field Kit) 제공, 1주에 100건을 상회하는 기증 - Gold Star Families Voices Act 통과로, 참전하여 사망한 모든 군인들의 직계가족을 포함하는 구술자료 수집 • Civil Rights History Project(CRHP) - 국가 주도로 시작된 시민권 역사 프로젝트 -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 - 2010년~2013년까지 139명의 참여자, 100여 개가 넘는	• Oral Histories of Jewish Experience and Holocaust Testimonies - 영국 내 유대인 생존자, 홀로코스트에 대한 개인 구술 - The Living Memory of The Jewish Community : 1987년~2000년,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생존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186건의 구술 음성자료 수집함. - The Holocaust Survivors' Center Testimony Recording Project : 1993년~1998년, 154건의 구술자료를 수집함. • Artist's Live : NLS와 Tate Archive, Henry Moore Institute가 협력하여 운영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 구술 프로젝트 • Millennium Memory Bank - 1998년~1999년, BBC 지역방송국의 The Century Speaker 시리즈로 구성	[NLA 컬렉션] • Hazel de Berg 컬렉션 - 1957년부터 작가, 화가, 예술가 등 1290명을 인터뷰 - 구술자의 강연, 독서기록, 성적 증명서, 메모 등 관련 문서도 함께 수집 • Folk music by John Meredith - 호주 민속협회 설립자인 John Meredith이 진행한 전통민속 음악연주, 노래, 암송, 춤곡, 이야기, 회상들로 구성 - 1953년]~1994년에 수집된 500여 개의 음성자료와 관련된 악보, 메모, 사진, 문서로 구성 • Bring Theme Home Oral History Project -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자체 구술사프로젝트 - 원주민 강제이주와 아동 분리 정책을 주제로 진행

	미의회도서관(LC)	영국국립도서관(BL)	호주국립도서관(NLA)
컬렉션	구술기록 수집 - 비디오 파일, 비디오 카세트, 디지털 사진, 인터뷰 체록문 등 401건의 기록 보유	-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둔, 유럽 최대 단일 구술 컬렉션 중 하나 • An Oral History of British Science - 영국 내 100명 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1000시간이 넘는 인터뷰 영상 수집, 웹사이트 제공. - Inspiring Scientists : Diversity in British Science - Science and Religion : Exploring the Spectrum	- 1999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2년 종료 -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9년 추가 지원을 받음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010년에 후속 인터뷰 진행 - 자료마다 접근에 대한 범위가 다름. • Forgotten Australian and Former Child Migrants -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호주인들과 아동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한 자체 프로젝트 - 200여 명의 면담자가 투입되어 2012년 종료 - 신문, 개인일기, 사진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구축 - 자료에 마다 접근에 대한 범위가 다름 ---------- [NFSA 컬렉션] • Distributed National Collection의 일부 - 네트워크는 1991년 컬렉션 개발에 협력적이고 비경쟁적인 국가적 접근에 동의하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참여 • National Registry of Audiovisual Collections을 통하여 호주 내 시청각 컬렉션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 Australian War Memorial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타 기관의 수집을 지원하진 않지만, 국립 시청각자료 수집기관으로 호주의 시청각자료 아카이빙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 전국에서 생산되는 시청각자료 수집, 보존, 접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교육·인턴쉽	• 제한된 수의 자원봉사자 선발 • 지원 조건 - 최소 200시간 이상 업무 수행 가능자(필수) - 최소 2일 전일로 근무 가능자 우대 - 주말 근무 불가	• BL, OHS, NLS 공동으로 구술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단계별, 분야별 교육과정 마련 - 누구나 예약을 통해 교육과정 신청하고 수강 가능함. • 구술사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 • 구술 관련 지침 및 기타 정보 제공	• 구술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컨설팅 진행 - 정리 및 기술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자체 구술사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함.

<table>
<tr><th></th><th>미의회도서관(LC)</th><th>영국국립도서관(BL)</th><th>호주국립도서관(NLA)</th></tr>
<tr>
<td>연구기금</td>
<td>• 민속학 컬렉션 자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지원 기금을 통해 연구자,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음.
<table>
<tr><th>기금명</th><th>규모</th></tr>
<tr><td>Archie Green Fellowship</td><td>최대
3만5천 달러</td></tr>
<tr><td>Jon B, Lovelace Fellowship for the Study of the Alan Lomax Collection</td><td rowspan="2">다양함</td></tr>
<tr><td>The American Folklife Center Internship Program Fund</td></tr>
<tr><td>The Gerald E, and Gorinne L. Parsons Fund Award</td><td>총 4천 달러</td></tr>
<tr><td>The Blanton Owen Fund Award</td><td>1천 달러</td></tr>
<tr><td>The Henry Reed Fund Award</td><td>1천 달러
~2천 달러</td></tr>
</table></td>
<td>• Goodison Fellow
- NLS 컬렉션을 활용한 연구 지원
- 연구 결과는 전시회, 프로그램, 기사 등으로 사용
-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td>
<td>• Communication Heritage Grant(CHG)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원주민 단체 등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관리, 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 4가지의 사업 유형에 지원 가능하며,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table>
<tr><th>유형</th></tr>
<tr><td>Significance Assessments of Collections</td></tr>
<tr><td>Preservation Needs Assessments of Collections</td></tr>
<tr><td>Conservation Activities and Collection Management, and</td></tr>
<tr><td>Training Workshops</td></tr>
</table>
• 연구자, 작가, 예술가 등 젊은 학자들을 위한 연구기금
- 연구자, 작가, 예술가 등에게 도서관 자료, 참고 서비스, 재정 지원, 연구 장소 제공
- 총 4가지의 연구기금 및 장학금이 운영 중
<table>
<tr><th>유형</th></tr>
<tr><td>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Fellowship</td></tr>
<tr><td>Creative Arts Fellowship</td></tr>
<tr><td>Summer Scholarship</td></tr>
<tr><td>Asia Study Grants</td></tr>
</table></td>
</tr>
<tr>
<td>후원
· 협력</td>
<td>• AFC의 후원을 통해 컬렉션을 구축, 후원금은 국가의 문화적 탁월성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기능
- Friends of the Folk Archive Fund에 기부
- 공적이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 훈련, 연구 기회를 지원하는 AFC Fund에 기부
- Veterans History Project에 기부
- Fellowship Fund 중의 하나를 통해 연구자 지원 가능</td>
<td>• 독립적으로 기금 마련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 및 기부 방법 게시
• The Gift Aid Scheme 기부
- 개별 납세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본 세율(25%)을 국가적으로 청구하여, A Gift AID Form을 추가적으로 제출
- 법인이 NLS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을 납부한 후, 법인세 산정 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
• 유산에 의한 기부
- 유언장 기입할 문구의 예시 제공</td>
<td>• 고강도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주요 협력 기관
-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
- 호주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 호주 국립영화와 음향 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 호주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
-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사람 연구기관(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 기타 주립 도서관
- 호주연구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td>
</tr>
</table>

2.4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관련 법령

2.4.1 도서관법

□ 도서관법의 개요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도서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그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적인 성격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납본, 온라인 자료의 수집

「도서관법」 제3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제1항 제1호), 국내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제1항 제2호),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제1항 제3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제1항 제4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제

1항 제5호),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제1항 제6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제1항 제7호),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제1항 제8호)를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9조는 도서관 직원의 교육 훈련, 제1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제11조는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공, 제12조는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표 23>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 도서관법 및 시행령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관련 내용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제공 · 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 · 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 9. 21.]

한편 「도서관법」 제20조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 서지의 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납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서관 자료의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납본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보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납본 대상이 되는 도서관 자료의 종류를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

수자료,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로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도서기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부여받은 자료로 납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온라인자료와 디지털 납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24>는 납본과 관련된 도서관법 및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24> 도서관 자료 납본 관련 도서관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도서관법」 제20조의 2는 온라인자료의 수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율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자료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온라인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과 삭제 청구에 대한 권리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5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해당 업무 처리 절차를 담고 있다.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을 경우에 10일 이내(최대 10일 연장 가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표 25>는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온라인자료 수집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온라인자료 수집과 관련된 도서관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13조의5(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 · 종류 · 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 · 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9. 21.] [제13조의4에서 이동 <2014. 8. 12.>]

□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 및 활용

가) 구술자료의 납본과 온라인자료 수집 가능성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본이나 온라인자료 수집 조항을 근거로 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생산 또는 수집한 구술자료가 납본 및 온라인자료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납본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도서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본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서관법」 제2조 제2호는 도서관 자료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0조는 온라인자료를 제외한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도서번호(ISBN)을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납본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

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로 납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를 매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에 따라 납본의 범위가 결정된다. 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가 도서관 자료에 해당이 되고, 납본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즉, 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도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시청각자료 등이 모두 도서관 자료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납본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일견 구술자료도 납본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처럼 보인다. 구술자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녹음자료나 녹화자료가 필수적으로 생산되고, 녹취문이나 관련 자료집 등이 함께 생산되기도 한다. 녹음자료나 녹화자료는 저장매체와 상관없이 시청각자료로, 녹취문이나 자료집은 대개 전자자료나 도서에 해당이 된다. 온라인자료를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납본의 범위는 발행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뿐만 아니라 제작된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출판물의 형태로 발행이 되지 않은 구술자료라고 하더라도 납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구술사 수행기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는 구술사 수행기관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집 및 생산한 것으로, 수집된 자료는 출판 등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유형의 복제물이 아니라,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생산된 유일무이한 원본기록물이 대부분이다. 구술사 수행기관은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한 유일무이한 원본기록물을 활용하고, 구술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며, 홍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제작한 기록물의 원본에 해당하는 구술자료를 국립

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술사 수행기관들의 독립적인 서비스와 자료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상당한 반발과 파장이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구술사 수행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납본 대상으로 구술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채 조문의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납본제도는 국가에서 출판되는 자료들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으로, 국가서지 편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자국의 지식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본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납본과 관련된 규율의 내용을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국회도서관법」 제24조부터 제25조의 3에서 납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법」은 도서, 소책자, 축차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필름,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혹은 그림, 축음기용 레코드, 전자적 방법 또는 자기적 방법 등에 의해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법과 유사하게 정보 매체를 중심으로 납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이 발행과 제작을 모두 납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 국회도서관법에서는 '출판물'만을 납본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1870년부터 「저작권법」으로 미의회도서관을 납본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197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납본의 범위를 미국 내에서 출판, 배포되는 모든 저작물(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오프라인 전자출판물)로 지정하고 있다. 1989년에는 기계가독자료 가운데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온라인 출판물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10년에 온라인 전자출판물도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출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행되거나 배포되는 저작물만을 납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자료를 출판한 경우에는 출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잡지와 음반 및 기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은 자발적 납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 잡지, 지도, 신문, 인쇄형 음악자료의 납본을 규정하고 있으며, CD-ROM 등의 전자포맷은 자발적 납본이나 구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납본과 관련된 규정이 가진 공통점은 납본의 대상을 출판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서관의 역할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책으로 대표되는 출판물을 수집해서 보존하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었고, 출판되기 이전의 기록이나 자료는 기록관이나 아카이브가 수집해서 관리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입법의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

세계 각국의 납본과 관련된 규정은 대체로 출판이나 발행이라는 행위의 결과물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법」에서는 납본의 범위를 발행과 함께 제작까지를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자료를 제외한 물리적 구술자료가 납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제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도서관법」 제20조의 2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술자료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수집·보존할 수 있다. 기술적인 보호조치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온라인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요청을 받은 온라인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먼저,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집된 온라인자료는 자료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물론 국가자원

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 이 조항을 활용한 자료 수집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구술자료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적인 보호조치로 인해서 자료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온라인자료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 커다란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구술자료를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온라인으로 구술자료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해당 기관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제3의 기관으로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납본이나 온라인자료 수집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제작의 근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당대의 지식자원을 수집하여 보존·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관법」 제19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식자원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술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사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 제1호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2019년도에 발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이 구술사와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술채록 사업의 대부분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영역을 지원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제2호가 규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시청각자료의 일환으로 구술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이다. 구술자료는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제5호는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구술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선 공공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교류, 협력과 지원은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에 국한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확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제7호는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다. 구술자료 수집 및 보존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근거로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제정의 취지와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큰 틀에서 해석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토대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외부에서 생산된 자료를 납본,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이지, 직접 자료를 제작하거나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구술자료의 수집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생산한 것을 기증이나 유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구술사 인터뷰를 직접 기획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한 도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가 도입되던 초기에 미국에서도 구술사를 도서관의 사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유사한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에

‘제작’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자료 제작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술자료와 같이 도서관이 직접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법 제19조 제1호의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종합계획에 따른 시책의 시행은 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대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개선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 그리고 일선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의 일부가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도서관법」 제19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술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구술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여 지식자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자료 보존뿐만 아니라 구술자료의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의 자료 수집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제작’의 정의를 개정하여, 구술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의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4.2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 함은 저작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오롯이 부여된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저작물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역시 저작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요건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나 기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또는 느낌이어야 한다. 이때, 사상이나 감정은 생각이나 느낌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사상이나 감정일 필요는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드러나야 한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표현들이다.

둘째,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개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작성자의 고유한 개성이 표현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직접 작성한 것만으로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창작성의 개념은 예술적 성취나 미적 완결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설령 어린 아이가 작성한 그림이나 일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그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저작자로서의 요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사람을 뜻한다. 즉, 저작물에 드러난 표현행위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한편 작품을 생산하는 데 경제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학술연구나 창의적 표현을 생산하는 보조자의 경우에는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부를 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분권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고가 결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인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내포된 저자의 인격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저작인격권도 함께 사라진다.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저작인격권만의 특성이다. 저작인격권은 다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세부적인 권리로 나누어진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언제, 어떤 매체와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이 가진 재화로서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타인에게 상속, 증여, 양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작인격권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리 자체가 타인에게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제3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도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법 제16조~제22조) 등의 여러 가지 지분권으로 구성된다.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이 어떤 종류의 저작물인가는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거나, 유형물에 고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배포권은 유형의 저작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낭독,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영상기기를 활용해서 시청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이나 제한된 공간 안에서 녹음물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연보다 그 폭이 넓다. 공중송신권은 일반 공중에게 유·무선 통신이나 전파를 활용해서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송신의 유형에 따라 다시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을 이용하여 전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소 제한적인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권리가 보호된다. 소유권은 권리의 객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권리인 반면에 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만 보호가 되는 한시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은 소멸되고, 저작물은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더해서 그의 사후 70년까지이다.

저작물의 사용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개별 이용 행태 모두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구술자료와 관련된 참고할만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 구술자료의 저작물성과 저작자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통해서 생산된다. 구술자와 면담자

의 대화가 과연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저작물이 된다면 저작권은 구술자가 가지게 되는 것인가? 면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구술자료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저작물이 될 수 있다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차례로 점검해 보았다.

가) 구술자료의 저작물성

구술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검토는 구술자료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저작권에 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술자료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객체인가를 확인하려면, 우선 구술자료가 저작권법이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창작물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화는 구술자와 면담자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두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구술자의 체험과 그와 관련된 소회가 이야기로 펼쳐지고, 면담자는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여 대화를 이끌어간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술자와 면담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구술이 가지는 즉흥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람의 표현을 베끼기는 실제로 어렵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그 자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각자의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저작물이 된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매체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가 없다.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

지털 테이프와 같은 매체에 기록된 대화만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법은 매체에의 고정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매체에의 고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저작권은 구술 인터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발생이 된다. 미국의 구술사학자 Neuenschwander는 구술자가 마이크나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구술자료의 저작권 보호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저작물로서의 요건으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매체에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지적인 창작물이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로 표출된 순간부터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진다.[9] 즉, 구술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저작권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표현의 영역이지 내용이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송영식, 이상정, 2003). 저작물의 내용은 사실(fact)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사실에 대한 독점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공유영역의 것이다. 저작권은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호한다(仲山信弘, 2007).

따라서 구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구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법이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구술자와 연구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다.

9) 베른협약 제2조의 2에서 고정요건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에 유보되어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특정한 매체에의 고정을 저작물로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한 매체에의 고정을 저작물로서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나) 구술자료의 저작자

구술자료가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술자료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발생하고 귀속되는 것일까?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문을 구성하고 적절한 호흡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면담자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구술자료의 저작자는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구술자인가? 아니면 질문과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면담자인가? 이 절에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법 제2조 제2항)라고 정의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창작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직접 가담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창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자료의 수집과 검색 혹은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자의 기본 요건은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대개 면담자의 질문에 구술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 면담자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의 내용과 순서를 구성하고, 구술자는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면담자가 질문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어서 구술자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소회를 소상하게 풀어놓게 된다.

구술자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서술의 주체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구술자의 삶의 경험과 소회가 담겨있다. 다시 말하면 구술자라는 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구술자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바로 그 당사자이다. 따라서 저작자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구술자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지 않는다(이호신, 2010). 그렇지만 면담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면담자가 저

작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과정에서 면담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명해야만 한다. 즉, 면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술자료의 생산에 창작적으로 기여하는가를 점검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면담자는 구술자의 선정, 인터뷰 내용의 기획과 구성에 관여한다. 실제 채록의 과정에서는 적절한 개입과 구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그 흐름을 주도한다. 동일한 구술자에 대한 면담이라도 면담자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구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유철인, 2010). 유철인(2003)에 따르면, 면담자의 사회적 배경, 관심과 특성, 준비 정도에 따라 동일한 구술자에 대한 구술 인터뷰도 완전히 다른 판본의 구술자료가 될 수도 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생산하는 공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술자와 면담자의 호흡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호흡을 맞추어서 함께 생산하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고, 면담자는 구술자와 더불어 구술자료의 내용과 표현을 구성하는 데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된다. 면담자의 창작적 기여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구술사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온 미국이나 유럽의 구술사학자나 법학자들의 주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영국의 구술사학자 Thompson(2003)은 면담자의 역할을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술사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창의적 협동 프로젝트임을 강조한다. 이탈리아의 구술사학자 Portelli 역시 면담자는 인터뷰할 사람을 선택하고, 대화의 파트너로서 또한 인터뷰의 연출가 혹은 증언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술채록 과정에서 면담자의 창작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의 법학자 Goldstein은 편지와 인터뷰를 비교하면서, "편지 왕래에 비해서 인터뷰에서의 질문과 대답이 훨씬 더 긴밀하게 구성이 된다"는 주장으로 면담자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글의 자문변호사 Patry 역시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을 구성하고, 답변을 이끌어내고,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은 모두 저작권을 인정받기에 충분한 창작적 요소

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Neuenschwander(2009)는 저작권법이 면담자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원칙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면담자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미연방순회항소 제2법원은 루빈과 보스턴잡지(Rubin v. Boston Magazine)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질문의 구성 자체가 저작물로서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논의와 사례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구술자료의 생산과정에 면담자도 공동저작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면담자는 채록의 과정에 적절한 질문과 개입을 통하여 구술채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자신의 연구의도를 인터뷰 과정에 반영하면서 창작적 표현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면담자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구술의 실제 내용은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면담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구술자의 반응이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자료의 생산과정에 면담자가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한편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구술 사이 사이에 면담자가 개입하면서 그 내용과 방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각기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구술자나 면담자가 기여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로 볼 수는 없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한 상태로는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저작물이고, 구술자와 면담자는 구술자료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구술자료의 적법한 활용을 위해서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허락이 동시에 필요하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구술자와 면담자 가운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구술사 인터뷰를 수행하는 면담자의 신분에 따라서 구술사 연구기관이 수집한 기록물의 저작권은 다소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구술사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이 직접 채용한 소속 연구자가 면담자가 되어서 인터뷰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외부의 연구자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 각각의 경우에 면담자의 저작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구술사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자를 활용해서 구술사 인터뷰를 수행하는 경우, 면담자의 저작권은 면담자와 연구기관 사이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면담자와 소속기관 사이의 고용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기관이 구술채록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기관의 명의로 구술자료를 공표한다면, 수집된 기록물은 일종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업무상 저작물'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예외에 해당한다. 구술자료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면, 연구기관이 면담자로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연구기관의 몫이 되고, 저작권 보호 기간도 달라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연구기관 외부의 연구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구술사 인터뷰와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많은 경우의 구술자료 수집이 도급계약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연구기관이 연구자를 직접 채용할 때와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위임인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에 서고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오승종, 2007)이기 때문에 수급인인 면담자는 도급인인 발주기관과 고용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발주기관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연인으로서 면담자가 된다. 발주기관과 면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방법은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1조) 면담자와의 도급계약만으로는 저작물의 활용이나 저작권 인수에 필요한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출 수가 없다. 면담자와의 계약이

합법적인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구술자의 동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 면담자와의 도급계약은 구술자가 확정되기 이전에 또는 구술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구술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계약은 구술자료의 생산 과정에서 면담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잠정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잠정적인 의사표시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서명한 기록물공개허가서 또는 저작권양도계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법률적인 효력을 획득하게 된다. 기록물공개허가서를 통하여 구술자와 면담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야 발주기관이 저작재산권자로서 또는 저작물 사용의 적법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술자와 면담자 모두에게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구술자와 면담자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표나 수정·보완 등을 위해서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또 다른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만 한다.

□ 구술자료의 활용과 저작권

가) 구술자료 : 녹음자료과 영상자료의 저작자와 저작권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자료는 실제로 매우 다양하다. 구술현장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현장에서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구술자와 면담자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옮긴 녹취문, 가독성을 고려해서 재편집한 텍스트, 영상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자료가 생산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술자료는 구술현장에서 이루어진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직접 기록한 녹음자료와 영상자료이다. 녹취문과 그밖에 다른 자료들은 구술자료를 변형하거나 가공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결과물이다. 이런 2차적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구술 인터뷰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자들이 관여하게 되고, 구술자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상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구술자료의 원본에 해당하는 인터뷰 현장에 대한 녹음자료와 녹화자

료의 저작권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녹음자료나 녹화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구술자와 면담자 이외의 촬영자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관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술사의 원본기록에 해당하는 녹음자료와 녹화자료가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해당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구술면담은 구술자의 체험과 기억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에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담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녹음자료와 영상자료는 바로 면담행위에서 발생한 저작물을 특정한 매체에 기록한 결과물이다. 그렇지만 두 가지 매체에 담기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술현장을 담고 있는 녹음자료는 구술행위, 즉,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음성으로 기록한 것이다. 녹음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마그네틱 테잎이나 하드디스크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말(言)로 구성된 어문저작물이다. 어문저작물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저작자는 말이나 글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녹음자료에 수록된 대화를 주고받은 면담자와 구술자가 저작자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개 녹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촬영자가 필요하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면담자가 자신이 휴대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녹음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 구술자와 면담자 이외의 또 다른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설령 녹음제작을 돕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역할은 녹음기의 스위치를 간단히 조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녹음을 한 사람이 구술자료의 생산과정에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녹음기록을 작성한 사람의 권리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의 구술사 프로젝트는 현장에서의 구술을 녹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구술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도 녹음기록과 함께

구술사 원본기록에 해당된다. 영상기록의 제작과정에는 구술자와 면담자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를 기록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상기록의 저작권은 또 누구에게 발생하는 것인가? 구술사 인터뷰의 과정에서 생산된 영상자료의 저작권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영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영상저작물은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둘째, 영상저작물은 본질적으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만 한다(오승종, 2007).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과정은 배우와 촬영자뿐만 아니라 음악, 조명, 무대, 의상, 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 모두에게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권리자로부터 이용에 관한 허락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런 까닭에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을 두어, 계약상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제작된 영상기록물은 영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인가? 만일 영상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구술자와 면담자는 단순한 출연진에 지나지 않고, 영상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단순한 촬영자에 불과하고, 영상물 제작을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한 구술사 연구기관이나 구술사 아카이브가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다.

구술 인터뷰 현장을 기록한 영상자료의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상자료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상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연속된 영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뜻한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연속된 영상이 수록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 자체가 창작물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창작성은 말과 글의 창작성이라기보다는 영상 자체의 창작성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술현장의 영상기록이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으려면 영상 자체의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술현장 영상기록은 구술자와 면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을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면담행위를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하여, 비디오나 컴퓨터 등의 장치로 재생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로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영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제작된 영상 자체가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영상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특한 카메라 앵글과 구도의 선택, 몽타주 또는 커트 등의 기법, 필름 편집 따위의 지적인 활동이 수행되고, 이러한 지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 영상 자체의 창작성이 존재해야만 한다(오승종, 2007). 이런 까닭에 구술채록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록한 영상물을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로 보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영상자료들은 구술자와 면담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기계적으로 복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촬영자는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의 대화를 카메라로 충실하게 복제하고 있을 뿐이다. 영상으로서의 창작성은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는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어문저작물(대화)을 영상의 형태로 복제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영상자료를 어문저작물이라고 본다면,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단순히 어문저작물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창작적인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구술채록 과정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구성하거나, 고도의 영상 편집 작업을 거쳐서 구술행위 자체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경우라면 영상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사후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구술자료와는 구별되는 2차적 저작물을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자료가 어문저작물인지 영상저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작권의 귀속과 보호기간 등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성격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저작권법 제100조). 따라서 계약상의 특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영상제작을 기획하고 주도한 발주기관이 저작권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에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연인으로서 직접 구술채록에 가담한 구술자와 면담자에게 원천적인 저작권이 발생하고, 발주기관은 그들로부터 저작물 사용허락이나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저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다. 한편 영상저작물은 저작물을 공표한 후 70년 또는 창작한 후 50년 이내에 공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저작권법 제42조). 반면에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더해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권리가 보호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술사의 원본기록에 해당하는 녹음자료나 녹화자료는 면담자의 질문과 구술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된 어문저작물에 해당이 된다. 어문저작물은 말과 글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녹음이나 녹화물을 제작한 사람은 어문저작물로서 구술자료의 말과 글이 표현되는 데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없고, 말과 글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일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 어문저작물은 저작인격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보장된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인 구술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나) 녹취문의 저작물로서의 성격과 저작권

녹취문은 그 형태 자체가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문저작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녹취문은 구술행위에서 비롯된 말을 문자로 변환한 것이고,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저작물로서의 성격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녹취문의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저작물의 저작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녹취문을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 주고받은 말을 단순히 문자로 복제한 것으로 바라보면, 녹취문의 저작자는 구술자와 면담자가 된다. 녹취문 작성자는 말을 문자로 변환하여 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녹취문을 구술행위와는 구별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본다면, 녹취문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어 녹취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녹취문은 채록 당시에 진행된 구술자와 면담자의 말을 문자라는 또 다른 표현 형식과 매체로 변형한 것이다. 즉, 구술 인터뷰에서 얻게 된 청각적 객체를 시각적인 형상으로 변환한 것이다. 그 변환의 과정에서는 다소간의 누락이나 변형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말을 글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녹취문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대화를 문자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말을 문자로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를 부가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글로 변형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석과 해석을 첨가해서 구술자료 자체를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까닭에 녹취문의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채록 당시에 이루어진 말을 단순히 문자로 옮기는 경우와 각주와 해석을 부가하는 경우를 각각 구별해서 접근해야만 한다.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녹취문으로 옮기는 행위는 구술자료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녹취문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표현 형식을 소리에서 글자로 변형하여 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녹취문은 구술자

료를 문자라는 매체로 변형한 또 다른 형식의 복제물이다. 원본에 해당하는 구술자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술자와 면담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권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구자의 주석과 해석이 함께 포함된 녹취문을 작성하는 행위는 구술자료와는 구별이 되는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녹취문은 구술 인터뷰 현장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첨가된 주석과 해석은 구술현장에서의 대화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석이나 해석은 구술현장에서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구술현장에서의 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을 지닌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저작물은 녹취문 작성자가 완전히 독창적인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에서의 대화를 근간으로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녹취문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녹취문을 작성하는 데 직접 참여한 사람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녹취문의 저작자는 녹취문의 창작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당사자가 된다. 다만 창작적인 기여는 주석과 해석을 통해서 구술채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술현장에서의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석과 독창적인 해석을 수행한 연구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이용은 원저작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자로서 구술자와 면담자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녹취문 작성 과정에서 주석이나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은 대체로 면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술자료의 저작권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권한의 연원을 구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를 녹취문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구술 언어 자체의 생동감과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한 윤문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남신동(2003)은 “구술자료가 주는 메시지는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건에 대해 구술자가 갖고 있는 감정의 덩어리와 총체적인 의미 해석의 내용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술자료를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윤문하는 일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가치를 잃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윤문 작업을 통해서 채록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구술자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임은 물론 자칫하면 구술의 내용을 왜곡하여 실제 구술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녹취문을 만들어 내어서 구술자의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지식인 구술자의 경우에는 구술내용을 그대로 풀어낸 녹취문을 보고,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언술들이 생경하게 돌출되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고 해당 부문에 대한 윤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술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윤문 처리를 하는 것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의 임의적인 변경을 금지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술내용 그대로를 문자로 풀어낸 녹취문을 구술자가 원하는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구술자료가 가지는 특징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술자를 설득해서 구술언어 그대로를 문자화하도록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윤문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구술 당시의 생생함은 사라지고, 구술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맥락들이 소거될 위험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구술자의 의사에 반해서 녹취문을 편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에는 구술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술자가 원하는 표현으로 녹취문을 수정하는 편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녹취문은 구술채록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문자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인터뷰에서 진행된 대화의 내용을 눈에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표현들이 구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제되지 않은 채

표현된 말을 구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대로 문자화하는 것은,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술자가 완강하게 윤문 처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뜻을 존중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난 후에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녹취문에 윤문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작업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구술자료가 가지는 생생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윤문 처리 된 자료와는 별도로 구술채록의 과정을 그대로 문자화한 녹취문을 아카이브의 보존용으로 작성할 필요는 여전히 상존한다. 이 경우에 작성된 녹취문은 저작권이 소멸되는 시점까지는 철저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치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구술자의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다) 구술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저작물의 작성과 저작권

구술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입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자 또는 제3의 연구자가 연구논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구술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다큐멘터리를 제작하거나 또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구술사 인터뷰의 원본 기록과는 그 제작의 목적과 의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구술자나 면담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창작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물은 원래의 저작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다른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산된 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구술자료를 활용해서 생산된 저작물의 유형을 구분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구술자료를 활용해서 생산된 저작물은 구술자료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원자료인 구술자료의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가공이나 변형을 거쳐서 구술자료와는 다소 구별되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좀 더 가독성이 높은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문을 하거나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고 약간의 편집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구술 인터뷰 자체를 바탕으로 하지만, 윤문이나 편집을 통해서 본래의 구술자료와는 구별되는 형식의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다. 이 결과물이 구술자료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이 누구의 것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까닭에 저작물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표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새롭게 생성된 저작물은 구술자료를 원저작물로 해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된다. 윤문이나 편집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낸 당사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되면서 또 다른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구술자료라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자로서 구술자와 면담자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렇게 윤문이나 편집을 통해서 새롭게 작성된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와 면담자뿐만 아니라 윤문 작성자에게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둘째, 구술자료를 활용하지만 구술자와 면담자가 주고받는 이야기의 흐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다. 대개 구술자료는 논지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재료로 활용되고, 적절한 부분을 인용하는 정도로 활용된다.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논문이나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로 생산된 저작물에는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내용과 표현을 포함하게 된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사상이나 감정은 저작물의 주된 재료이지만, 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사상이나 감정은 새로운 저작물 작성자의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논문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구술자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을 구술자료에 대한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술자료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구술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연구자나 영상제작자의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일부 포함시킨 경우라면, 구술자료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술자료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면, 이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와 면담자 그리고 새로운 저작물 작성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하다. 반면에 구술자료는 간간히 인용이 되는 정도로 사용이 되고,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표현은 구술자료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면, 이 경우는 구술자료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구술자료와는 독립된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된 저작물이라 함은 구술자와 면담자가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어떤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고, 또 어떤 경우가 독립저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구술자료의 공개와 활용을 위한 계약의 작성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된 구술자료는 온라인 서비스, 출판, 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연구논문의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물의 공개와 활용에 앞서서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적절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권리 처리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규율이 된다.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포함)를 구술사 연구기관이 인수할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시간을 특정해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 자체를 구술사 연구기관이 인수하게 되면, 구술사 연구기관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전체를 발주기관이 인수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출판권이나 배타적 발행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특정한 범위나 방법에 국한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구술자와 면담자는 여전히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약정에 명시

되지 않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술자와 면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아카이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Richie(2003)는 인터뷰 직후나 아무리 늦어도 녹취문이 작성되고 편집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술 인터뷰의 내용 속에 포함된 구술자의 민감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타인의 개인정보와 평판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기 이전에, 구술자와 면담자에게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록물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공개와 이용에 관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물을 공개하고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술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구술채록이 완료되고 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연후에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 사용허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록물공개허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술자가 기록물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공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구술사 연구기관은 해당 기록물을 밀봉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로 보존하거나, 비공개가 요청된 부분을 삭제한 후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기록물공개허가서는 구술자와 면담자, 구술사연구기관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구술자료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어서 공개와 활용의 범위를 결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또한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구술자를 보호하는 기제로도 역할하게 되고,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구술사 연구기관이나 구술 아카이브의 대비책이기도 하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Neuenschwander(2009)는 “가장 좋은 기록물공개허가서는 법률 전문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담아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기록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될

것인가에 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기록물 공개허가서는 비전문가들에게 손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고 주장한다. 기록물공개허가서는 발주기관의 정책이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 ○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된 기록물의 정체(주제/면담일시, 날짜, 장소)
- ○ 공개 여부와 범위
- ○ 구술자의 제한(안)사항
- ○ 구술자의 인적사항과 인증(친필서명이나 도장)
- ○ 면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친필서명이나 도장)

구술자가 기록물의 공표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열람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도서관에 기증한 경우에는 공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1조 제4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의 공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기증하는 시점에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특별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저작물의 공표에 관한 것에 국한이 된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 등에 의해서 특정한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

니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수집한 구술자료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구술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공개와 활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구술 내용 가운데 구술자 혹은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를 구술자와 면담자가 함께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계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4.3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가능성을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를 가리킨다. 성명, 초상,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이 직접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는 물론이고, 인터넷 이용에서 특정인이 보이는 행동 태양(態樣)처럼 거기에 다른 정보를 덧붙이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들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박준석, 2013).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은 정보가 담겨 있는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의 정보 그 자체가 권리의 객체라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도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단편적인 정보 하나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결합가능성이란 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던 것들을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뉴질랜드,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행정안전부, 2011)만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나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된다(행정안전부, 2011).

개인정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성격, 내용, 형식 등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한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이창범, 2012). 어떤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출신학교, 연령, 신장, 체중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인물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같은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사실로서 증명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특정한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처리 매체에도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문자・부호・그림・숫자・사진・그래픽・이미지・음성 ・음향・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처리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바이너리 코드(binary code)를 이용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와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자기(紫氣)정보는 물론이고, 손으로 기록된 수기(手記) 정보와 종이에 인쇄된 활자 정보도 포함된다(이창범, 2012). <표 26>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이필재, 2014).

<표 26> 개인정보의 예시

구분		내용
일반 정보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IP주소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선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 도서 및 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료품 등 물품 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이나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사회적 정보	법적정보	•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정보	•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이나 전화메세지
	위치정보	•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 CCTV를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정리하자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징,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다.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나)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인정보법 제2조 제3호).” 즉, 「개인정보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행정안전부, 2011)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권건보, 20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권을 토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차단청구권, 처리정지・파기청구권 등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권건보, 2014).

정보주체의 구체적인 권리는 「개인정보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제1호).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는 정보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개인정보법 제20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 둘째, 동의와 동의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이다(제2호). 이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의의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이창범, 2012). 셋째,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보주체에게 보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적인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 요청권이다.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것인 경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정정이나 삭제 더 나아가서 파기까지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자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가 서비스 되고 있을 때, 그 정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박준석, 2013).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개인정보법 제39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제도(개인정보법 제6장), 단체소송제도(개인정보법 제7장) 등을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그 권리는 제한이 된다.

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1).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 제휴회사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소스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다(이창범, 2012).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에 대한 평판이나 에피소드 등을 수집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마련된 규정,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목적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만 그 구체적인 요건[10]을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 '동의'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동의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에게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내용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때, 수집·이용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포괄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수집·이용 목적을 변질시키거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이창범, 2012).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행정안전부, 2011).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는 정보가 수집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의 표시는 기명날인, 구두 승락,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의란 클릭, 전자우편 발송 등 방법상의 제약은 없다. 동의 획득의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17조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구체적

10)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률상의 공공기관이나 계약상의 요건 등을 다루고 있으나,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제1호의 내용만 다루었음.

인 방법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향후 입증을 위해서는 동의의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다양한 항목들 가운데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민감정보에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해설서에 따르면,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을 말한다.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이다(행정안전부, 2011).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해서 민감정보 각각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과 이용 등의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제23조).

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

개인정보의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의 보호와 같은 또 다른 헌법적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헌법상의 이런 권리들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행정안전부, 2011). 이런 까닭에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다른 헌법적인 가치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목적과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제58조는 그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통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1호)이다. 「통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각종 의사결정을 돕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인정이 된다. 둘째,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항 제2호)이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는 그 특성상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공중위생 등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3호)이다. 각종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의 추적 등의 활동과 천재지변·긴급재난 등으로부터 이재민을 구조·구호하기 위한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정보주체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활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이 된다. 넷째,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에 대한 예외이다.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제1항 제4호)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언론기관의 인물DB사업,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정당의 여성정치인 육성사업은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의 고유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대로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행정안전부, 2011). 이러한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개인정보법」 제3장부터 제7장[11]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단체에 대

11)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한 적용 제외(제3항)이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업무적인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친목단체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이창범, 2012).

□ 구술자료와 개인정보

가) 구술자료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자료

구술자료는 어떤 인물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는 과정에서 기록으로 제작된 것이다. 그 안에는 구술자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루 담겨 있기 마련이다. 출생과 성장에 얽힌 이야기,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에 관한 이야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린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담겨 있다. 구술자료는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맥락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구술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삶의 숨결과 궤적을 오롯이 품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사회 구성원들과 쉽사리 공유할 수 있고, 또 그럴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무척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서 구술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이야기,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이나 연애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 곤란한 지극히 내밀한 이야기가 포함되기도 한다. 어찌보면 구술자료는 연구나 수집의 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인생살이의 다양한 국면을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나) 구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육성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석, 삶의 여러 국면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익명성 속에 정체를 감춘 누군가가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기획 의도에 따라서 엄선된 실명의 구술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석을 스스로의 관점에서,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구술사학자 Shopes(2007)는 익명성은 구술사의 근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사료로서, 증거로서 구술자료의 신뢰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술자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술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술자료에는 이름, 출생과 성장, 교육적인 배경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생생한 육성과 얼굴과 같은 신체적인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구술자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대한 정보, 신념이나 사상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포함된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면, 구술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술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법」이 정의하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에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구술자료가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의 세세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구술을 통해서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구술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같은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마다 구술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구술자료가 수집되어야 적법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요구 사항들은 구술자료의 생산과정과 그 내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구술자료의 생산과 활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대화를 바탕으로 수집·제작되는 것으로, 구술자와 면담자의 라포 형성의 정도나 채록 당시의 분위기·흐름에 따라서 생산되는 자료의 폭과 깊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은 사전에 약속된 특정한 항목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들을 수집하는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형성해 나가는 매우 탄력적인 공동 창작의 과정이다. 구술자료의 수집 과정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개인의 삶에 남긴 내면적인 흔적을 탐사하는 과정이고, 구술자와 면담자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해결점을 발견해나가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구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법」을 준수하면서 구술자료를 수집할 방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더구나 구술 내용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각각의 사항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 구술자료에 포함된 타인에 대한 이야기

한편 구술자료에는 구술자 본인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술자가 살아오면서 함께 만나고, 생활했던 많은 제3자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자에 관한 이야기는 친구와의 사적인 만남에서부터 공적인 활동에서 만났던 관련자의 행적이나 평판, 평가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 구술자료 가운데에는 남겨진 자료가 거의 없는 유명인사의 행적이 포함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 유명인사에 대한 자료 수집 자체를 목적으로 주변인물을 대상으로 구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구술의 과정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관한 이야기는 구술자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친

소관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헌자료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정보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구술자료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구술자료는 대개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이 언급되는 부분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색인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제3자를 손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는 부분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구술자료 처리 현황을 살펴볼 때, 제3자에 대한 언급까지 「개인정보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제3자에 관한 언급은 「개인정보법」이 아니더라도,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법률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공개나 온라인 서비스에 앞서서 해당 인명을 익명 처리하는 등의 부수적인 조치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국립중앙도서관의 종합관리체계 방안

3.1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기록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수많은 창(窓)이다. 인간의 활동을 담은 기록은 기억의 조각을 모아 지나간 시간을 그려보게 하며 과거를 재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중에서도 구술기록은 한 사람의 생애사적 경험이 구술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즉, 구술자의 생애사적 기억을 구술을 통해 그 시대와 만나는 것이다. 특히 공공 기록만 가지고 우리 시대를 복원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민간기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구술자료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한 구술자료들은 우리 시대의 주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 대표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도서관의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보존을 위해 독립된 센터나 부서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직까지 구술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이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깨닫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지식정보자원 보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하며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컬렉션 구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민간기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해외 대표도서관들이 구술사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구술사 컬렉션이 없는 것은 한국 구술사의 발전 과정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과거사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사회적, 정치적 운동으로 구술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이후 학계에서 문헌기록의 부재로 규명될 수 없었던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구술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관 구술채록이 시작되며 다양한 기관들이 특정 주제나 사건 중심으로 구술채록을 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의 피해자, 희생자 중심의 구술채록이 되다 보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기록관은 서울과 경남만 있으며 국가기록원도 주로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민간기록, 그 중에서도 평범한 한국인들의 구술 중심으로 구술사 컬렉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들이 출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기록하고 싶은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서 몇몇 공공도서관, 문화원, 지자체에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지역 이야기들을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수집된 구술자료들이 제대로 관리 및 보존되지 못하고 출판물만 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민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구술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지역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는 지역민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역민들이 기억의 공동체 및 기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들이 구술자료를 확충하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문화유산으로서 구술기록의 전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대표도서관들은 도서관이 기록관과 박물관까지 아우르는 역할 확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도 앞으로 다양한 컬렉션 구성을 통해 모든 지식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여 전승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들 중에는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주제나 사건, 경험, 인물들에 대한 구술사 인터뷰를 통한 구술자료도 포함된다. 기존의 구술채록기관들이 과거 중심적인 진상규명의 구술채록을 해왔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비추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술채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구술사 컬렉션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국가 지식문화유산이면서 국가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후대에 전승되어 늘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발전 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구술자료 수집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을 세우고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서관만이라도 구술자료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기관이 구술자료를 수집 및 관리 보존하고 있으나 대표성을 띠는 기관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구술채록의 수집, 정리, 기술 등의 표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 관련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술자료에 관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차별성(Differentiation)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차별성 없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와 같은 구술자료 관리 조직 기구를 구성하고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Korean Memory and Their Voices: KMV)' 컬렉션과 같은 독보적인 컬렉션을 구축하고 구술자료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기관도 시도하지 않았던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술자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타 기관과의 분명한 차

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발전 방향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표성(representation)
- 구술채록의 표준화 : 구술자료 수집 관리 매뉴얼, 정리·기술 지침 등 - 구술사 관련 교육 과정 개설, 교육 지침 제작 및 배포 -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
○ 차별성(differentiation)
- 국가적 차원의 구술자료 관리 조직 기구 구성 -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Korean Memory & Voices: KMV)’ 컬렉션 구축 - 구술자료 종합서비스 수행

3.3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발전 방향에 맞추어 컬렉션을 구축하려면 현재의 상황 진단과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세 가지 발전 방향과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3.3.1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포괄성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가) 상황진단

• 도서관법

「도서관법」 제20조는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납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구술자료는 도서나 음반과 같이 다수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발행한 것이 아닌 유일본이면서 미발행 간행물로 납본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는 납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제1호의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술자료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해외 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의 수많은 구술자와 면담자 등에게 일일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타 기관에 대한 구술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4호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만을 명시하고 있어 구술자료 생산과 수집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 상황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구술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술자료의 온라인서비스를 위해서는 구술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민감정보(사상, 신념 등)에 관해서는 별도 서식의 수집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구술자료에서 언급되는 제3자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구성상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술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익명 처리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구술자료는 일반자료, 시청각자료와 온라인자료의 일종으로, '도서관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국내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도서관자료는 납본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술자료는 납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자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서개발기본지침 중 수집방법별 지침의 '제작' 이 '국립중앙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를 제작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술자료의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술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구술자료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정책이 단계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나) 추진방향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구술자료 수집과 보존'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1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제19조(업무) 제1항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구술자료 수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 업무)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 있어서는 수집방법별 세부지침 중 '납본 제외 비도서의 기준',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의 기준' 항목에 구술자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기본지침의 수집방법별 지침 중 제작(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 1. 수집방법별 지침: 1.6 제작)에 구술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의 일반자료 범위(제2장 장서개발 기본지침- 2. 국내자료 개발지침: 2.2 일반자료)에 <2.8 구술자료> 항목을 추가 기술함으로써 구술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과 접근 권한 및 정보 이용 조건(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의 특성상 구술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술자료의 수집,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가) 상황진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개발지침, 저작권정책 외 구술자료 수집 및 서

비스에 관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구술자료가 갖는 특성을 반영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관리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방향

•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정책 개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할 구술자료의 개념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자체 수집을 위한 주제 발굴 및 범위 설정, 수집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 개발이다. 구술자료 서비스 및 관리·보존 단계 등 구술기록 관리에 대한 전(全) 단계를 고려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안에는 수집 방법별 세부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특히 구술자료의 제작, 기증, 기탁, 유증 등 구술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프로세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구술자료 수집·관리·보존·활용 등에 관한 동의서 서식도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집주체(구술자, 면담자) 및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공개 활용 동의서, 민감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구술자료 관리·보존 동의서와 같은 서식들이 각각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와 연계하여 구술자료 관리·보존을 위한 프로세스까지 수집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서비스 정책 마련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정책과 함께 서비스 정책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콘텐츠, 연구지원서비스, 매체변환서비스, 연계서비스(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용과 관련해서는 구술자료(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 접근 권한, 이용 기준, 열람 방법 등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상황진단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구술자료가 전무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구술자료 수집기관이 협력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총체적인 파악이 힘들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구술자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조차 제공할 수가 없다.

나) 추진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계획하면서 한국구술사네트워크[12]에 가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서는 연1회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2020년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샵을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구술사학회와 공동 주관하여 참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구술자료를 도서관의 주요 컬렉션으로 키워나갈 것임을 공표하며, 유관기관과의 개별 MOU를 체결함으로써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협력을 유관기관과 함께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가칭)' 를 구성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구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의 고충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민간 및 소규모 공공기관이 수행해서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보존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술사 관련 워크숍 및 학술심포지엄 등을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12) 국내 구술채록기관 및 구술채록수행단체와 한국구술사학회의 협의체로,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주요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있음.

□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가) 상황진단

현재 전국 도서관이 공유하고 있는 KOLAS와 KORMARC의 모듈로는 구술기록에 대한 기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도서관의 구술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나) 추진방향

전국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구술자료 관리를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의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추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스템에 연계하여 연동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전국 도서관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전국 도서관의 구술자료 종합목록 구성을 고려한 모듈로 설계되어야 한다.

3.3.2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대표성

□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표준화

가) 상황진단

현재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표준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모든 구술채록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정리 및 기술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구술자료의 공유나 활용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표준화를 할 의향이 없는 상황이다.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의 표준화는 구술자료의 조직화와 검색, 활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선도적으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나) 추진방향

앞으로 전국적으로 구술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구술사업 결과물에라도 적용할 수 있는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구술자료의 정리 및 기술을 적절히 하고 원활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술 자료의 분류 및 시소러스 구축, 구술자료 기술(description) 및 표준 메타데이터(속성)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전국 도서관에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일반, 전문) 개설과 교육지침 제작 및 배포

가) 상황진단

현재 구술 관련 교육과정이 대학교나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도서관에서 구술채록을 시작하는데 힘든 상황이다.

나) 추진방향

우선 구술채록 단기 교육과정을 사서 대상으로 개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교재를 기반으로 구술사에 관해 기초적인 내용부터 구술자료 기획과 수집, 관리와 활용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대한 교육지침서를 제작하여 우선 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구술채록을 수행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도서관에 배포하여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의식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적 인프라 마련

가) 상황진단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구술자료 관리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황인데, 이는 구술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나) 추진방향

무엇보다도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의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또는 신설이 필수적이다. 구술자료 관련하여 확충해야 할 전문인력으로는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 사서, 보존전문가, 전산 등 구술자료 수집단계부터 정리, 기술, 보존, 서비스 등 자료 관리 및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구술자료 관리 관련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 국가대표도서관 구술사 컬렉션 사례조사, 구술 면담자, 시민채록단으로 구성된 구술채록전문가 집단 양성, 도서관의 구술자료를 갖고 진행되는 정기 포럼이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

가) 상황진단

현재 전국적으로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시설이 미비한 편이다. 특히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 결과물은 개별적으로 관리 및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은 구술자료의 결과물에 있어서도 마이그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나) 추진방향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내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시설을 확충하여 구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연구자들의 기증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 수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술자료 제작실을 마련하여 구술자들이 언제라도 구술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의 열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온도와 습도가 매체별로 제공되는 충분한 수장고 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구술자료 장기보존 장비, 보존용품 및 기타 시설을 확충하는 구술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술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구술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필수적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술자료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접근은 물론 구술자료 등록, 관리, 서비스 등 각 단계별 처리자 접근 권한 설정, 구술자료 생산기관의 구술자료 링크나 검색 기능 탑재,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현까지 가능해야 할 것이다.

3.3.3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차별성

□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 설치

가) 상황진단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구술자료 수집을 통합관리·보존·서비스하기 위한 조직이 부재하여 그 결과 국내 구술자료의 총체적 파악이 불가하다.

나) 추진방향

우선 국립중앙도서관 내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 설치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세워야 한다.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는 한국의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한국의 구술자료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사례, 조언, 표준을 제공하는 국가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구술기록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국내 구술자료 수집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가칭)’,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주요 구술 관련 사안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 상황진단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구술자료에 관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중복적인 구술채록 사업이 진행되고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나) 추진방향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내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구술자료를 타 기관과의 중복수집을 피하여 의미있는 주제나 사건을 중심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 생산기관 및 단체들의 종합목록인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구술자료 수집기관들의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 제작 발굴 및 제안 :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Korean Memory & Voices, KMV)’ 구술 컬렉션 구축

가) 상황진단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 및 제작한 구술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구술사업에 대해서도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물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추진방향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진행해온 대표적인 구술 컬렉션을 참고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운 관점에서 구술자료를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구술사업을 시도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을 지원함으로써 구술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채록 자체사업 제작 및 수집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Korean Memory & Their Voices: KMV)' 구술 컬렉션(가칭)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구술자료의 제작·수집은 충분한 기획과 설계,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 구술자료는 구술사라는 연구방법을 활용해서, 특정한 주제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역사적 자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그래서 구술자료의 제작을 위해 진행되는 면담은 일반적으로 인터뷰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구술대상에 포함되고, 구술 인터뷰 작업을 장기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인터뷰와 차이가 있다. 또한 구술사에서는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구술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맥락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반 인터뷰와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구술의 핵심은 인터뷰이며,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라포의 형성이다. 현지조사를 동반하는 구술사 연구에서는 자신의 연구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바로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라포이다. 라포는 감정이입, 상호신뢰, 이해, 공감, 우정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인간관계의 한 측면인 공감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인터뷰는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구술자가 자신의 감정까지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자와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면담자는 구술자와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구술자가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자연스럽게 서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포괄성, 대표성, 차별성에 근거한 구술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할 구술자료를 제작·수집해야 하며, 타 기관에서 제작·수집한 자료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의성을 고려한 주제를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타 기관에서 특정 사건이나 진상규명, 엘리트 집단에 대한 구술자료를 제작·수집하였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평범한 사람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특별한 주제

의 컬렉션을 제작·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예로, '나의 고향' 구술 컬렉션(An Oral History of My Hometown)을 제안한다. 이 컬렉션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향에 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고향은 지연(地緣)이자 한국인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향을 기억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잊혀진 고향, 사라진 고향, 새로운 고향, 떠나는 고향, 찾고 싶은 고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마음의 고향 등 각각의 고향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 정든 곳, 나의 근원으로서 공간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기억 속에 자리한 시간일 수도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생물학적 탄생이라면 고향은 지리학적 탄생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제식민지 지배를 겪은 조선인들은 고향과 조국을 떠나 일본, 만주, 러시아등 해외에 강제 이주하게 되는 이산을 경험하였다. 일제식민지배를 벗어나 해방이 되었어도 분단으로 월남인들이 생기고 한국전쟁은 많은 피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하게 하였다. 전후의 한국인은 생존을 위해 복구와 건설에 몰두하였고,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촌향도를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인 도시에 정착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생하였거나 성장했던 장소인 고향의 개념은 점점 약화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세대가 변천하면서 고향은 어떻게 남겨지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인의 문화적 개념인 고향에 대한 구술채록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자리한 다양한 고향의 개념과 이미지, 그리고 고향 이야기를 찾아내어 잃어버린 한국인의 고향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향이 시간과 공간, 인간의 복합개념이라고 할 때, 공간은 고향집, 고향마을. 고향 산천이 될 수 있고, 인간의 범주로 구분하면 고향 사람, 조상, 그리고 객지에 나와 있는 동향(同鄕) 사람들이 된다. 먼저 고향집으로는 농촌, 산촌, 어촌, 강촌, 도시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남부, 중부, 북부, 내륙과 해안이 있으며, 사는 형편에 따라 부촌과 빈촌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고향마을은

고향집이 확대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향마을은 이웃과 벗, 일가친척, 골목친구, 동기동창, 선후배, 불알친구 등과 같은 특수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형태를 양산한다. 따라서 고향이라는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니는 특징 및 의미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향 컬렉션을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하여 지리적 사료로 후대에 전할 필요가 있다. 즉,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내 고향의 가치를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술자료로 남겨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책' 구술 컬렉션(An Oral History of Books in My Life)을 들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물건 중 하나가 '책'이며, 도서관을 떠올리면 책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책은 인간의 창의성이 내재된 작품으로 우리의 일상에 위로와 기쁨을, 때로는 지식과 설렘을 가져다준다. 아동기에는 그림책과 동화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며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자아를 발견하며, 배움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책을 통해 공동의 문화공간을 구성하기도 한다.

문자가 출현하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책은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의 땀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책을 쓰는 작가, 책의 그림을 그리는 삽화가, 책을 디자인하는 북 디자이너, 책을 만드는 출판인과 편집인, 인쇄소 사장, 독립 서점 상인, 헌책방 주인, 독자, 도서관의 사서, 책과 정보를 다루는 문헌정보학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공간에서 책과 함께 살아간다. 그들에게 책과 더불어 지낸 지난 세월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나에게 책이란?' 소재를 갖고 풀어 구술 컬렉션을 만들어 본다면, 책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으며 책과 관련된 전문직의 변천을 기록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도서관학, 서지학, 정보학의 토대를 만든 초창기 학자들의 구술채록을 수행한다면, 해당 분야의 궤적을 기록화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매체의 형태와 상관없이 지식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보존하는 모든 도구가 책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종이책이 점점 줄어들고 전자책과 웹북을 논하

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책과 현재의 책, 미래의 책, 형태에 따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의 변화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양상을 재현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책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지내온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국인의 서재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으로 제작·수집한다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과학과 기술(An Oral History of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구술 컬렉션으로, 한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20세기 과학자와 공학도를 분야별로 찾아서 그들의 고난과 역경, 미래의 삶을 조명해보고 21세기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동력을 찾아보는 것이다.

과학기술사료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사료를 발굴하여 수집·보존함으로써 각종 전시, 연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아카이브를 제도화하여 방대한 과학기술사료를 체계적으로 제작·수집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이와 관련된 아카이빙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이끈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현대 시기의 과학기술사료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인물들이 생존해있을 때 그들의 구술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과학과 기술' 구술 컬렉션은 한국의 과학과 기술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의 근대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 포괄하는 과학자와 공학자의 구술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00명의 근현대를 이끈 한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선정하여 개개인의 삶은 물론 지난 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국가 구술 컬렉션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자나 공학자들의 일과 삶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인터뷰한 자료는 많지 않다. 단발적으로 언론이나 방송계에서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으나 이를 구술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과 기술' 구술 컬렉션은 과학기술계의 모든 분야, 현재와 미래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구술자들의 기억을 기록하여 전승하는 것이다. 구술자는 유명한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우주공학자, 기후학자, 컴퓨터공학자부터 기술적인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들까지 폭넓게 구성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상 수상자로부터 실험실 보조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과학자, 디자인 공학자, 해양학자, 환경학자 등 서로 다른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인종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구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지난 세기의 가장 놀라운 과학적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 과학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제작·수집된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동기, 도전, 좌절, 성공과 함께 그들의 동료, 가족, 어린 시절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과학과 기술' 구술 컬렉션은 다양한 소주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과학 분야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들부터 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까지 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학문의 세계와 취업, 사업과 개인적인 삶 등 과학과 인생의 연관된 내용을 제작·수집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속의 한국 전자 산업'에서는 한국의 가전과 컴퓨터 산업을 이끈 대기업에 종사한 공학자들을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시기별로 발굴하여 면담을 통해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기억을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학적인 측면에서 국립공원의 성립과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것을 주제로, 관련 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삶 속에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국립공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강교량,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통일벼, 자동차산업, 포항제철, 고속철도, 줄기세포 등 소주제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컬렉션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 과학기술 분야의 학회와 협

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과학기술구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질의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과학기술분야의 사료로서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공공도서관 구술채록사업 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채록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기록화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술자료 수집 관련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구술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거나 제공하여 전국 도서관 대상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컨설팅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술채록사업 결과물로 생성되고 수집된 구술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해당 도서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구술자료 종합서비스 수행

가) 상황진단

현재 전국적으로 구술자료가 다양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구술자료 정보 제공이나 연구지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다.

나) 추진방향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구술자료 서비스 이용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생산된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콘텐츠 및 전시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는 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4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 로드맵

3.4.1 연도별 종합관리 로드맵

<표 28>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한 5년에 걸친 로드맵이다. 2020년부터 2022년은 기반 조성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행기로 설정하고 조직 및 제도 정비, 자체수행, 지원 및 협력체계로 나누어 주요과업과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행할 조직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안에서 자료수집과와 디지털기획과, 자료보존센터를 고려할 수 있다. 자료수집과는 담당업무가 장서개발계획에 관한 일, 도서관자료 기증 수집에 관한 일, 도서관자료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를 도서관의 장서로 개발하여 등록하고, 기증·기탁까지 검토한다고 간주할 때,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부서로 자료수집과가 적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구축 및 협력과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디지털기획과는 담당 업무가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온라인자료의 공유활동 협력과 지원, 표준화 및 기술보급, 소장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관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구술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구술자료를 온라인자료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부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장서로서 구술자료를 처음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오프라인의 실물자료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료보존센터는 담당업무가 도서관 자료의 과학적 보존과 복원, 보존기술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있어서 구술자료의 보존과 복원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구술자료의 수집부터 정리, 기술, 관리, 보존, 이용서비스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처음 수집하는 상황인 현재로서는 장서개발계획 안에 포함시켜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구술자료와 관련된 업무를 자료수집과에서 맡고 디지털기획과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3.4.2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의 구성

2025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는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아래, 수집팀과 정리팀, 보존팀, 협력팀, 서비스팀에 총 15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표 29> 참고). 센터의 수집팀은 기록연구사와 학예연구사 3명이 구술자료 수집을 기획하고 자체 제작 사업(발주), 운영 및 관리, 민간 생산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한다. 정리팀은 기록연구사, 사서, 전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4명의 인력이 구술자료의 정리와 기술, 색인 및 시소러스 관리, 구술자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공공도서관 리포지터리와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보존팀은 실물자료의 보존 및 복원과 디지털 자료의 백업 및 보존을 2명의 보존전문가가 담당한다. 협력사업팀은 3명의 사서가 공공도서관 지원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맡는다, 그리고 서비스팀은 2명의 사서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열람서비스를 운영하고 교육 및 전시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표 28>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의 연차별 종합관리 로드맵

과업 내용			기반 조성기			이행기	
구분	주요 과업	세부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Ⅰ. 조직 및 제도 정비	1. 법・제도 정비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개정	■				
	2.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개발	• 구술자료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 • 구술자료 자체수집을 위한 주제 발굴 및 범위 설정, 수집 원칙 확립 • 도서관 자료와 연계하여 구술자료 관리・보존 프로세스 설계 • 구술자료 서비스 정책 개발	■				
	3. 사업수행조직 신설 및 확대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 설치(2025년 예정) • 구술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	■	■	■	■
Ⅱ. 자체수행	1. 구술채록의 표준화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 개발	■				
	2. 구술채록 자체사업 운영	•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Korean Memory & Their Voices, KMV) 컬렉션(가칭)’ 제작 : 고향, 책, 과학과 기술을 테마로 구성	■	■	■	■	■
	3. 구술자료 기술 및 정리 방안 연구 수행	• 구술자료 표준 메타데이터, 분류 및 시소러스 구축 지침 개발		■			
	4.. 구술자료관리시스템 개발	• 표준화된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		
	5. 구술자료 보존・관리방안 수립	•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시설 확충 • 구술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 설계		■	■	■	■
Ⅲ. 지원 및	1.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국구술사네트워크 가입 및 관련 프로그램 적극 참여 (2020년 한국구술사네트워크 워크숍 등)	■	■	■	■	■

과업 내용			기반 조성기			이행기	
구분	주요 과업	세부내용	2020	2021	2022	2023	2024
협력체계	1.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개별 MOU 체결 등 협력 프로그램 운영·확대 •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가칭)’ 구성 및 운영	■	■	■	■	■
	2.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개설과 교육 지침 제작 및 배포	• 구술채록 단기 교육과정을 사서 대상으로 개설 • 구술자료 기획, 수집, 관리 및 활용 등 전(全) 과정에 대한 교육지침서 제작·배포 • 공공도서관 구술채록사례집 발간 및 배포	■	■	■	■	■
Ⅲ. 지원 및 협력체계	3. 공공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개발 및 공모	• 도서관의 마을기록화사업 지원 • 수집된 구술자료의 공동 보존 및 위탁관리 수행		■	■	■	■
	4. 소규모 공공기관 및 민간 수행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개발	• 자료 보존 및 관리대행을 위한 기탁 확대 추진 •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센터 운영 • 구술사 프로젝트 매뉴얼 제공·지원			■	■	■
	5. 구술자료 보존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전국 공공도서관 및 구술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동 리포지터리 시스템 확대 개발			■	■	■
	6. 구술자료 종합서비스 수행	• 구술자료 제작실, 열람실, 수장고 설치 • 이용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교육콘텐츠 및 전시 콘텐츠 개발			■	■	■
	7.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구술자료 생산기관 및 단체들의 종합목록인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구술자료 수집기관들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표 29> 2025년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 인력 구성(안)

역할	인원	담당업무
센터장	1명	ㅇ 센터 운영 총괄
수집 (기록연구사/학예연구사)	3명	ㅇ 수집기획 ㅇ 자체 제작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민간 생산 자료 수집(기증, 기탁)
정리 (기록연구사/사서/전산)	4명	ㅇ 구술자료 분류 및 정리/기술 ㅇ 구술자료 색인 및 시소러스 관리 ㅇ 구술자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ㅇ 공공도서관 리포지터리/ 한국구술사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보존 (자료보존전문가/전산)	2명	ㅇ 실물자료 보존 관리, 디지털자료 백업 및 보존
협력사업 (사서)	3명	ㅇ 공공도서관 지원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사서)	2명	ㅇ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운영 ㅇ 교육 및 전시 등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	15명	

제 4장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지식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정리 및 제공하고, 선대와 당대의 지식자산을 후대에 전승 및 보존하며,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지원 ·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회적 소통과 지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연구는 구술자료가 당대의 지식자산 중 후대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한 컬렉션으로 구축될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공동체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작금의 환경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까지 수집하지 않았던 구술자료 컬렉션의 수집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5개년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실행한다면, 구술자료가 대한민국의 귀중한 국가지식자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1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나타난 구술자료 수집의 필요성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19년 초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 부처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도서관법」 14조에 근거해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과 삶이 있는 도서관, 우리 삶에 더욱 밀착되어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4대 전략방향(목표)과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문·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시공간의 제약으로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도서관 이용자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보급하고, 도서관 및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소실 우려가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자료를 잘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공동체 자료 전산화(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공동체 속에서의 교류 협력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및 사서 재교육을 진행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 국제교류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도서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를

위해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코리안 메모리’ 프로젝트 추진과 디지털화 자료 이용 협약 도서관 확대 및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술자료 수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과제는 공동체 역량 축적으로, 그 아래 세 가지 추진과제인 지역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과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가 있다. 먼저 지역 분권형 도서관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재정립, 지역자료의 납본 및 보존체계 구축, 지역 도서관 인력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수집할 때,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나 보존, 인력 관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공동체 기억의 보존, 공유 확산은 국가 기억 및 지식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과 공동체 생활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의 근거와 타당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과제인 공동체 교류의 플랫폼 기능 강화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파악과 활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 납본을 강제하기 어려운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관이 아닌 곳에 방치되고 있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기로 지역의 쇠퇴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후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지역의 향토자료와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동체 삶의 기억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보존하는 체계를 갖추고 전국 도서관의 지역 구술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에 대한 관리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술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전문 인력이 있는 곳이 드물어서 아카이빙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료 관리가 취약하여 구술자료가 소실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방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며 구술채록 활동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술을 통해 지역 구성원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복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술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의 각 도서관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포용 국가의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4.2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의 의의

구술자료의 정의를 내리자면, 면담자와 구술자가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주제나 사건에 대해 서술하거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의미있는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 음성파일과 동영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생산된 음성파일, 동영상, 녹취록을 포함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일컫는다.

국내 대표적인 구술자료 수집기관에 있는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도서관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구술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기관은 주로 의정사나 정치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엘리트 구술채록이나 사건 중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외주 용역을 통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나 마을 이야기, 향토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지역 내 4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들을 시청이나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단행본 발간 및 녹취문 작성을 하는 정도였고, 정부 산하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술자료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접근 가능한 자료는 다양하였지만, 기관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구술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구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구술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하더라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여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단행본 출간과 기획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도서관은 원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최근에 인식하면서 기존에 수집한 구술자료의 원자료는 제대로 수집하여 관리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는 보존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원자료에 대한 장기보존 역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은 자체 통합

관리시스템을 갖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장기보존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신경쓰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구술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나 구술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각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분류와 기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에 대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은 중복 구술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수집하는 구술자료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통합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타기관과 목록조차 공유할 계획이 없으며 기관이 수집한 구술자료는 기관의 자산임을 확고히 하였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구술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보존되는 것을 원하였다. 특히 표준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을 국가가 제공해준다면, 구술자료 통합관리에서 유용할 것이며 국내 구술자료 목록과 현황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2018년 한국구술사연구소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전국 각 기관, 공공단체 등의 구술자료 수집 및 출간 현황 기초 조사'에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구술자료의 원자료 보존이 기관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보존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구술자료에 대한 관리나 서비스 보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기관들의 중복수집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있는 기관은 구술자료 수집 과정의 어려움으로 구술채록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리 기술의 한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구술자료 수집 경험이 없는 기관은 전문인력의 부재나 시급성 부족, 예산 부족으로 구술자료의 수집이 불가하다고 보았고, 향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수집에 대한 법제화, 예산 확보, 실무자 교육 및 지침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구술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구술자료를 국가자원화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로, 구술자료 관리 지침서 제공,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제공, 구술자료 장기보존 및 보존소 제공,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구술 컬렉션 구축 등을 들

었다.

또한 한국구술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료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다양한 전공 분야의 이용자들이 주로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나 논문 작성, 단행본 출간 등의 목적으로 구술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녹취문이나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단행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에 기증한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40% 정도를 차지하여 향후 이들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특히 이들은 구술자료의 비공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의 부재, 타 연구자가 수집한 구술자료의 맥락 파악의 어려움, 구술자료 종합목록의 부재를 문제로 삼았다. 구술자료 통합관리에 적합한 수행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아카이브 시스템과 구술 자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술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새로운 구술 컬렉션의 구축, 구술관련 교육 프로그램, 장기보존처리와 보존소 제공 등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해외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미의회도서관과 영국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에서는 구술자료 컬렉션이 대표적인 컬렉션 중의 하나로 수집, 관리, 보존, 이용되고 있었다. 구술자료는 국가대표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국가지식유산으로 간주되어, 일찍부터 센터나 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집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미의회도서관의 경우, 관련 법령을 만들어 American Folklife Center(AFC)를 설립한 후 전 세계의 민속, 구술, 음악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보존하고 있었다. 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 Group 아래 디지털 컬렉션 아래 소속된 AFC에는 총 28명의 직원이 연구 부서, 처리 부서, 서비스 부서, 디지털 부서, 운영 부서로 나뉘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특징은 Veterans History Project나 Civil Rights History Project와 같이 유명한 구술 컬렉션의 경우,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영국국립도서관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술 컬렉션을 보유하여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National Life Stories(NLS)의 창립이었다. 독립된 신탁재단인 NLS가 자체 구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국국립도서관에 이를 제공하여 서비스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NLS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총 6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1명의 프로그램 총괄 아래 부총괄 2명,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조언자 그룹, 이사진, 면담자, 면담자, 아키비스트, 구술연구자, 협업 박사과정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영국은 주로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한 구술 컬렉션(건축가의 삶, 예술가의 삶, 작가의 삶, 과학자의 삶 등)이 많았다. 이러한 구술 컬렉션은 British Library Sound & Moving Image Catalog에서 상세검색이 가능하고, 이외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Sound Archive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주국립도서관의 경우, 1950년대 중반부터 Hazel de Berg가 구술기록을 수집함으로 구술 컬렉션의 기반을 갖추었고, John Meredith 민속 컬렉션을 구입할 정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면서 구술 컬렉션을 도서관의 대표 컬렉션으로 만들 수 있었다. 호주의 특징은 구술자료를 인구통계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각계각층의 호주인들로부터 구술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구술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 보존하는 팀이 12명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며, 자체 구술 인터뷰실, 세 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보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현재 모든 구술자료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상태로 Trove를 통해서 음성파일, 녹취록, 요약문, 주제에 관한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다. 호주국립도서관은 호주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호주의 사회사, 호주 원주민에 대한 민속학적인 컬렉션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수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범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3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법령 정비

구술자료는 다수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발행된 것이 아닌 유일본이며 미간행물이다. 그러므로 출판물이 아닌 구술자료를 납본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우며, 해외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도 구술자료는 납본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술자료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구술자료의 저작권을 가진 구술자와 면담자 등으로부터 일일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의 구술자료를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료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청각자료의 일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는 「도서관법」 제19조 제1호의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법 안에 구술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보존을 수행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포함하도록 「도서관법」 제1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4호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만 명시하고 있어 구술자료 수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구술자료 생산과 수집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에서 장서개발 중 제작의 범위는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자료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술자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서개발의 제작 범위에 구술자료 제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내 제작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구술자료 제공 시, 구술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민감정보에 관해서도 별도 서식으로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구술자료의 수집기관과 서비스기관이 다를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변동될 수 있어 구술자료 수집, 처리, 제공 등 구술기록의 수집, 관리·보존, 활용 단계에 따른 구술자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그러므로 구술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모든 단계에 필요한 별도 서식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술자료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법률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구술자료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4.4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방향성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집하는 구술자료는 포괄성과 대표성, 차별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포괄성은 구술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수립,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국 도서관 구술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성은 구술채록의 표준화로 수집 관리 매뉴얼과 정리 및 기술 지침 개발,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제작,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환경 개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성은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칭)'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구술자료 관리 조직 기구와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술자료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한국인의 기억,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독창적인 컬렉션을 구축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 컬렉션을 보유한 국가대표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로드맵을 구성할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반 조성기로 보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를 이행기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 구축을 위한 단계를 조직 및 제도 정비, 자체 수행, 지원 및 협력체계로 구분하여 기반조성의 단계에 따라 주요 과업과 세부과업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먼저 기반 조성기의 1차년도인 2020년에는 구술자료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정책 개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매뉴얼 개발을 하면서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한국구술사네트워크에 가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협의회(가칭)'와 같이 구술자료 수집에 관심을 갖거나 진행 중인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채록 시범 사업으로 첫 번째 독보적인 구술 컬렉션의 제작·수집을 준비하고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구술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차년도인 2021년에는 사업수행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채록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타 기관에서 제작·수집하지 않는 평범한 한국인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집된 구술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술자료 기술 및 정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술자료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고 분류 및 시소러스 구축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의 도서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구술자료 관리시스템 개발을 설계하고, 구술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술자료 관리 및 보존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술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별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구술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를 통해 지역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현황과 고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술사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의 마을기록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은 기반 조성기의 마지막 연차로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신설 또는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를 2025년에 개소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수립하고, 구술채록 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채록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컬렉션의 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표준화된 구술자료 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구술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술자료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등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다자간의 노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구술사 관련 교육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역 공공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

리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수집된 구술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규모 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료 보존 및 관리대행을 위한 기탁을 확대하고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구술자료는 활용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구술 아카이브 구축을 기획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자료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구술자료 제작실, 열람실, 수장고를 설치하는 등 구술자료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행기에 접어드는 2023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 컬렉션을 확대하는 시기로, 구술자료 제작·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구술채록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2025년에 개소가 목표인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술 컬렉션은 테마를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구술 컬렉션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외 공공도서관의 구술자료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사업을 지속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사 프로젝트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일반 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구술자료 수집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구술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동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동 리포지터리를 기획·설계하여야 한다.

2024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구술 컬렉션의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 설립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구술 컬렉션을 확대하고, 이를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공공도서관 구술채록 사례집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계속 배포하여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공공기

관 및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는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5년차에는 디지털 구술 아카이브 베타버전을 시범 운영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술자료 종합서비스는 이용자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하고, 교육콘텐츠 및 전시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술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구술자료의 목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국구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술자료 수집기관들의 개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구술자료 종합목록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신설이나 확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진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25년에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도를 바탕으로 구술자료의 수집과 관리 보존을 위해 적합한 부서를 찾아보면 자료관리부의 자료수집과와 디지털자료운영부의 디지털기획과가 될 수 있다. 두 과의 담당업무를 보면, 기록물과 온라인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술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계획의 주요자료로 반영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서개발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료수집과에서 업무를 먼저 맡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5년을 목표로 한국구술자료통합정보센터가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자료관리부와 디지털자료운영부,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 차원의 인적, 물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구술자료를 제작·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그 역할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 구술자료 제작·수집 및 관리에 있어 최고의 모범사례, 조언, 표준을 제공하는 국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구술기록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동시에 후대에 구술자료를 국가의 지적유산으로 전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구술자료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수의 알려지

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줄 수 있다. 구술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회계급 및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여 지역과 시대에 소속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술자료는 국내에서 다양한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수집하고 있지만, 각각 분산되어 소장됨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불가하여 구술자료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과 관리, 이용 및 보존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술자료의 수집을 시작함으로써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를 공표하고 구술자료의 이용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구술기록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증거적 가치를 국가지식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18).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권건보 (2014).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 : 박영사.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김일환 (2014).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3(1), 31-54.

남신동 (2003). "역사의 민주화와 구술사 연구의 윤리적 쟁점",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제6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1.2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박경용 (2014). 조선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연구 현황과 방법, 『아태연구』, 21(1), 71-108.

박준석 (2013). 지적재산권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정보법학』, 17(3), 2-39.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선영란 (2019).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자료의 현주소.『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125-135.

송영식, 이상정 (2003). 『저작권법 개설』 서울 : 세창출판사.

오명진 (2019). "대통령 구술기록을 위한 분류체계 설계", 대통령기록관 구술 아카이브 구축방안 수립 워크숍 자료집.

오승종 (2007).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8(1), 75-101.

유철인 (2003). 구술자료의 채록과 해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6집.

유철인 (2010), 구술생애사를 텍스트로 만들기 : 제주 해녀 고이화의 2개의 텍스트 비교. 『제1회 한국구술사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이재영, 정연경 (2018). 국내 구술사 연구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25-47.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이창범 (2012).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 : 법문사.

이필재 (2014).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 문제.『한국위기관리논집』, 10(1), 81-103.

이호신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1(1), 49-75.

이호신 (2012). 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47-69.

이호신 (2017).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93-216.

정연경, 최윤경 (2017)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서울: 아르케.

최윤경, 정연경 (2014), 한국 근대 여성 구술기록물을 통한 시소러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7-24.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표인주 (2018). 구술기억자료의 체험주의적 해석과 학술적 가치, 『호남문화연구』, 64, 181-215.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한국구술사연구회 (2017).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 관리와 활용』, 서울: 선인.

행정안전부 (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허영란 (2004). “구술과 문헌의 경계를 넘어서”, 『현황과 방법, 구술, 구술자료, 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Baum, Willa K. (1996). “The Expanding Role of the Librarian in Oral History“,

in Dunaway, David K., Willa K. Baum, eds.,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AltaMira Press.

Fogerty, James E. (2006). “Oral History and Archives: Documentating Context”. in Handbook of Oral History. ed by Thomas L. Charlton, Lois E. Myers, and Rebecca Sharpless. Altamira.

Nelson, Cyns (2018). Oral History in Your Library: Create Shelf Space for Community Voice, Libraries Unlinited.

Neuenschwander (2009). Oral History and Law. New York : Oxford Press.

Ritchie, Donald (1995). Doing Oral History. Twayne Publisher.

Richie, Donald (2003). Doing Oral History : A practical guide. 2nd ed. New York : Oxford Press.

Starr, Louis (1996). “Oral History“. in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David Dunaway and Willa K. Baum, eds. Walnut Creek: Altamira Press.

Thompson, Paul (2003).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仲山信弘 (2007). 『저작권법』 윤선희 편역(2008) 서울 : 법문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신문기사]

김호순 (2018.12.12.). 옛 추억 불러낸 도서관 ‘우리 마을’ 사진전.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1212.010130759380001

배유미 (2018.10.19.). “평택 장당도서관의 공간을 만나다”. 희망평택(평택시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t_story/22138098048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American_Folklife_Center

Shopes, Linda (2007). “Negotiat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HA Perspectives Online,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march2007/institutional-review-boards

[홈페이지]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www.library.kr>
- 경기도 파주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paju.go.kr/>
- 경기도 평택장당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ptlib.go.kr/jdlib/index.do>
-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http://www.nihc.go.kr/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nl/>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http://archives.nanet.go.kr/>
-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suseong.kr/yonghak>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pa.go.kr/>
- 미의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s://loc.gov/>
  - Collection Development and the Internet <http://www.loc.gov/acq/colldev/handbook.html>
  - Digital Collections. <https://www.loc.gov/collections/?fa=subject%3Aoral+histories>
  - Library of Congress Oral History Project. <https://www.youtube.com/watch?v=f1pBKHKgw6A>
  - The American Folklife Center(AFC)>. <https://loc.gov/folklife/>
  - Veterans History Project
    - <https://www.loc.gov/vets/>
    - <https://memory.loc.gov/diglib/vhp/html/search/search.html>
    - <https://evalogue.life/tools-and-resources/oral-history-interview-questions-and-resources/veteran-history-project/>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s://www.kdemo.or.kr>
- 영국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l.uk/>
  - Oral History <https://www.bl.uk/subjects/oral-history>
  - National Life Stories 홈페이지 <https://www.bl.uk/projects/national-life-stories>
  - Sound and Vision Blog <https://britishlibrary.typepad.co.uk/sound-and-vision>
  - Sound Archive <https://sounds.bl.uk/>
  - Sound & Moving Image Catalogure <http://sami.bl.uk/>
- 영국구술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ohs.org.uk/>
- 외교사연구센터 웹페이지 <http://www.mofa.go.kr/www/pgm/m_4277/uss/org/orgcht.do?seq=187>

•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ha2009.or.kr/index.html>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ks.ac.kr/home/>
• 호주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nla.gov.au/>
  - 통합 목록 홈페이지. <https://catalogue.nla.gov.au/>
  - Trove 홈페이지. <https://trove.nla.gov.au/>
•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홈페이지 <https://www.nfsa.gov.au/>

[법령]
• 미국
  - Public Law 94-201, 94th Congress, H. R. 6673, January 2, 1976,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Folklife
  - Public Law 105-275, AFC permanent authorization
  - Public Law 106-380, Veterans History Project
  - Public Law 114-246, 114th Congress, H. R. 4511, November 28, 2016, Gold Star Family Voice Act
  - Title 17, Copyrights Act
• 영국
  - British Library Act(1972)
  - Copyright Law(1988)
  - Legal Deposit Libraries Act(2003)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8)
  - 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2013)
• 일본
  - 國立國會圖書館法
•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법
  - 도서관법 및 시행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학도서관진흥법

- 작은도서관진흥법
- 저작권법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통계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 호주
- Copyright Law(1968)
- Digital Legal Deposit(2014)
- National Library Act(1960)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lilty Act(2013)

• EU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2018)

[부록 1]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설문지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연경 교수입니다. 최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구술 형태로 기록하고자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담긴 귀중한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후대로 보존 전승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이 바쁘시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연구책임자
이화여자대학교 정 연 경 드림

스마트폰 앱 QR코드 리더기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전자 설문지로 연결됩니다.

□ 소속 기관 및 응답자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속기관명	
(소재지) /	서울,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담당 부서명	
(총)근무기간	3년 이내,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도서관 장서	1만권 미만, 1만-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30만미만, 30만 이상

- 1 -

※구술자료 수집 및 구술채록사업이란?

구술자료는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서 생산된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녹취록, 사진과 구술자의 기증 자료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기관구술채록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통령기록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김대중도서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기관에서는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 귀 도서관은 구술자료 생산이나 서비스, 또는 구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이신가요?
   ① 예 → <2>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3>으로 이동해주세요.

※ 구술 자료를 생산 및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술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 경험이 없는 기관은 3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2. 귀 도서관이 수행한 구술채록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지역관련 자료 수집
   ②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④ 기타(직접 입력):

2-1. 귀 도서관에서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단행본
- ☐ 녹취록(녹취물)
-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 동영상 자료
- ☐ 음성 자료
- ☐ 사진 자료
- ☐ 웹 기사
- ☐ 박물류
- ☐ 기타(직접 입력):

2-2. 귀 도서관에서 구술자료 수집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기념 사업
   ② 공모 사업
   ③ 자체 수집
   ④ 기타(직접 입력):

2-3. 귀 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은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도서관 직원
   ② 외주

- 2 -

③ 자원봉사자
④ 기증
⑤ 기타(직접 입력):

2-4. 귀 도서관에는 구술자료 수집 매뉴얼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5. 수집된 구술 자료 중 보존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단행본 ☐ 녹취록(녹취물)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동영상 자료 ☐ 음성 자료 ☐ 사진 자료 ☐ 웹 기사 ☐ 박물류 ☐ 별도 보존하지 않음 ☐ 기타(직접 입력):

2-6. 수집된 구술 자료 중 이용자들이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단행본 ☐ 녹취록(녹취물)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구술 관련 행사 자료(전시, 강연, 출판기념회 등) ☐ 동영상 자료 ☐ 음성 자료 ☐ 사진 자료 ☐ 웹 기사 ☐ 박물류 ☐ 기타(직접 입력):

2-7. 수집된 구술 동영상/음성 자료를 도서관 시스템에서 서비스(목록 및 자료 열람 등)하거나 서비스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 <2-8>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2-7-1>로 이동해주세요.

2-7-1. 구술 동영상/음성 자료를 서비스 하지 않거나 서비스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서비스 수요 부족
② 영구보존의 가치가 낮음
③ 도서관 시스템 미비

④ 구술 자료 운영 예산 부족
⑤ 구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
⑥ 기타(직접 입력):

※ <2-9> 로 이동해주세요.

2-8. 구술 기록의 수집과 정리,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① 예 → <2-8-1>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2-8-2>로 이동해주세요.

2-8-1.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 목록 공유
② 구술 채록 사업 지침 공유
③ 구술 관련 인적 교류
④ 기타(직접 입력):

※ <2-8-3> 으로 이동해주세요.

2-8-2. 다른 기관과 연계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 채록 사업의 연계나 협력 기관에 관한 정보 부족
② 각 기관의 구술 자료 관리의 상이성
③ 다른 기관과 연계나 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부재
④ 기타(직접 입력):

2-8-3. 구술 기록의 수집과 정리,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사 네트워크의 활성화
② 구술 채록 기관들의 지원 기관 설립 또는 지정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는 구술 채록 사업 확대
④ 각 기관의 구술 관련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기타(직접 입력):

2-9.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 채록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② 구술 자료의 정리 및 기술(Description)의 한계
③ 구술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적 문제
④ 구술 자료 보존을 위한 기술 및 공간 부족
⑤ 구술 채록 기관의 네트워킹 부족

- 4 -

⑥ 도서관 내 관심 부재
⑦ 구술자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부재
⑧ 기타(직접 입력):

2-10. 구술 자료를 국가 주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1. 구술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귀 기관에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12. 구술 자료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국회도서관
③ 국사편찬위원회
④ 한국학중앙연구원
⑤ 한국연구재단
⑥ 기타(직접 입력):

2-13.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보존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②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③ 구술 관련 사업 및 구술 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④ 납본이나 기증을 통한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⑤ 구술 자료의 장기 보존(마이그레이션) 및 보존소 제공
⑥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⑦ 다른 기관이 시도하지 않은 주제에 관한 구술자료 수집
⑧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제공
⑨ 기타(직접 입력):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구술 자료를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기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 귀 도서관은 앞으로 구술자료 수집 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3-1>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3-2>로 이동해주세요.

3-1. 귀 도서관이 앞으로 수행하려는 구술채록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가능)
① 지역관련 자료 수집
② 지역민의 이야기 수집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④ 기타(직접 입력):

※ <3-3>으로 이동해주세요.

3-2. 구술자료 수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 자료의 수요나 시급성이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②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 부재
③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
④ 기타(직접 입력):

3-3. 공공도서관에서 구술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지원 사업의 확대
②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예산의 확보
③ 구술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한 실무자 교육 및 지침서 개발
④ 구술자료 수집에 대한 법제화
⑤ 기타(직접 입력):

※ 앞으로 구술자료 수집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기관은 <3-4>로, 구술자료 수집 의향이 없는 기관은 <3-6>으로 이동해주세요.

3-4. 앞으로 구술 자료를 수집해서 서비스 및 보존하려는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단행본
☐ 녹취록(녹취물)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동영상 자료
☐ 음성 자료
☐ 사진 자료
☐ 웹 기사
☐ 박물류
☐ 별도 보존하지 않음
☐ 기타(직접 입력):

- 6 -

3-5. 수집된 구술 동영상/음성 자료를 도서관 시스템에서 서비스(목록 및 자료 열람 등)하거나 서비스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 <3-6>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3-5-1>로 이동해주세요.

3-5-1. 구술 동영상/음성 자료를 서비스 하지 않거나 서비스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서비스 수요 부족
② 영구보존의 가치가 낮음
③ 도서관 시스템 미비
④ 구술 자료 운영 예산 부족
⑤ 구술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재
⑥ 기타(직접 입력):

3-6. 구술 자료를 국가 주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7. 구술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귀 기관에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8. 구술 자료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국회도서관
③ 국사편찬위원회
④ 한국학중앙연구원
⑤ 한국연구재단
⑥ 기타(직접 입력):

3-9.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보존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②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③ 구술 관련 사업 및 구술 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④ 납본이나 기증을 통한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⑤ 구술 자료의 장기 보존(마이그레이션) 및 보존소 제공
⑥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⑦ 다른 기관이 시도하지 않은 주제에 관한 구술자료 수집
⑧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제공
⑨ 기타(직접 입력):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8 -

[부록 2]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 기관 심층면담 질문목록

구술자료 수집 및 관리 현황 조사
- 기관 심층면담 질문목록 -

Ⅰ. 기관 내 구술자료의 수집 관련 사항

- 구술자료 수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구술자료의 수집은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기관이 아닌 외주를 통해 진행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술자료 수집 매뉴얼이 있습니까?
- 수집된 구술자료는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ex) 단행본, 녹취록, 잡지·기사·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구술 관련 행사 자료, 동영상·음성 자료, 사진 자료, 박물류 등
- 구술자료 수집에서 법적인 부분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칩니까?
  ex) 기증 및 위탁, 개인정보보호 등
- 구술자료 수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Ⅱ. 기관 내 구술자료 활용 및 서비스 관련 사항

- 수집된 구술자료 중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ex) 단행본, 녹취록, 잡지·기사·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구술 관련 행사 자료, 동영상·음성 자료, 사진 자료, 박물류 등
- 이용자들은 구술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열람·사용할 수 있습니까?
  ex) 온라인 검색 및 신청·열람, 기관 방문, 기타 열람 신청 방법 등
- 구술자료 활용 및 서비스의 공개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ex) 온라인 내 열람 범위 제한/목록만 공개, 기관 방문 시 전체 공개/부분 공개 등
- 구술자료를 활용한 기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x) 교육콘텐츠 제공, 기획 전시 등
- 구술자료를 이용하는 주된 이용자들은 누구입니까?
- 구술자료 서비스에서 법적인 부분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칩니까?
  ex) 열람 범위, 접근 권한 등
- 구술자료 서비스를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협력한 적이 있습니까?
  -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ex)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구술자료 목록 및 구술자료 수집 매뉴얼 공유, 구술 관련 인적 교류 등
- 다른 기관과의 연계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구술자료 서비스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 -

Ⅲ. 기관 내 구술자료의 보존 관련 사항

- 수집된 구술자료 중 보존되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수집된 구술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수집된 구술자료 중 1차 자료(원자료)의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1차 자료(원자료)는 장기보존되고 있습니까?
- 구술자료 보존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1차 자료(원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Ⅳ. 구술자료 국가자원화 가능성 논의

- 구술자료 중 1차 자료(원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귀 기관에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구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구술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구술자료의 장기보존 및 보존소 제공, 구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주제에 관한 구술자료 수집, 구술자료의 국가자원화,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제공

Ⅴ. 기타

-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 구술자료 관리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향후 구술자료 수집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록 3]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지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구술사학회 회원 여러분,

"국립중앙도서관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연경 교수입니다. 최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구술 형태로 기록하고자 공공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국내의 구술사 연구는 수집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방대한 구술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학회원 여러분께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문지에 답변해 주시면 구술사 연구의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연구책임자
이화여자대학교 정 연 경 드림

스마트폰 앱 QR코드 리더기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전자 설문지로 연결됩니다.
[붙임 2] 구술자료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 QR코드 접속 안내 참고

□ 응답자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업	대학생, 대학원생, 비전임, 전임교수, 기타
전공분야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재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해외

1. 귀하는 구술사 관련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3>으로 이동해주세요.

- 1 -

※ 구술사 관련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술사 관련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분은 <3>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2. 귀하가 수행한 구술사 작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연구 논문 작성
② 학위 논문 작성
③ 연구 프로젝트 수행
④ 단행본 저술
⑤ 기타(직접 입력):

2-1. 귀하가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단행본
☐ 녹취록(녹취물)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동영상 자료
☐ 음성 자료
☐ 사진 자료
☐ 웹 기사
☐ 박물류
☐ 기타(직접 입력):

2-2. 귀하가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개인 보존
② 기관 기증
③ 기타(직접 입력):

2-3. 귀하가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자료를 기증할 생각이 있으시면 선호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국가기록원
② 국사편찬위원회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료관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⑤ 국립중앙도서관
⑥ 국회 기록보존소
⑦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⑧ 기타(직접 입력):

2-4. 귀하는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 자료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4>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6>으로 이동해주세요.

- 2 -

※ 구술사 관련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 귀하는 앞으로 구술사 작업을 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 <3-1>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8>로 이동해주세요.

3-1. 귀하는 앞으로 구술사 작업을 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연구논문 작성
② 학위논문 작성
③ 연구 프로젝트 수행
④ 단행본 저술
⑤ 기타(직접 입력):

3-2. 귀하가 앞으로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개인 보존
② 기관 기증
③ 기타(직접 입력):

3-3. 귀하가 앞으로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구술 자료를 기증할 생각이 있으시면 선호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국가기록원
② 국사편찬위원회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료관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⑤ 국립중앙도서관
⑥ 국회 기록보존소
⑦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⑧ 기타(직접 입력):

※ <5>로 이동해주세요.

※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용경험이 없는 분은 <6>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4. 귀하는 어느 기관에서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이용하였습니까?(중복응답 가능)
① 국가기록원
② 국사편찬위원회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료관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⑤ 국회 기록보존소
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⑦ 기타(직접 입력):

4-1. 귀하가 기관에서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이용할 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목록의 부재
② 온라인 접근성의 부재
③ 오프라인 접근성의 부재
④ 구술자료의 비공개
⑤ 타 연구자가 수집한 구술자료 해석의 어려움
⑥ 기타(직접 입력):

4-2. 귀하가 구술자료와 관련하여 이용 및 활용하고 싶은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단행본
□ 녹취록(녹취물)
□ 잡지, 기사, 연구논문 등 기타 인쇄 출판물
□ 구술 관련 행사 자료(전시, 강연, 출판기념회 등)
□ 동영상 자료
□ 음성 자료
□ 사진 자료
□ 웹 기사
□ 박물류
□ 기타(직접 입력):

4-3. 귀하가 구술자료를 이용 및 활용할 때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종합 목록
② 온라인 열람 서비스
③ 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④ 구술자료 통합 검색 서비스
⑤ 구술자료 기증 및 보존 관리
⑥ 기타(직접 입력):

5. 귀하가 수집한 구술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길 바랍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목록화
② 출판(단행본, 잡지)
③ 연구논저
④ 영화나 연극 제작

- 4 -

⑤ 전시
⑥ 만화
⑦ 스토리텔링
⑧ 교육 자료
⑨기타(직접 입력):

※ <8>로 이동해주세요.

※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6. 귀하는 미래에 타 연구자들이 생산한 구술자료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 <6-1>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요 → <7>로 이동해주세요.

6-1. 귀하는 앞으로 타 연구자가 생산한 구술자료로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① 연구논문 작성
② 학위논문 작성
③ 연구 프로젝트 수행
④ 단행본 저술
⑤ 기타(직접 입력):

※ <8>로 이동해주세요.

7. 귀하는 타 연구자들이 생산한 구술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목록 부재
② 구술아카이브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온라인 열람 서비스 부족
④ 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부족
⑤ 타 연구자가 수집한 구술자료 해석의 어려움
⑥ 기타(직접 입력):

8. 귀하는 국가가 구술 자료를 주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1. 귀하는 구술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경우, 귀하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판단이 어렵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2. 귀하는 구술자료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립중앙도서관
② 국회 기록보존소
③ 국사편찬위원회
④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사료관
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⑦ 한국연구재단
⑧ 기타(직접 입력):

8-3. 귀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술자료 수집 및 서비스, 보존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주길 원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구술자료 국가종합목록 작성
② 구술 아카이브 시스템 제공
③ 구술 관련 사업 및 구술 자료 관리 표준 매뉴얼 제공
④ 구술자료의 장기 보존(마이그레이션) 및 보존소 제공
⑤ 구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⑥ 다른 기관이 시도하지 않은 주제에 관한 구술자료 수집
⑦ 납본이나 기증을 통한 구술 자료의 국가자원화
⑧ 구술자료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제공
⑨ 기타(직접 입력):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6 -

연구진

- 연구수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정 연 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윤 택 림(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이 호 신(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
- 보조연구원 : 이 재 영(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엄 정 현(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2019년 연구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구술자료
수집 타당성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인 쇄 : 2019년 12월 20일
발 행 : 2019년 12월 20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799 Fax. 02-590-0502
http://www.nl.go.kr

연구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6513-011-4 [비매품]

인쇄 : ㈜유피시스템즈 이대쎈타